



본 보고서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인쇄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연구진 >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홍병진 부연구위원(연구총괄)  
최시원 연구원

외부 연구진 : 한 균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다예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연구원

검토위원 : 서상원 영우피엠디(주) 대표



위치도



조감도





## 목 차

요약 .....	1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57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57
2. 사업의 주요 내용 .....	59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	82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86
1. 기초자료 분석 .....	86
2. 유사사례 검토 .....	110
3. 관련계획 검토 .....	119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	122
III.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27
1. 검토의 개요 .....	127
2. 적절성 검토 .....	128
IV. 비용 추정 .....	170
1. 비용 추정의 개요 .....	170
2. 총사업비의 추정 .....	173
V. 정책성 분석 .....	199
1. 정책성 분석의 개요 .....	199
2. 사업추진여건 .....	200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210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	210
2. 지역낙후도 .....	210
3. 균형발전효과 .....	218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240
1. 종합결론 .....	240
2. 정책제언 .....	243
참고문헌 .....	245
부록 .....	248

---

---

## 표 목차

〈표 Ⅰ-1〉 교육주기별 교과편성(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	60
〈표 Ⅰ-2〉 교육기반 시설 확대(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	60
〈표 Ⅰ-3〉 사업의 추진 경위 .....	62
〈표 Ⅰ-4〉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 개요 .....	63
〈표 Ⅰ-5〉 강의동 세부 시설규모 .....	65
〈표 Ⅰ-6〉 생활관동 세부 시설규모 .....	67
〈표 Ⅰ-7〉 강의동 내 실습실 구축 현황 및 필요성 .....	68
〈표 Ⅰ-8〉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요약) .....	73
〈표 Ⅰ-9〉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상세) .....	73
〈표 Ⅰ-10〉 계약체결 현황 .....	74
〈표 Ⅰ-11〉 경찰수사연수원 정원(훈령 제21호) .....	75
〈표 Ⅰ-12〉 교육 개편안 .....	76
〈표 Ⅰ-13〉 증원 계획(2022년 주요 업무계획) .....	76
〈표 Ⅰ-14〉 조직 개편안(2022년 주요 업무계획) .....	77
〈표 Ⅰ-15〉 증원 계획(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 .....	77
〈표 Ⅰ-16〉 조직 개편안(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 .....	78
〈표 Ⅰ-17〉 연도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	78
〈표 Ⅰ-18〉 조직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	79
〈표 Ⅰ-19〉 신설 조직 담당 업무 .....	80
〈표 Ⅰ-20〉 주무관 증원 계획 .....	81
〈표 Ⅱ-1〉 충남 아산시 행정구역 .....	87
〈표 Ⅱ-2〉 충남 및 아산시 인구 이동 현황 .....	88
〈표 Ⅱ-3〉 시도별 도로보급률 .....	89
〈표 Ⅱ-4〉 충남/아산시 자동차 등록 현황 .....	90
〈표 Ⅱ-5〉 전국/충남/아산시 사업체 현황 .....	90

---

〈표 II-6〉 수사관 자격등급별 선발방법	97
〈표 II-7〉 단계별 수사관 역량 수준 및 선발기준	97
〈표 II-8〉 최근 3개년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98
〈표 II-9〉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담당부서	98
〈표 II-10〉 시도청 경찰교육센터 수사 교육과정	99
〈표 II-11〉 경찰수사연수원 연혁	102
〈표 II-12〉 최근 5개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현황	104
〈표 II-13〉 2023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세부내용	104
〈표 II-14〉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개요	108
〈표 II-15〉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109
〈표 II-16〉 유사사례(1) 경찰인재개발원	110
〈표 II-17〉 2023년 경찰인재개발원 직무 교육과정	111
〈표 II-18〉 유사사례(2) 법무연수원(본원)	113
〈표 II-19〉 유사사례(3) 관세인재개발원	115
〈표 II-20〉 관세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116
〈표 II-21〉 유사사례(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17
〈표 II-2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총괄 현황	118
〈표 II-23〉 대안의 설정	124
〈표 III-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127
〈표 III-2〉 교육주기 3년 달성 계획	129
〈표 III-3〉 경찰수사연수원의 최근 1개월 교육일정 현황(2023. 5.)	130
〈표 III-4〉 기존/목표 교육인원 및 교육시간	131
〈표 III-5〉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추정	131
〈표 III-6〉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비교	131
〈표 III-7〉 사업규모 개요	136
〈표 III-8〉 요구안의 시설구성(강의동)	136
〈표 III-9〉 요구안의 시설구성(생활관동)	141

---

〈표 Ⅲ-10〉 요구안의 시설구성 종합	144
〈표 Ⅲ-11〉 설계지침(강의동)	145
〈표 Ⅲ-12〉 설계지침(생활관동)	147
〈표 Ⅲ-13〉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149
〈표 Ⅲ-14〉 지방청·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	150
〈표 Ⅲ-15〉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155
〈표 Ⅲ-16〉 2027년 기준 증원 계획 비교	155
〈표 Ⅲ-17〉 주무관 증원 및 시설 증축 계획	156
〈표 Ⅲ-18〉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156
〈표 Ⅲ-19〉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	157
〈표 Ⅲ-20〉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158
〈표 Ⅲ-21〉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	158
〈표 Ⅲ-22〉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159
〈표 Ⅲ-23〉 사이버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실습실	160
〈표 Ⅲ-24〉 사이버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160
〈표 Ⅲ-25〉 교수실, 강의실, 사무실 규모검토	162
〈표 Ⅲ-26〉 식당·편의시설·저장보관실 규모검토	164
〈표 Ⅲ-27〉 강의동 공용공간 규모검토	165
〈표 Ⅲ-28〉 생활실 규모검토	166
〈표 Ⅲ-29〉 생활관동 편의시설·관리시설 규모검토	167
〈표 Ⅲ-30〉 생활관동 공용공간 규모검토	168
〈표 Ⅲ-31〉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결과	168
〈표 Ⅳ-1〉 총사업비 추정 절차 및 방법	170
〈표 Ⅳ-2〉 비용 보정 지수	171
〈표 Ⅳ-3〉 총사업비 요구안 세부내역	171
〈표 Ⅳ-4〉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173
〈표 Ⅳ-5〉 강의동 및 생활관동 단가 기준	174

---

〈표 IV-6〉 단위공사비 산정 .....	174
〈표 IV-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	175
〈표 IV-8〉 흙막이 공사비 산정 .....	176
〈표 IV-9〉 주차장 신설 공사비 산정 .....	177
〈표 IV-10〉 신설주차장 단위공사비 산정 .....	177
〈표 IV-11〉 주차장 조성 사례 단위공사비 산정 .....	177
〈표 IV-12〉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분담금 .....	178
〈표 IV-13〉 일반 수준(ZEB 등급 미달) 대비 공사비 증가율 .....	179
〈표 IV-14〉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비용 산정 .....	180
〈표 IV-15〉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	180
〈표 IV-16〉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	182
〈표 IV-17〉 신·재생에너지 산정 비율 검토 .....	182
〈표 IV-18〉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식 .....	182
〈표 IV-19〉 단위에너지 사용량 .....	183
〈표 IV-20〉 지역계수 .....	183
〈표 IV-21〉 에너지 사용량 산정 .....	184
〈표 IV-2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의 산식 .....	184
〈표 IV-23〉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산정 .....	184
〈표 IV-2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식 .....	185
〈표 IV-25〉 대안별 지열 및 태양광 설치 규모 산정 .....	185
〈표 IV-26〉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	185
〈표 IV-2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수 산정 .....	186
〈표 IV-2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단가 산정(급속) .....	187
〈표 IV-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단가 산정(완속) .....	187
〈표 IV-3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용 산정 .....	188
〈표 IV-31〉 법령개정 공사비 추정 결과 .....	188
〈표 IV-32〉 공사비 추정 결과 .....	189
〈표 IV-33〉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부지 .....	190

---

〈표 IV-3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법적 근거 .....	190
〈표 IV-3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	190
〈표 IV-36〉 농지보전부담금 면적당 금액 .....	190
〈표 IV-37〉 공종구분 .....	192
〈표 IV-38〉 건축설계 대가요율 .....	193
〈표 IV-39〉 설계비 추정 .....	193
〈표 IV-40〉 공종별 건축물의 구분 .....	194
〈표 IV-4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195
〈표 IV-42〉 감리비 추정 .....	195
〈표 IV-43〉 시설부대비 요율 .....	196
〈표 IV-44〉 시설부대비 추정 .....	196
〈표 IV-45〉 시설부대경비 종합 .....	197
〈표 IV-46〉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	197
〈표 IV-47〉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	198
〈표 V-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	199
〈표 V-2〉 수사교육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	201
〈표 V-3〉 경찰청 「2023 주요업무계획」 .....	202
〈표 V-4〉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 계획(안)」 .....	203
〈표 V-5〉 수사교육동 증축 필요성 .....	204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211
〈표 VI-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	215
〈표 VI-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충분산 설명비율) .....	216
〈표 V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217
〈표 V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217
〈표 VI-6〉 상품분류 구분 .....	224
〈표 V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	235

---

〈표 V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	236
〈표 V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	237
〈표 V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	238
〈표 VI-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	239
〈표 VII-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	242

---

---

## 그림 목차

[그림 Ⅰ-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상지	63
[그림 Ⅰ-2]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조감도	64
[그림 Ⅰ-3] 주차장 신설 부지 위치	72
[그림 Ⅰ-4] 조직 개편안(제출자료)	79
[그림 Ⅰ-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82
[그림 Ⅱ-1] 충남 및 아산시 인구 현황	87
[그림 Ⅱ-2]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92
[그림 Ⅱ-3]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조직도	93
[그림 Ⅱ-4] 조직개편에 따른 시도경찰청 조직도	94
[그림 Ⅱ-5] 경찰수사연수원 원훈(좌) 및 교육목표(우)	102
[그림 Ⅱ-6] 경찰수사연수원 조직도	103
[그림 Ⅱ-7] 경찰수사연수원 현황(사진)	109
[그림 Ⅱ-8] 2023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118
[그림 Ⅱ-9]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	119
[그림 Ⅱ-10]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계획(안)	120
[그림 Ⅱ-11]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121
[그림 Ⅲ-1] 경찰수사연수원 현황 사진	128
[그림 Ⅲ-2] 주차장 신설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132
[그림 Ⅲ-3] 신설 주차장 부지	134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21
[그림 Ⅵ-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22
[그림 Ⅵ-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와 개념	232

---



---

## 요 약

---

###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추진 배경

- 수사환경 변화와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사 전문 교육연구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프라 확충 필요
  - 전문수사 이론교육, 실습 위주 교육, 최신 수사기법 연구·교육을 통한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주기 단축(약 6→3년 이내) 필요

##### □ 사업의 목적

- 수사경찰관 교육주기 단축(3년)을 목표로 연간 98개 과정, 373회, 1만 1,2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동 및 생활관동 증축 추진<sup>1)</sup>

##### □ 사업의 기대효과

- 최상의 교육 인프라 제공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생활관 확보로 안정적인 교육 기반 조성, 교육주기 단축 및 치안 환경 변화에 맞춘 교과과정 확대 운영, 수사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기여

---

1) 연수원은 재검토 과정에서 교육주기 3년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및 인원을 연간 112개 과정, 403회, 1만 2,480명으로 정정 제시함

## 2.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사업의 추진 개요

#### □ 사업의 추진 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 □ 사업의 추진 경위

〈표 1〉 사업의 추진 경위

연월	내용
2018. 3.	• 수사교육기반 확대를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수립
2018. 6.	•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보고, 수사연수원 확대 공감
2020. 12.	• 국유재산관리기금 정부안 편성('21년 사업)
2021.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1. 6.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2021. 8.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2021. 11.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업체 선정
2021. 12.	• 기본설계 착수
2022. 2.	• 기본설계 완료
2022. 5.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2. 8.	• 중간설계 완료
2022. 11.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3. 2.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요청(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128)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조정요구서」;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최초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자료」;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경찰수사연수원)」; 「중간설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사업 개요

### □ 사업의 주요 내용

- 현 청사(충남 아산시) 내 기존 주차장 부지 및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강의동과 생활관을 각 1개동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최초 예산 편성
- 총사업비 조정 요구액은 566억 8,100만원으로 현행안 대비 93억 6,900만원 증액  
-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과 법령 개정 등에서 기인함

〈표 2〉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 개요

구분		현행안			조정요구안
사업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2(경찰청 부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sup>1)</sup>	88,729㎡			
	연면적	<2021년도> 18,268㎡ - 강의동 12,882㎡ - 생활관동 5,385㎡	<2022년도> 18,266㎡ - 강의동 12,881㎡ - 생활관동 5,385㎡	<2023년도> 18,266㎡ - 강의동 12,614㎡ - 생활관동 5,652㎡	18,266㎡ - 강의동 12,614㎡ - 생활관동 5,652㎡
사업기간 <sup>2)</sup>		2021~2026년(6년)			
사업주체		경찰수사연수원(경찰청)			
재원분담		국고 100%(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47,312백만원			56,681백만원

주: 1)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서는 67,137㎡로 계획되었으나, 2022년도부터 부지면적을 변경(88,729㎡) 계획함

2)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서는 2021~2024년(4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통상적인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도부터 사업기간 변경(2021~2026년)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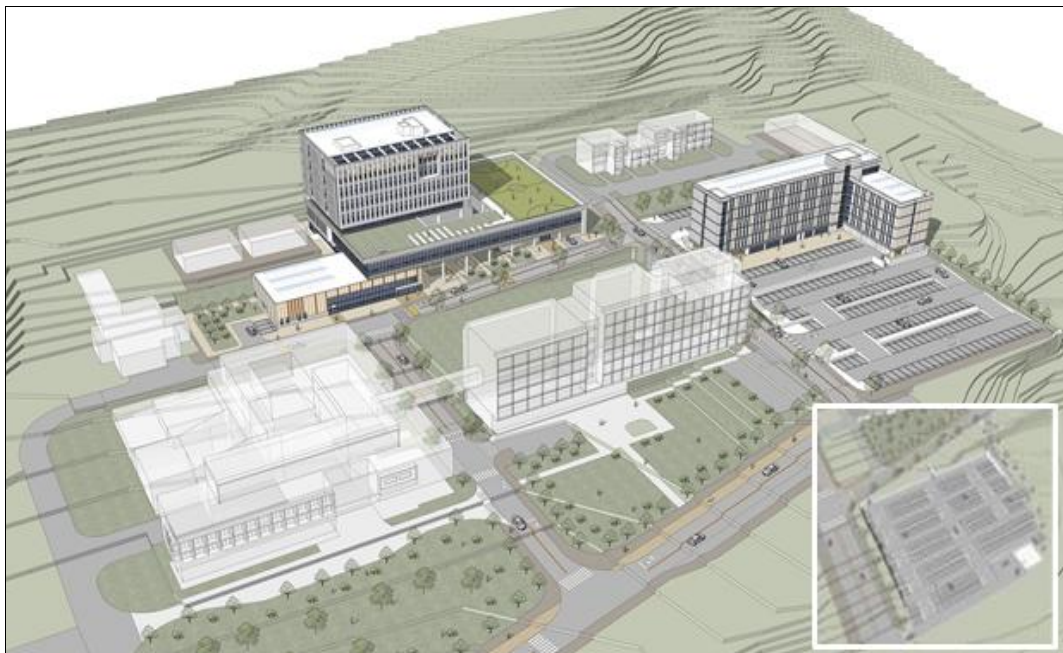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조정요구서」; 「총사업비조정 관리대상사업 설명자료」; 「최초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자료」;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경찰수사연수원)」;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경찰수사연수원)」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상지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중간설계보고서」

[그림 2]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조감도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중간설계보고서」

□ 사업 규모

- 부지면적은 88,729㎡이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른 주차대수 217대, 생활관동 증축에 따른 감소분 59대를 합한 총 276대 규모의 주차장 신설 계획을 포함
- 연면적은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안과 같은 18,266㎡ (강의동 12,614㎡, 생활관동 5,652㎡)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 중간설계안은 강의동 12,782㎡, 생활관동 5,802㎡, 총 18,584㎡로 확인되나,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서 당초 면적(지침면적)으로 조정 제시
- 연수원은 조정요구서의 연면적(18,266㎡)을 유지하되 세부 공간 구성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 요청
  - 이로 인해 연수원에서 실제 계획 및 요구하는 증축 시설(강의동, 생활관동)의 세부 실별 면적의 합계(18,58㎡)가 요구서의 연면적(18,266㎡)과 불일치

〈표 3〉 강의동 세부 시설규모

(단위: ㎡)

총별	시설명	지침면적	중간설계면적	조달청검토면적
공용 공간	기계실	450	179.99	450
	전기실	175	116.9	175
	발전기실	38	44.78	38
	방재실	0	14.99	14.99
	ESS실	0	20.5	20.5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2,621.6	3,947.22	3,332.62
	EPS/TPS, A/V	0	126	126
	지하주차장	857.5	0	0
	면적 소계	4,142.1	4,450.38	4,157.11
전용 공간	수사정보분석실습실	90	144.71	90
	의료범죄수사센터	0	106.54	90
	사기범죄연구센터	90	89.88	90
	압수수색실습실	361.4	366.4	361.4
	모의범죄수사실습	162	196.46	162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실습실	51.6	100.05	51.6
	아동/장애인피해자(강의실)	144	98.32	83.7
	아동/장애인피해자(실습실)		67.92	144
아동/장애인피해자(모니터실)	25.58			

〈표 3〉의 계속

(단위: m<sup>2</sup>)

층별	시설명	지침면적	중간설계면적	조달청검토면적
전용 공간	피의자신문실습강의실	144	97.49	83.7
	피의자신문조사실		68.25	144
	피의자신문모니터실		26.09	
	네트워크분석실	90	497.08	90
	사이버수사실습실	180		270
	데이터실	0	31.93	31.93
	참여실	0	19.34	19.34
	월드실	0	14.91	14.91
	접수실 & 회의실	0	58.5	58.5
	증거물 보관실	0	90.05	90.05
	현장복제실습실	0	85.78	85.78
	사이버추적실습실	90	119.58	119.58
	미세증거분석실습실	90	88.87	90
	교수연구실	807	1,419.2	1,419.2
	교수세미나실	0	434.42	300
	컴퓨터강의실	900	744.42	900
	일반강의실	1,841.1	827.22	837
	다목적실	450	422.38	450
	사무실A	312.4	238.03	315
	사무실B	380.6	220.55	378
	식당(통합설치)	350.5	462.13	462.13
	주방	73	311.05	311.05
	조리원휴게실(남)	33	13.04	13.04
	조리원휴게실(여)		37.3	37.3
	휴게공간	0	241.03	241.03
	직원휴게실(남/여)	54	83.31	83.31
	휴게실(외래강사)	66.7	83.13	66.7
	교재창고	147	51.88	51.88
	창고		103.22	103.22
	학과별창고		245.5	245.5
수사자료연구도서관	661	0	0	
분임강의실	375	0	0	
의무실	48	0	0	

〈표 3〉의 계속

(단위: m<sup>2</sup>)

종별	시설명	지침면적	중간설계면적	조달청검토면적
전용 공간	디지털포렌식실습실	132	0	0
	디지털증거분석실	132	0	0
	사이버현장수사실습실	216	0	0
	면적 소계	8,472.3	8,331.54	8,384.85
합계		12,614.4	12,781.92	12,541.96

주: 지침면적은 당초안 및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요구안과 동일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표 4〉 생활관동 세부 시설규모

(단위: m<sup>2</sup>)

종별	시설명	지침면적	설계면적	검토면적
공용 공간	기계실	290	278.71	278.71
	전기실	124	77.34	77.34
	EPS/TPS, A/V	0	50.22	50.22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1,242.8	1,675.1	1,675.1
	면적 소계	1,656.8	2,081.37	2,081.37
전용 공간	생활실	3,302.5	3,202.59	3,202.59
	장애인생활실		98.34	98.34
	매점, 커피숍	0	69.82	69.82
	세탁실	91	51.32	61.9
	린넨실	13.2	31.72	16.5
	세탁, 린넨실	0	8.29	
	휴게실, 정보검색실	84.4	86.19	105.5
	체력단련실	105.7	71.53	71.53
	당직실(지원계, 학생계)	66.1	49.76	49.76
	용역원실	30	15.04	9
	사무실	0	36.36	21
	목욕탕(남)	150	0	0
	목욕탕(여)	37.5	0	0
	탈의실	114.5	0	0
	면적 소계	3,994.9	3,720.96	3,705.94
합계		5,651.7	5,802.33	5,787.31

주: 지침면적은 당초안 및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요구안과 동일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

-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566억 8,100만원으로 현행안 473억 1,200만원 보다 93억 6,900만원 증액
  - 물가상승분 및 현장여건, 법령개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 주차장 신설부지에 대한 농지부전부담금 반영 등으로부터 기인함

〈표 5〉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조정요구안 (B)	증감(B-A)		변경 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47,312	56,681	9,369	19.8	
1. 공사비	42,670	51,291	8,621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반영(8,4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li> <li>- 법령개정 반영</li> <li>- 현장여건 반영</li> <li>- 각종 부담금 반영</li> </ul> </li> <li>• 법령 반영(2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li> <li>-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 모니터링</li> </ul> </li> </ul>
2. 보상비	-	218	218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보전부담금 반영 (「농지법」 제38조)</li> </ul>
3. 시설부대경비	4,642	5,172	530	11.4	
3-1. 설계비	2,125	2,125	-	-	
3-2. 감리비	2,419	2,929	510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요율 반영</li> </ul>
3-3. 시설부대비	98	118	20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요율 반영</li> </ul>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운영체제

- 정원은 총 64명으로 2과 4계 7개 학과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2023년 기준 85개 과정, 220회로 계획
  - 정원 외 인원으로는 임기제 3명, 주무관 22명, 교수 4명 등
- 교육주기 단축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은 112개 과정, 403회로 확대, 운영조직은 3과 11계 9개 학과로 개편 및 81명 증원(교수 45, 행정 36) 계획
  - 정원 외 인원 중 주무관 18명 증원 계획

〈표 6〉 교육 개편안

(단위: 개, 회, 명)

학과	주기	대상인원 (명)	2023년			3년 교육주기			비고
			과정	교육횟수	교육인원	과정	교육횟수	교육인원	
합계		36,678	85	220	6,070	112	403	12,480	
수사지휘심사		13,106	11	24	660	14	54	1,630	
경제범죄			13	39	1,390	11	46	1,900	신설
반부패범죄						12	38	1,140	
강력수사		10,134	17	49	1,410	15	69	2,070	
교통수사						8	38	1,140	신설
여청수사		4,171	8	29	820	11	49	1,470	
사이버수사		2,091	11	26	710	14	46	1,380	
안보수사		2,120	8	18	460	10	30	900	
과학수사		1,267	17	35	620	17	33	850	

자료: 경찰수사연구소원 제출자료, 「증축사업 완료 후 교육일정 개편안」; 「교육과정 세부 내용」

〈표 7〉 연도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교수 정원	+7	+6	+10	+10	+12	+45
행정 정원	-	시설 +3, 콘텐츠 +3	대외 +5, 기획예산 +4, 콘텐츠 +3	교무기획 +4, 연구 +6	콘텐츠 +4, 사이버 +3, 시설 +1	+36
정원	71	83	105	125	145	145

주: 증원 교수요원 총 45명은 연구교수 2명을 포함함

자료: 경찰수사연구소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구소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 사업관련 기초자료 검토

□ 상위·관련계획의 관련성 고려(상위계획: 중앙정부 계획/관련계획: 지자체 계획)

- 상위·관련계획의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보다는 각 계획에 평가대상사업의 위상, 우선 순위,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분석·기술

□ 유사·관련 사업 분석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우선 조사 대상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 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

2)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및 비용 추정

□ 사업계획(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예측된 수요 및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사업비용 추정을 위한 설계기준, 공사비 산입기준,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및 기간, 비용 산정의 정밀도 등을 제시

□ 비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토

-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각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초기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토
  - 용지보상비 등 총사업비와 설립 후 유지관리비 등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함께 추정
- 사업계획(안)에 누락된 비용 항목에 대한 검토
- 총사업비의 적정성 및 효율성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이며 적절한 비용을 추정

3) 정책성 분석

- 정책성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쟁점을 평가

□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선택적)으로 구성

- 사업추진 여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등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
- 그 외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정책 효과(필요시)

-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 안전성 평가(선택적):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 사업특화항목: 사업별 정책목적·특성에 맞게 사업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

○ 사업별도평가항목(선택적)

- 재원조달 위험성: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원인자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기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기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 문화재가치: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지역낙후도를 평가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

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과 수도권 지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하지 않음

- 균형발전효과 분석을 위해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 5)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조사의 한계점과 향후 본 조사 대상사업의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을 제언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1. 기초자료 분석

#### 가. 사업대상지

##### 1) 자연 및 생활환경

- 충청남도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서북단에 위치하며, 동서 간 연장은 29km, 남북 간 연장은 34km임
- 동쪽으로 천안시, 남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으로는 예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음
- 여름은 고온다우, 겨울은 다설 지역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기온은 12.4℃이며, 연강우량은 약 1,181m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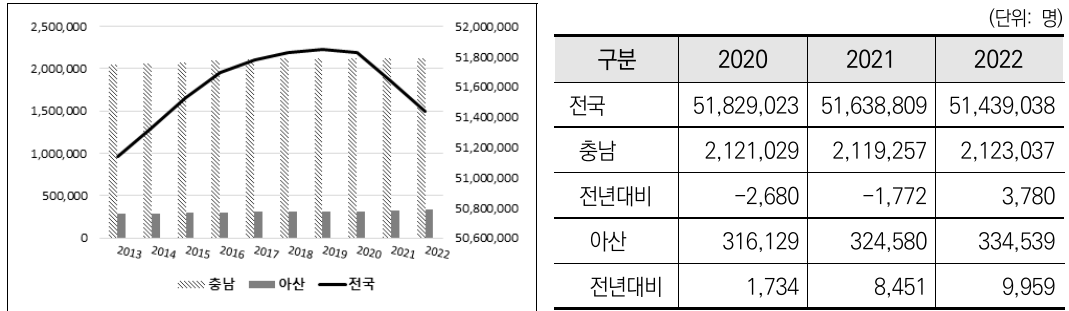
##### 2) 사회·경제적 환경

- 아산시 전체 면적은 542.78km<sup>2</sup>로, 2개 읍, 9개 면, 6개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임
- 전체 면적은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9번째 순, 면적 구성비 6.3% 차지

□ 인구 현황

- 2022년 충남 인구는 212만 3,037명, 아산시는 33만 4,539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0.18%(3,780명), 3.07%(9,959명) 증가

[그림 3] 충남 및 아산시 인구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 연령별로 보면, 아산시는 10대 이하 및 30~40대 인구가 전국 및 충남 대비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
- 2022년 기준 아산시 총 전입 인구 5만 1,166명, 총 전출 인구 4만 751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1만 415명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
  - 이는 충남 총 전입 인구의 약 20%, 총 전출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수준
- 2022년 기준 시도별 전입·전출지 현황을 보면 충남의 전출 인구 중 약 58%가 도내로 전입, 전입 인구 중 도내로부터 전입한 인구는 약 55%를 차지

<표 8> 충남 및 아산시 인구 이동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국	7,735,491	7,735,491	0	7,213,422	7,213,422	0	6,152,155	6,152,155	0
충청남도	287,127	286,386	741	282,195	273,673	8,522	260,488	246,174	14,314
아산시	45,651	44,441	1,210	52,347	43,463	8,884	51,166	40,751	10,415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 교통 현황

- 2021년 기준 충남의 도로 연장은 총 7,588km로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8위에 해당, 포장율은 97%로 전년 대비 미포장도가 171km 감소
  - 시도 39.28%, 지방도 22.52%, 일반국도 17.02%, 군도 15.51%, 고속국도 5.67%로 구성
- 2021년 기준 충남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0.9km/km<sup>2</sup>로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13위, 인구당 도로연장은 3.6km/명으로 8위,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6.5km/천대로 7위이며,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sup>2)</sup>은 1.8%
-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2년 12월 기준 충남은 1,211천대, 아산시는 192천대로 전년 대비 각각 약 3%, 5% 증가

□ 산업 현황 및 구조

- 2020년 기준 아산시의 사업체 수는 3만 4,436개로 전국의 0.57%, 충남의 13.6% 수준이며, 종사자 수는 19만 4,035명으로 전국의 0.01%, 충남의 0.18% 수준
  -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약 2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약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

나. 경찰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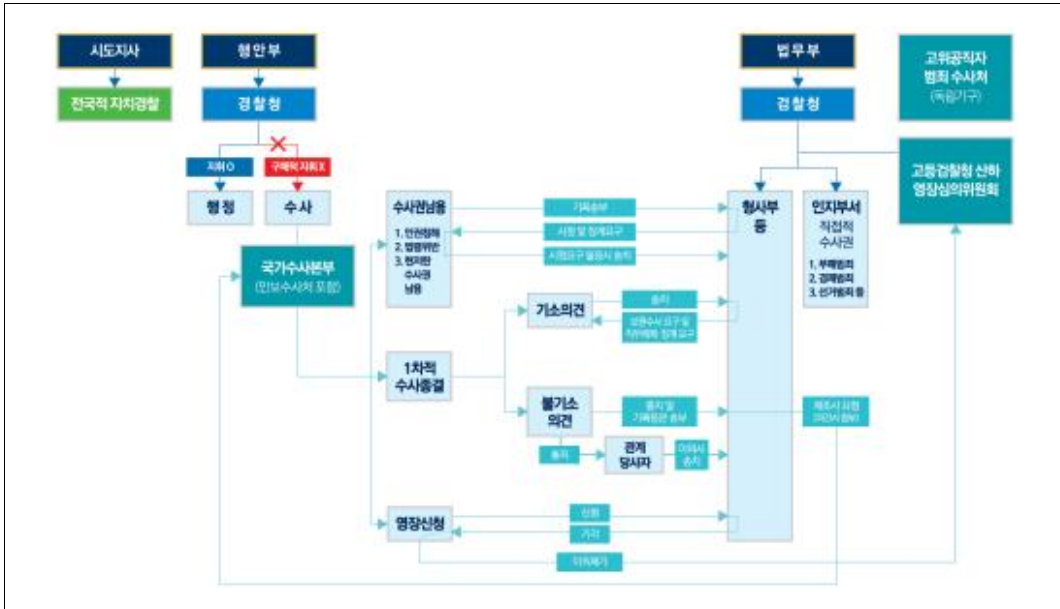
1) 수사 환경 변화(수사권 조정)

-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이를 기초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2020. 2. 4. 일부개정)
-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전부 개정(2020. 12. 22.),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 수사 지휘총괄기구로서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사이버·과수기능 외 안보수사·여청수사·교통조사 기능을 모두 편제

2) 도로보급률은 도로연장(도로용량), 인구, 국토면적, 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도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됨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도로보급률) = 도로연장(km) / √[국토면적(km<sup>2</sup>) × 인구(천명)]

[그림 4]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자료: 대통령비서실 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2018. 6. 21.

## 2) 수사경찰과 교육훈련

- 광의의 개념으로 수사경찰은 범죄의 진압과 검거를 비롯하여 범죄 유발 환경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시키는 기능까지도 포함
-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2021 경찰통계연보』상 기능별 정원은 과학수사 1,362명, 수사 1만 160명, 형사 1만 6,988명,<sup>3)</sup> 사이버수사 2,091명, 안보수사 2,268명
  - 정확한 수사경찰 인원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성기(2021)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3만 2,500명,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 정원의 112.2%(3만 3,531명), 수사부서 내 비경과자 비율은 전국 평균 23.8%로 보고

3) 「자료 출처별 수사인력」(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찰통계연보』상의 ‘형사’는 교통수사, 여성청소년 수사를 포함

〈표 9〉 최근 3개년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단위: 명)

구분	계	경무	정보통신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지구대(파출소)	기타
2019	122,913	3,354	1,258	14,405	21,109	10,321	13,348	2,991	2,205	1,575	1,840	469	49,808	530
2020	126,227	3,231	1,142	14,898	21,970	10,524	14,901	2,991	2,182	1,570	1,881	168	50,236	533

구분	계	대변인	감사	정보화장비	경무	치안상황	경비	정보	외사	과학수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관서	부속기관
2021	128,985	169	1,928	914	2,885	4,592	16,655	2,990	1,100	1,362	10,160	16,988	2,091	2,268	3,535	3,148	6,999	50,668	533

자료: 경찰청, 『2021 경찰통계연보』, 2022.

- 경찰의 교육훈련 실시권자는 법률상 경찰청장으로 지정,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하부기관에 위임
  - 교육훈련 하부기관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 경찰청 부속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시·도 경찰청(지방교육센터) 및 경찰서(직장훈련, 무도훈련) 등
- 경찰 수사관 교육은 집합교육방식으로 경찰수사연수원과 시도청 경찰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교육과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훈련) 방식의 현장교육을 병행

#### 다. 경찰수사연수원

##### 1) 경찰수사연수원 연혁

〈표 10〉 경찰수사연수원 연혁

연월	내용
1984. 1.	• 경찰대학부설 수사간부연수소 설치
1986. 10.	• 경찰대학부설 대공간부연수소 설치
1992. 10.	• 수사간부연수소를 경찰수사연수소로 확대 설치 • 대공간부연수소를 보안간부연수소로 변경
1996. 6.	• 보안간부연수소를 보안경찰연수소로 확대 설치

〈표 10〉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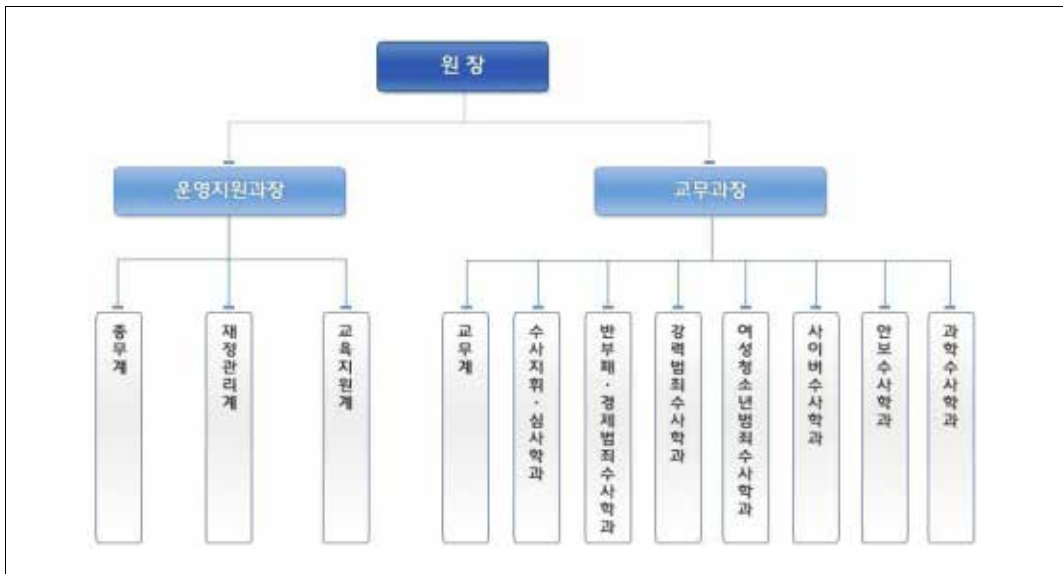
연월	내용
1999. 5.	• 경찰수사연수소와 보안경찰연수소를 경찰수사보안연수소로 통합
2007. 3.	• 경찰대학 부설기관 경찰수사보안연수소를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분리, 경찰수사연수원 개원
2013. 9.	•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남 아산(현 청사)으로 이전

자료: 경찰청, 『2022 경찰백서』, 2022; 경찰수사연수원, <https://www.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조직 및 기능

- 운영조직은 운영지원과 및 교무과(2과)로 구성,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운영인원(정원)은 총 64명
  - 운영지원과 아래 총무계, 재정관리계, 교육지원계를 두고, 교무과 아래 교무계(4계)와 7개 학과를 구성

[그림 5] 경찰수사연수원 조직도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https://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

- 2023년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 대상은 3만 6,678명, 교육 과정은 85개 과정, 220회, 교육인원(배정인원) 6,070명으로 계획
  - 학과별 교육 과정은 수사지휘·심사학과 교육과정은 11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13개, 강력범죄수사학과 17개, 여성청소년수사학과 8개, 사이버수사학과 11개, 안보 수사학과 8개, 과학수사학과 17개로 구성

〈표 11〉 최근 5개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육대상	교육과정(개)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배정인원)
2019	30,581	63	152	4,784
2020	31,199	60	119	1,890
2021	34,836	86	178	4,589
2022	36,101	81	215	6,199
2023	36,678	85	220	6,070

주: 2019년은 5개 학과, 2020년은 6개 학과, 2021년부터 7개 학과로 구성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운영 관련 자료」; 「교육과정 세부 내용」

### 3) 시설 현황

-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현 청사는 2013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건립
  - 본관동, 과학수사실습동, 제1, 2생활관 구축 이후 사후변성연구센터('21) 및 수사면담센터('22)를 증축

〈표 12〉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2(경찰청 부지)
준공/개원	2013년
부지면적	88,729㎡
주요시설	본관동, 과학수사실습동, 제1생활관, 제2생활관, 사후변성연구센터, 수사면담센터 등
세부시설 (본관동) 세부시설 (본관동)	- 지하1층: 상수도물탱크,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창고, 전기실, 시설관리원휴게실 - 지상1층: 재정관리계, 교무계, 문서고, 교수연구실, 당직실, 모의법정실, 모의범죄실습장, 최종락홀, 소/중 강의실 - 지상2층: 모의범죄실습장, 교수연구실, 종합통제실(가상실습실), 범죄연구실, 종합전산실, 동시통역실, 정보통신실, 마약범죄연구실, 사이버/KICS/심리증거수사 실험실습실, 북카페 - 지상3층: 원장실, 운영과장실, 교무과장실, 총무계, 소/대회의실, 교재실, 교수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외래교수실, 수사자료실 - 지상4층: 식당, 옥상정원
주요업무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신뢰 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표 12〉의 계속

구분	내용
외관	
	<p>① 본관                      ② 과학수사실습동                      ③ 제1생활관                      ④ 제2생활관                      ⑤ 증거물관리교육센터                      ⑥ 주차장</p>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중간설계 보고서」; 경찰수사연수원, <https://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13〉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건물명	층수		연면적(㎡)	준공연도
	지하	지상		
본관동	1	4	10,248.43	
제1생활관	-	7	7,412.08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2013년
제2생활관	-	3	1,398.83 (1인실 20실, 3인실 3실)	
과학수사실습실동	-	1	1,236.61	
사후변성연구센터(법인류학센터)	-	1	214.2	2021년
수사면담센터	-	1	140.91	2022년
관사	-	2	243	1994년
과학수사센터(증거물보관센터)	-	1	675	-
쓰레기분리수거장	-	1	63.23	-
합계	-	-	20,894.06	-

주: 과학수사센터(증거물보관센터)는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동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사전검토보안서」에서 경찰수사연수원으로 구분되었으나, 연수원은 재검토 과정 중 해당 건물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소속 건물로 경찰청에서 운영·관리 중이라고 제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세부 실별 면적 및 수용 인원」; 「경찰수사연수원 기존 시설」; 「기 제출자료 재확인」을 바탕으로 재작성

## 2. 유사사례 검토

〈표 14〉 유사사례(1) 경찰인재개발원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1
준공/개원	2009년
부지면적	1,742,632㎡
주요시설	본관/도서관동, 강당동, 강의동, 생활관, 체육관/후생관/식당 등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도서관동: 홍보관, 국제회의실 도서관, 교수연구실 등</li> <li>▪ 강당동: 차일혁홀, 안병하홀 등</li> <li>▪ 강의동: 대강의실, 중강의실, 일반강의실, 각종 실습실 및 분임실 등</li> <li>▪ 생활관: 숙소, 독서실, PC실 등</li> <li>▪ 실내사격장: 실탄·영상 시뮬레이션 사격장, 부대시설</li> </ul>
주요 기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직무교육</li> <li>▪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및 신입과정 교육</li> <li>▪ 경찰 관련 분야 연구 및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 등과의 교류협력</li> </ul>

자료: 경찰인재개발원, 『2018 경찰인재개발원 연보』, 2019; 경찰인재개발원, <https://www.phrdi.go.kr>, 검색일자: 2023. 5. 17.;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재인용

〈표 15〉 유사사례(2) 법무연수원(본원)

구분	내용
위치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준공/개원	2014년
부지면적	624,025㎡
주요시설	본관동, 제1강의동, 제2강의동, 후생동, 교정훈련센터 등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동: 원장실, 연구위원실, 검사 일반교수실, 대강당/소강당, 국제세미나홀, 도서관, 디지털홍보관 등</li> <li>▪ 제1강의동: 형사모의법정, 영상녹화조사실습실, 현장수사실습실, 보호관찰상담실습실, 역할극강의실, 위변조감식실습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전산교육실, 강사휴게실 등</li> <li>▪ 제2강의동: 어학실, 심리상담강의실, 전산교육실, 회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교정훈련과, 교정연수과, 교정교수실, 멀티미디어실, 강사지원실 등</li> <li>▪ 후생동: 직원식당/간부식당, 교육생식당 2개소, 연화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li> <li>▪ 교정훈련센터: 사격장, 교육실, 강의실, 교정장비보관실, 중앙통제실, 교정역사관 등</li> </ul>
주요 기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공무원 교육 및 법무행정 관련 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li> </ul> </li> <li>▪ 법치주의의 전파 및 공유,</li> <li>▪ 국제교류를 통한 범무한류에 기여</li> </ul>

주: 신동·지동·예동 및 양덕재는 생활관, 린넨실, 세탁실, 분임토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인동·의동은 생활관, 린넨실, 세탁실, 분임 토의실, 생활지도교수실 등으로 구성됨

자료: 국토교통부,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보도자료, 2015. 5. 27.; 법무연수원, <http://www.ioj.go.kr>, 검색일자: 2023. 4. 5.;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재인용

〈표 16〉 유사사례(3) 관세인재개발원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준공/개원	2008년
부지면적	415,109㎡
주요시설	본관, 강의동/해경연구센터, 후생관, 생활관, 체험학습관 등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 강의실, 중강당, 전산강의실, 분임토의실, 국제회의실 등</li> <li>▪ 체험학습관: 수입통관체험관, 여행자통관체험장, 전자통관체험장, 조사체험장 등</li> <li>▪ 생활관: A동 96실(192명 수용), B동 60실(120명 수용), 피트니스센터, 탁구장, 스마트워크센터, 힐링센터, 당구장, 세탁실 등</li> <li>▪ 야외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li> </ul>
주요 기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관세·무역 전문성을 배양, 미래 역량 함양 지원</li> <li>▪ 2010년부터 WCO(세계관세기구) RTC(지역훈련센터)로 지정, 외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관세 역량 전수</li> </ul>

자료: 관세인재개발원, <https://hrd.customs.go.kr>, 검색일자: 2023. 5. 17.

〈표 17〉 유사사례(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분	내용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준공/개원	2012년
부지면적	58,007㎡
주요시설	본관, 생활관 등
세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정보화교육실, 공유나눔마당, 강의실, 온라인 스튜디오, 도서마당, 사무실 등
주요 기능/특징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국토교통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전문교육 제공

자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https://tilit.molit.go.kr>, 검색일자: 2023. 5. 17.;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재인용

### 3. 관련계획 검토

- 2021년 1월, 경찰청은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아 ‘국민과의 약속’ 발표
  -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확충 및 교육학과 확대·개편 등 수사분야별 전문화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2023년 1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찰교육대개혁 추진계획(안)’은 중기 세부과제 중 하나로 ‘수사연수원 외연확장(증축사업)과 연계, 국내 최대의 수사교육기관을 넘어 세계적 수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을 밝힘
  - ‘교육주기 3년 단축, 사업기간 2021~2026년, 사업비 총 473억, 중간설계 검토 중’ 등 본 사업 내용을 직접 적시
  
- 경찰청의 「2023 주요 업무계획」은 ‘수사경찰 교육훈련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수사연수원 증축(‘21~’26년, 총사업비 473억) 및 교수요원 증원(경제·강력·교통·안보 담당 교수요원 증원 추진) 등 본 사업을 직접 명시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 1) 검토의 범위

- 본 사업의 추진 단계는 중간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비 증가 및 계획인원 조정으로 현시점에 적합한 적정성 검토 필요
  - 본 재검토에서는 비용 증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목적 및 부지계획,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당초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본 재검토의 의뢰시점을 고려해 2022년도 말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재검토

## 2) 적정 시설 규모 검토

- 경찰수사연수원의 적정 규모 산정은 요구안과 같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등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 중간설계도서, 사업계획안의 설계지침(Space Program) 등 기준 적용
  - 다만 연수원의 요구안 조정 요청으로 기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게 되었으며연수원의 제출자료 간 불일치 등이 확인되어 사업계획안의 불확실성이 커짐<sup>4)</sup>
  - 연수원의 공간구성이 일반 경찰관서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경찰관서의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설계지침과 중간설계 내역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

## 3) 시설규모 산출을 위한 기준인원 검토

- 시설 규모의 산정은 기준인원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는바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연수원으로부터 정원 내역을 전달받아 검토하고자 함
  - 계획설계(2022. 3.) 및 중간설계(2022. 8.) 시점으로부터 본 재검토 시점까지 복수 직급제에 따른 직급별 정원이 미세 조정되었을 뿐 총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제시<sup>5)</sup>
- 다만 교육연구시설로 정원뿐만 아니라 사용인원(교육인원)을 고려해야 함
  -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을 준용
  -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과 시설 수를 산출하여 비교 검토

4) 연수원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연면적(18,266㎡)은 유지하되 실별 구성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함

5)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정원 및 증원 계획 관련(수정-임기제 제외)」,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20호, 2022. 1. 3.; 훈령 제21호, 2023. 2. 6.)

#### 4) 대안의 설정

〈표 18〉 대안의 설정

구분		내용	
당초 사업계획안	요구서 요구안 (당초안)	- 사업주체의 조달청 조정요구 전 당초 지침면적 (조달청 검토 후 당초안을 요구안으로 선정)	
중간설계안		- 중간설계를 통해 도출된 조달청 검토요청안	
조달청 검토안		- 사업주체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른 조달청 검토안 (단, 조달청은 검토안과 별개로 당초안을 준용할 것을 제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규모검토	조정 요구안	- 중간설계안 설계면적을 토대로 조정 요구안을 설정하여 검토 (총면적이 조정요구서와 동일하도록 기타 공용시설면적 조절)
		대안	- 적정 기준인원 및 면적 검토
	비용검토	요구안	- 주무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조정요구서에 따른 비용
		검토안	- 요구안 면적을 기준으로 비용 검토
	대안	- 대안 면적을 기준으로 비용 검토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용 요구서(18,266㎡)와 동일하게 조정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비용 추정의 쟁점

##### 1) 공사비

##### 가) 기본공사비

- 본 재검토에서는 기본공사비 단가를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및 나라장터의 최근 연도 유사사례 단가를 검토하여 재산정하고자 함
  - 연도보정을 통해 물가변동을 반영한 단가로 재산정하고, 현장여건 공사비에 포함된 흙막이 공사비가 중복되므로 적용 사례에서 해당 공정을 제외하여 검토하고자 함

##### 나) 현장여건

- 주무부처에서 현장여건 비용으로 제시한 항목은 흙막이 공사 반영, 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에 따른 전신주 이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땀뿌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항목임
  - 공사비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한 항목은 내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안을 준용하고자 하며 중복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반영하고자 함

#### 다) 법령개정

- 법령개정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강화,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항목임
  -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관련 비용은 앞서 검토하는 조달청의 최근 연도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에는 포함되는 내용으로 사료됨에 따라 중복되는 비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충전시설 대수를 검토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내 설치단가 사례를 검토하여 산정하고자 함

#### 2) 보상비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쟁점
  -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필지와 공시지가, 감면비율 등을 검토하고자 함

#### 3)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지침에 따른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

####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 본 사업의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정책방향(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역 계획(아산시)과의 부합성을 검토
  - 사업계획의 준비정도
    - 요구안의 실 구성에 대한 조정 요청 검토
    - 실별 인원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검토
    - 기존 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성 및 증축 시 활용 계획의 구체성 검토

- 사업 추진에 있어 우려되는 지연 사항 등
  - 특히 법령 개정 및 현장 여건에 대한 반영으로 인하여 변경된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 사업 추진 부처의 추진 의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 등을 살펴봄
    -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경찰청, 사업 부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 및 아산시, 아산시 지역 주민 등이 가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를 검토
    - 주무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언론보도,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파악

###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 검토의 개요

##### 가. 사업개요

- 본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강의동 및 생활관동 증축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0년 사업 확정 이후 건설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급증으로 물가상승분 방어 및 각종 법정 분담금 등을 미반영 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
  -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물가상승분 및 현장여건, 법령개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상승, 부대비 요율 증가로 인한 증액 반영

〈표 19〉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변경요구안 (B)	증감(B-A)		변경 사유
			순증액	(%)	
사업규모	18,266㎡	18,266㎡	-	-	-
총사업비	47,312	56,681	9,369	19.8	-
1. 공사비	42,670	51,291	8,621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반영 (8,4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li> <li>- 법령개정 반영</li> <li>- 현장여건 반영</li> <li>- 각종 분담금 반영</li> </ul> </li> <li>• 법령 반영(2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li> <li>-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 모니터링</li> </ul> </li> </ul>
2. 보상비	-	218	218	순증	• 농지보전부담금 반영(「농지법」 제38조)
3. 시설부대경비	4,642	5,172	530	11.4	• 지침요율 반영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2. 적절성 검토

### 가.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라 수사 전문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경찰의 수사 교육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 증원 및 시설 확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연구진의 현장답사 결과, 본관동을 비롯한 4개동은 2013년 이전하여 약 10년이 된 건물로 교육인원 증원을 위한 공간 및 면적 부족, 환경개선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나. 교육인원의 적절성 검토

-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사업계획안에서 제시된 산술적인 목표 교육주기와 교육과정, 교육인원을 준용하여 검토

- 향후 사업추진 시점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 인원의 설정 등이 적절하게 부합되도록 전문기관의 교육 설계와 수요 추정 과정을 통해 적정 교육 인원을 산정하여 시설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 경찰수사연수원은 최근 1개월간 교육시작 일을 기준으로 19개의 교육과정(온라인 1개 포함)을 진행하고 침두시 8개의 교육과정에 총 265명의 교육생을 동시 교육한 것으로 나타남
  - 대략 추정하면 연간 교육과정은 228개, 교육인원은 최대 6,840여 명 수준이며 이는 기존 시설의 운용 역량과 교육과정 간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함
    - 제시된 2023년 교육계획(85개 과정, 220회, 6,040명)과도 유사한 수준이며, 일시점 교육인원이자 생활실 수용인원으로 제시한 300명과도 부합)
- 본 재검토에서는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과 시설 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함
  -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을 준용
  - 추가로 요구되는 인원과 시설 수는 과거 교육시간에 대한 기존 정원 및 시설 수의 비율을 목표 교육시간에 적용하여 산출

**〈표 20〉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추정**

구분	정원			강의실
		교수	행정	
기준 정원 <sup>1)</sup>	64인	30인	34인	6실
'18~'23년 교육시간 대한 평균 비율 적용 ('20년 제외) <sup>2)</sup>	138인 (+74인)	62인 (+32인)	76인 (+42인)	14실 (+8실)

주: 1) 기준 정원은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21호, 2023. 2. 6.)을 기준으로 함

2)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제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6) 기존 생활관은 제1생활관은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제2생활관은 1인실 20실, 3인실 3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감염병 확산 등을 감안하여 3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됨

〈표 21〉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비교

구분		기존 (2023년 2월 기준)	2027년 기준	
			연수원 증원 계획	연구진 추정
정원	교수 정원	30명	75명(+45) <sup>1)</sup>	62명(+32)
	행정 정원	34명	70명(+36)	76명(+42)
	정원	64명	145명	138명
강의실	일반강의실	6실	16실(+10)	14실(+8)
	컴퓨터강의실	6실	16실(+10)	14실(+8) <sup>2)</sup>
	강의실	14실	34실	30실

주: 1) 연수원 증원 계획의 교수요원 45명은 연구교수 2명을 포함함

2) 컴퓨터강의실은 연수원 증원 계획상 일반강의실과의 비율(1:1)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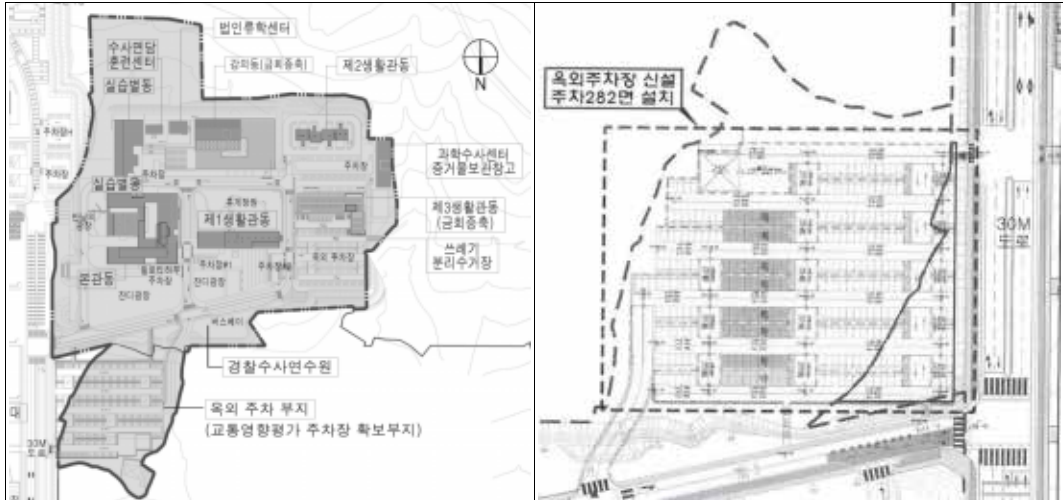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라. 부지계획의 적절성 검토

- 강의동은 유희부지 내 증축되는 반면, 생활관동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생활관동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분을 고려한 주차장 신설이 사업계획에 포함
  - 주차장 신설을 위해 11,828㎡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주차장 부지는 국유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하면 부지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현장답사 당시 추가적으로 활용할 부지가 구역 내에 없으며 기존 제1, 2생활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주차장 부지활용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
    - 주차장 부지 내 경찰인재개발원 재산관리 토지의 사용과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주차장 부지 활용에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 계획주차대수는 552대로 법정주차대수인 180대의 306.7%이므로 추가적인 지하주차장 설치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중간설계 도면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간설계 시의 신설 주차장 조성부지 10,027㎡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
    - 현재 사업부지 내 생활관동 증축에 활용할 유희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부지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전계획 등과 향후 추가적인 증축을 고려한 장기적인 부지활용 계획 필요

[그림 6] 신설 주차장 부지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심의의결보안서」;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 마. 기존 시설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 증축 강의동에는 기존 본관동에 설치된 강의실, 실습실, 저장보관실 등이 포함되므로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강의실 및 실습실의 경우, 시설 필요성이 상세히 제시된 점,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재검토에서는 제시된 실습실 구성 계획을 수용
- 기존 본관동 식당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증축 강의동에 통합 규모의 식당을 설치하고자 계획되어 기존 식당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통합 식당의 적정 규모 검토

## 바.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 1) 요구안의 사업개요

- 당초안은 주무부처의 설계지침(Space Program)에 따라 18,266㎡로 계획되었으나 중간설계 시 지침면적 대비 101.7%로 증가하여 조달청 검토 당시 규모 증가를 요구
  -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일부 실의 과다·과소 설계 및 강의동의 공용면적이 다소 과다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침면적(당초안과 동일)을 수용
  -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당초안의 면적과 동일한 18,266㎡로 제시

〈표 22〉 사업규모 개요

(단위: ㎡)

구분	현행안[시] (당초)	순증		조정 후 [A+B]	비고	
		조달청 검토요구	조정[B]			
규모 (연면적)	강의동	12,614	12,782(증168)	-	12,614	-
	생활관동	5,652	5,802(증150)	-	5,652	-
	계	18,266	18,584(증318)	-	18,266	지침면적 수용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 2) 요구안의 시설구성

- 본 재검토에서는 중간설계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기준으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중심으로 시설의 적정 규모를 추정
  - 조정요구서상의 ‘요구서 요구안’, ‘중간설계안’, ‘조달청 검토안’의 시설계획을 검토

〈표 23〉 요구안의 시설구성

(단위: ㎡)

구분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D]
		중간설계안[B]	조달청 검토안(C)	
강의동	12,614.40	12,781.92	12,541.96	12,614.40
생활관동	5,651.70	5,802.33	5,787.31	5,651.70
계	18,266.10	18,584.25	18,329.27	18,266.10

주: 조정 요구안은 중간설계안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의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 요구안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 가) 시설규모 검토 기준

- 규모 검토는 중간설계 설계면적을 조정한 ‘조정 요구안’, 연구진이 재검토한 ‘대안’으로 구분
- 경찰수사연수원 강의동 및 생활관동의 적정 시설규모 산정을 위하여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등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과 연수원의 제출자료를 검토
  - 또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 당초안과 동일하게 요구안을 제출받은바 연수원의 설계지침(Space Program)을 검토

#### 나) 경찰수사연수원 인원 기준(정원)

-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제시한 2022년 기준 정원은 <표 24>와 같이 경찰관 54명, 일반직 10명으로 총 정원은 64명임

〈표 24〉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단위: 명)

총계	경찰관									일반직	주무관
	소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64	54	1	2	3	16	22	8	1	1	10	22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전문(230206 훈령 21호)」

#### 다) 경찰수사연수원 현 시설 규모

- 증축 강의동 및 생활관동은 기존 연수원 시설 중 본관동 및 생활관동의 기능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검토를 진행

〈표 25〉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건물명	층수		연면적(㎡)	비고
	지하	지상		
본관동	1	4	10,248.43	식당, 강의실, 실습실, 교수실 등
제1생활관	-	7	7,412.08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제2생활관	-	3	1,398.83	1인실 20실, 3인실 3실
합계	-	-	19,059.34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기존 시설」; 「기 제출자료 재확인」을 바탕으로 재작성

#### 4) 세부시설 규모 적절성 검토

##### 가)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결과

- 전체 강의동과 생활관동의 합계는 대안 15,869.63㎡로 요구안의 86.9% 수준
  - 강의동은 10,156.93㎡로 요구안 12,614.40㎡ 대비 2,457.46㎡ 감소
  - 생활관동은 5,712.70㎡로 요구안 5,651.70㎡ 대비 61.00㎡ 증가
  
- 강의동은 교수실과 기타 공용시설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활관동은 생활실의 면적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여 편의시설, 관리시설, 기타 공용시설의 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면적이 증가

〈표 26〉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결과

(단위: ㎡)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B]	증감(B-A)	
강의동	12,614.40	10,156.93	-2,457.46	
전용공간	수사지휘·심사학과	144.71	90.00	-54.71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196.42	180.00	-16.42
	강력범죄수사학과	662.91	624.80	-38.11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383.65	372.00	-11.65
	사이버수사학과	917.17	704.29	-212.88
	과학수사학과	88.87	90.00	1.13
	교수실	1,853.62	1,306.70	-546.92

〈표 26〉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B]	증감(B-A)
전용공간	강의실	1,994.02	1,890.00	-104.02
	사무실	458.58	414.00	-44.58
	식당	823.52	697.00	-126.52
	편의시설	407.47	145.64	-261.83
	저장보관실	400.60	176.95	-223.65
	소계	8,331.54	6,691.38	-1,640.16
공용공간	설비시설	377.16	663.00	285.84
	기타 공용시설	3,905.70	2,802.55	-1,103.14
	소계	4,282.86	3,465.55	-817.30
<b>생활관동</b>		<b>5,651.70</b>	<b>5,712.70</b>	<b>61.00</b>
전용공간	생활관	3,300.93	3,410.73	109.80
	편의시설	318.87	291.04	-27.83
	관리시설	101.16	60.00	-41.16
	소계	3,720.96	3,761.77	40.81
공용공간	설비시설	356.05	396.00	39.95
	기타 공용시설	1,574.69	1,554.93	-19.76
	소계	1,930.74	1,950.93	20.19
<b>합계(강의동+생활관동)</b>		<b>18,266.10</b>	<b>15,869.63</b>	<b>-2,396.47</b>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18,266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 IV. 비용 추정

### 1. 비용 추정의 개요

#### □ 기본방향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총사업비관리 지침」 등에 따라 비용 추정
- 본 재검토의 분석 기준연도는 2022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기준단가의 조사시점이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비용 보정지수를 활용하여 단가 보정

#### 가. 요구안의 총사업비

- 본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473억 1,200만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총사업비는 566억 8,100만원으로 수요기관의 증액 요구에 따라 자료 및 산출내역 등 근거로 검토
- 요구안은 조달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84억 700만원, 「야생생물법」에 따른 2억 1,400만원 증가 등을 포함하여 당초안보다 총 93억 6,900만원 증가한 566억 8,100만원으로 요청

〈표 27〉 총사업비 요구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	(%)		
총사업비	47,312	9,369	19.8	56,681	
1. 공사비	42,670	8,621	20.2	51,291	물가변동 반영
1-1. 기본공사비	42,670	4,950	11.6	47,620	적정 공사비단가 반영
1-1-1. 물가변동반영	42,670	4,950	11.6	47,620	
1-2. 현장여건	-	3,324	-	3,324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반영(8,407백만원) -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 - 법령개정 반영 - 현장여건 반영 - 각종 분담금 반영
1-2-1. 흙막이공사 반영	-	707	-	707	
1-2-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주차장 신설	-	2,161	-	2,161	
1-2-3. 주차장 신설부지 전신주 간섭에 따른 이설	-	66	-	66	

〈표 27〉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	(%)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비 대상사업	-	20	-	20	법령반영(214백만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 모니터링
1-2-5. 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 대상사업	-	156	-	156	
1-2-6. 맹꽁이 정밀조사·포획 이주·모니터링 대상사업	-	214	-	214	
1-3. 법령개정	-	347	-	347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	195	-	195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	124	-	124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	28	-	28	
2. 보상비	-	218	순증	218	
2-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218	-	218	농지보전부담금 반영 (「농지법」 제38조)
3. 시설부대경비	4,642	530	11.4	5,172	
3-1. 설계비	2,125	-	-	2,125	
3-2. 감리비	2,419	510	21.1	2,929	지침요율 반영
3-3. 시설부대비	98	20	20.4	118	지침요율 반영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나.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 비용 추정 시 검토안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의 요구안 규모 18,266㎡에 대해 비용을 추정하고, 대안은 앞서 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산정한 15,870㎡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

〈표 28〉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단위: ㎡)

구분	요구안(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검토안		대안	
		면적(B)	증감(B-A)	면적(C)	증감(C-A)
대지면적	88,729	88,729	-	88,729	-
연면적	18,266	18,266	-	15,870	-2,396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 2. 총사업비 추정

### 가. 공사비

-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본 사업은 중간설계 단계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안과 중간설계 내역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결과를 검토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

#### 1) 기본공사비

- 본 재검토에서는  $\text{m}^2$ 당 공사비용 추정이 가능하도록 조달청의 공사비 정보광장과 나라장터의 자료 중 강의동과 생활관동 부문의 세부분석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연면적과 층수 등의 유사성을 고려해 최근 유사사례 6개 선정
    - 본 재검토에서 증액 요구된 휴막이 공사비는 별도 반영하므로 유사사례 중 관련 공사비가 포함된 사례는 해당 공사비를 제외한 후 건축공사비 단가를 추정

〈표 29〉 강의동 및 생활관동 단가 기준

구분		발주연도	연면적( $\text{m}^2$ )	총공사비(원)	규모
강의동	중소기업 총청연수원 신축공사	2018	11,892	28,572,753,754	B1/4F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	2022	11,807	34,679,418,175	B1/4F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공사	2022	13,080	39,136,637,000	B1/4F
생활관동	중앙교육원 기숙사 증축공사	2017	5,912	11,214,999,392	B1/4F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2021	6,709	15,911,406,200	B1/4F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	2022	4,084	10,176,637,000	6F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pcae.g2b.go.kr>;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 유사사례를 통한 단위공사비는 강의동 2,706천원/ $\text{m}^2$ , 생활관동 2,283천원/ $\text{m}^2$ 로 산정됨
  - 2022년 말로 연도보정하고 2020년 이전연도 공사비는 제로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제로에너지 5등급 공사비 평균 증가율 5% 적용

- 요구서상 기본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물가변동 반영'으로, 공사비 단가를 재산정하고 검토안과 대안 각 면적에 적용한 결과, 검토안은 470억 4,500만원, 대안은 405억 3,300만원으로 나타남

〈표 30〉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면적(㎡)	전체	18,266	18,266	15,870
	강의동	12,614	12,614	10,157
	생활관동	5,652	5,652	5,713
단위공사비 (원/㎡)	전체	2,370,027	-	-
	강의동	-	2,706,415	2,706,415
	생활관동	-	2,283,418	2,283,418
1-1. 기본공사비		43,291	47,045	40,533
1-1-1. 물가변동 반영		43,291	47,045	40,533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2) 현장여건

- 현장여건에 포함되는 항목은 흙막이 공사, 주차장 신설, 전신주 이설,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땀띠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임

### □ 흙막이 공사

- 제출된 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흙막이 공사비용은 강의동 3억 4,300만원, 생활관동 1억원으로 공사 원가요율 180%를 적용하여 본 재검토에서는 7억 9,700만원으로 산정

〈표 31〉 흙막이 공사비 산정

구분	강의동(원)	생활관동(원)	합계(원)	원가요율(%)	금액(원)
흙막이 공사	343,271,926	100,418,412	443,690,338	180	796,953,722

주: 원가요율 = (흙막이 공사 직접공사비 + 제비율 흙막이공사 직접공사비) × 80%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조달청 증감액 검토서」

□ 주차장 신설 및 전신주 이설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 전 산출된 주차대수 282대를 기준으로 중간설계 시 진입도로 등을 추가 고려하여 산정된 주차장 조성부지 10,027㎡는 적정하다고 판단
- 주차장 신설 공사비에 대한 조달청 검토안을 다른 주차장 조성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조달청 검토안을 준용
  - 조달청 검토안의 단위공사비는 215,534원/㎡, 주차장 조성 사례 3건의 평균 단위 공사비는 178,427원/㎡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사면에 위치하여 단차가 있으므로 옹벽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표 32〉 주차장 신설 공사비 산정

(단위: 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 직접공사비	394,065,117	527,845,677	106,388,227	921,910,794
나.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제비율)	122,022,560	426,393,738	32,778,213	687,562,738
다. 도급공사비(가+나)	516,067,677	954,239,415	139,166,440	1,609,473,532
라. 관급자재	551,690,859	-	-	551,690,859
공사비(다+라)	1,067,758,536	954,239,415	139,166,440	2,161,164,391

주: 제비율은 재료비 1.3096, 노무비 1.8078, 경비 1.3081 적용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표 33〉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분담금

(단위: 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 직접공사비	30,831,088	4,591,446	-	35,422,534
나.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제비율)	9,545,305	3,708,970	-	13,254,275
다. 도급공사비(가+나)	40,376,393	8,300,416	-	48,676,809
라. 이설분담금	17,656,760	-	-	17,656,760
공사비(다+라)	58,033,153	8,300,416	-	66,333,569

주: 제비율은 재료비 1.3096, 노무비 1.8078, 경비 1.3081 적용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제로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

-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2020년 이전 공사비 사례단가에 제로에너지 공사비 증가율 5%를 적용

○ ‘법령개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추가로 산정

□ 땀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 연수원은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3년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으로 부가세 포함 2억 1,400만원을 공사비 항목으로 예산 증액 신청하였으며, 본 재검토에서는 비용 산정 내역서를 준용하여 검토

□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 요구안 30억 2,200만원 대비 검토안과 대안은 600만원 감소한 30억 1,600만원으로 산정

- 흙막이 공사비는 요구안 대비 증가, 주차장 신설과 전신주 이설, 땀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은 사업계획안을 준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

- 공사비 감소의 주된 원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을 공사비 단가와 ‘법령개정’에 포함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임

〈표 34〉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1-2. 현장여건	3,022	3,016	3,016
1-2-1. 흙막이 공사	643	797	797
1-2-2. 주차장 신설	1,965	1,965	1,965
1-2-3. 전신주 이설	60	60	60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18	-	-
1-2-5. 에너지저장장치(ESS)	142	-	-
1-2-6. 땀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195	195	195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3) 법령개정

- 법령개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강화,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임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강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추정방안」에 따라 해당 비율에 따른 비용을 산정

〈표 35〉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연도	2018	2019	2020	20~21	22~23	24~25	26~27	28~29	30~
공급의무 비율(%)	24	27	30	30	32	34	36	38	4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 공사비 단가 최근 사례의 기준연도인 2022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인 32%에 대한 설치비용 고려하여 본 사업의 인허가 시점 연도인 2024~2025년의 의무비율인 34%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분 2%에 대해서 추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비는 검토안 9,400만원, 대안 8,600만원으로 산정

〈표 36〉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구분	원별 설치규모 (kW)	원별 공사 단가 (천원/kW)	공사비(34% 기준) (백만원)	적용공사비(2% 기준) (백만원)
검토안	태양광	525	1,664	-
	지열	623	1,174	-
	소계	-	-	94
대안	태양광	479	1,664	-
	지열	568	1,174	-
	소계	-	-	86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안내」, 2022.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1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함
-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검토한 결과, 총 6,200만원으로 산정
  - 설치비용의 공사비 단가는 나라장터의 최근 사례를 통해 1대당 설치금액을 검토하고 연도를 보정하여 급속 충전시설 1대 2,300만원, 완속 충전시설 1대 3,900만원으로 검토

〈표 3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용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급속	완속	합계
전기자동차	1	10	11
공사비 단가	22,886,981	3,877,082	-
합계	23	39	62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 법령개정 공사비 추정 결과

- 검토안은 156백만원, 대안은 148백만원으로 산정

〈표 38〉 법령개정 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1-3. 법령개정	315	156	148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강화	177	94	86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113	-	-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25	62	62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4) 공사비 종합

- 요구안의 공사비 512억 9,100만원 대비 검토안은 39억 4,800만원이 증가한 552억 3,900만원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안은 32억 2,400만원 감소한 480억 6,700만원으로 검토
- 검토안과 대안의 주요 증감 원인은 기본공사비의 단가 재산정에서 기인하며, 기본공사비에 포함되어 '현장여건'과 '법령개정'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는 등으로부터 변동이 발생

〈표 39〉 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1. 공사비	51,291	55,239	3,948	48,067	-3,224
1-1. 기본공사비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1-1. 물가변동 반영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2. 현장여건	3,022	3,016	-6	3,016	-6
1-2-1. 흙막이 공사 반영	643	797	154	797	154
1-2-2. 주차장 신설	1,965	1,965	-	1,965	-
1-2-3. 전신주 이설	60	60	-	60	-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18	-	-18	-	-18
1-2-5. 에너지저장장치(ESS)	142	-	-142	-	-142
1-2-6.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195	195	-	195	-
1-3. 법령개정	315	156	-159	148	-168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177	94	-83	86	-91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113	-	-113	-	-113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25	62	36	62	36
1-4. 부가가치세	4,663	5,022	359	4,370	-293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보상비

-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면적 11,143㎡ 기준 공시지가의 30%인 4억 3,500만원에 「농지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50%)을 적용해 2억 1,700만원으로 산정

〈표 40〉 농지보전부담금 면적당 금액

(단위: ㎡, 원, %, 백만원)

구분	전용면적	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	감면비율	비용
전	11,143	434,902,050	50	217

주: 1. 농지: 전, 답, 과, 유지, 수로, 제방(「농지법」 제2조)

2. 농지보전부담금=전용 농지면적(㎡)×개별공시지가의 30%, 5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적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 다. 시설부대경비

### □ 시설부대경비 추정 기준

- 조사비 및 측량비, 설계비, 건설사업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 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시설부대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총공사비는 앞서 추정한 공사비(기타 법정경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 1) 조사 및 측량비

- 본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으로 이미 중간설계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추가적인 조사 및 측량비의 산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

#### 2) 설계비

-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심사비, 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등 기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비의 증감 없이 제시되었으나, 전체적인 면적이나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설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비를 산정
  - 설계비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

### 3) 감리비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은 건축 공사 공사복잡도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본 사업은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통의 공종 요율을 적용

### 4)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에 따라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 5) 시설부대경비 종합

- 관련 지침에 따른 산정 결과, 검토안의 시설부대경비는 요구안의 51억 7,200만원 대비 3억 5천만원 증가한 55억 2,2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은 요구안 대비 2억 3,600만원 감소한 49억 3,600만원으로 산정
- 시설부대경비의 주요 변동 원인은 검토안과 대안 모두 공사비 변동에서 기인함

〈표 41〉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설계비	1,932	2,380	449	2,079	148
감리비	2,663	2,467	-196	2,258	-405
시설부대비	107	172	65	150	42
부가가치세	470	502	32	449	-21
합계	5,172	5,522	350	4,936	-236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라. 예비비

- 본 사업의 단계는 중간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예비비는 제외함

###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 총사업비 추정 결과, 요구안 대비 검토안은 42억 9,700만원 증가, 대안은 34억 6,1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

○ 검토안의 주요 증가 원인은 공사비 단가 증가로 확인되며, 대안은 면적의 감소(2,396㎡)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표 42〉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총사업비	56,681	60,978	4,297	53,220	-3,461
1. 공사비	51,291	55,239	3,948	48,067	-3,224
1-1. 기본공사비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1-1. 물가변동반영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2. 현장여건	3,022	3,016	-6	3,016	-6
1-2-1. 흙막이 공사 반영	643	797	154	797	154
1-2-2. 주차장 신설	1,965	1,965	-	1,965	-
1-2-3. 전신주 이설	60	60	-	60	-
1-2-4.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18	-	-18	-	-18
1-2-5. 에너지저장장치(ESS)	142	-	-142	-	-142
1-2-6. 맹공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195	195	-	195	-
1-3. 법령개정	315	156	-159	148	-168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177	94	-83	86	-91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113	-	-113	-	-113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25	62	36	62	36
1-4. 부가가치세	4,663	5,022	359	4,370	-293
2. 보상비	218	217	-1	217	-1
3. 시설부대경비	5,172	5,522	350	4,936	-236
3-1. 설계비	1,932	2,380	449	2,079	148
3-2. 감리비	2,663	2,467	-196	2,258	-405
3-3. 시설부대비	107	172	65	150	42
3-4. 부가가치세	470	502	32	449	-21

자료: 연구진 작성

## V. 정책성 분석

###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추진여건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

### 2. 사업추진여건

####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1) 상위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을 중점추진 업무로 세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경찰수사연수원을 포함한 경찰교육타운의 조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정책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계획과의 일치
  - 경찰청은 매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교육 인원 및 인프라 확대를 목표하고 있음
  - 특히 「2023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2023)은 핵심과제인 ‘수사경찰 교육훈련강화’에서 수사교육동 증축사업을 세부과제로 명시
  - 2023년 1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립 및 시행 중인 「수사경찰교육대개혁 추진 계획」은 ‘책임수사기관으로, 경찰수사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교육동 증축사업을 명시
  - 따라서 본 사업 목적이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 계획과의 일치
  - 아산시의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2008)에서 ‘품격높은 교육·문화도시 육성’

을 위한 하나의 발전방향으로 경찰수사연수원과 인근에 위치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을 합친 경찰교육타운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교육동 증축사업은 결과적으로 경찰교육타운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일치함

## 2) 사업의 준비 정도

□ 사업의 준비 정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세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기존 사업계획 불분명) 연수원은 요구안의 연면적(18,266㎡)을 유지하되 중간설계안(18,584㎡)의 실 구성을 채택하여 조정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함
  - (증원 계획 번복) 교수 인원, 연구교수 인원, 행정 인원 등을 지속적으로 변경, 증원 계획과 시설 증축 계획 간의 연계성 저하
  - (기존 시설 정보의 부정확성) 기존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증축 계획에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 가능
- 기존 시설 등의 철거 및 이전, 장기적인 부지활용과 같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의 계획 필요
  - 본 사업에서의 주요한 계획 중에 하나는 생활관동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증축하는 것과 이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분을 고려한 주차장의 신설임
  - 신설되는 주차장의 부지는 국유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하면 부지활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맹꽂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동·식물성조사) 수행 중 범정보호종인 맹꽂이 10개체의 서식이 발견되었으며, 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3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함
  - 연수원은 맹꽂이를 사업지구 내부에 조성된 대체서식지로 모두 이전할 계획을 밝

했으나,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생태계 보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주계획(포획 방법, 시기, 이주 후 유지관리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나.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 본 사업의 추진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
  -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경찰청은 수사교육동 증축에 매우 적극적임
  - 아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현 단계에서 본 사업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수사교육동 증축은 현 경찰청 부지 내 건축이기에 지역 주민과 관련성이 적으며, 주변에 민가가 적어 공사로 인한 불편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
    -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 교육기관(경찰대학, 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의 직원 및 교육생 등 추가 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본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나 아산시 또한 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현 사업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경찰수사연수원 우측에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통해 경찰교육타운으로 발전을 기대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1. 지역낙후도

- 17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에 따르면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충청남도의 순위는 13위로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67개 시·군 중 40위로 나타남

## 2. 균형발전효과

###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입액은 순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건설(비주거용 건물) 부문에 검토안 기준 552억원, 대안 기준 482억원을 투입함

〈표 43〉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검토안	전국	유발액/고용자수	1,103	454	644	463
	충남	유발액/고용자수	681	291	402	293
		지역 비중(%)	61.7	64.1	62.4	63.1
대안	전국	유발액/고용자수	963	397	562	405
	충남	유발액/고용자수	595	254	351	255
		지역 비중(%)	61.7	64.1	62.4	63.1

자료: 연구진 작성

- 검토안 기준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291억원, 지역 GRDP로 표준화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232%, 대안 기준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254억원, 지역 GRDP로 표준화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203%로 나타남
- 본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체 사업, 유사 규모 사업, 유사 부문(건축 외) 사업, 유사 규모·부문 사업의 평균값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단위: 억원, %, 건)

구분	본 사업				비교치 (2016~2021년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검토안		대안		전체 사업 <sup>2)</sup>		유사 규모 <sup>3)</sup>		유사 부문 <sup>4)</sup>		유사규모·부문 <sup>5)</sup>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생산 유발효과	1,103	681	963	595	9,910	6,324	1,289	2,787	2,983	1,779	1,424	830
부가가치 유발효과	454	291	397	254	4,005	2,731	524	353	1,206	788	561	367

〈표 44〉의 계속

(단위: 억원, %, 건)

구분	본 사업				비교치 (2016~2021년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검토안		대안		전체 사업 <sup>2)</sup>		유사 규모 <sup>3)</sup>		유사 부문 <sup>4)</sup>		유사규모·부문 <sup>5)</sup>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	0.0232 <sup>1)</sup>	-	0.0203 <sup>1)</sup>	-	0.4918	-	0.0703	-	0.1573	-	0.0691
사업 수	-				77		29		14		8	

주: 1) 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투입액(검토안 552억원, 대안 482억원)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인 충청남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1,254,164억원, 2021년 기준)으로 나눈 지수를 의미함  
 2) 제시된 기준치는 2016~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7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3) 유사 규모 비교치는 1천억원 미만의 사업의 평균값임  
 4) 유사 부문 비교치는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5) 유사 규모·부문 비교치는 1천억원 미만인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자료: 연구진 작성

##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1. 종합결론

- 본 사업은 2021년 총사업비 473억 1,200만원이 최초 편성되었으며, 물가변동,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야생생물법」 적용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93억 6,900만원 증액된 566억 8,100만원으로 조정 요구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
- 본 재검토에서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설계지침, 「경찰관서 설계기준」, 중간설계 내역서, 조달청 검토서, 연수원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비용 추정 결과를 도출
  - 조정요구서상의 시설 규모는 당초안(18,266㎡)과 동일하게 제시되었으나, 본 재검토 과정 중 연수원은 세부 공간의 구성을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여 기존 사업계획이 불분명해짐
- 사업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없고 주차장 조성부지 면적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추가 증축을 고려한 장기적인 부지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 규모의 적절성 검토 결과, 강의동은 10,156.93㎡(요구안 12,614.40㎡), 생활관동은 5,712.70㎡(요구안 5,651.70㎡)을 대안으로 도출
  - 장래 교육주기 단축을 목표로 하는 교육연구시설의 증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용인원(교육인원)과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재검토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계획을 준용하고 교육계획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과 시설 수를 대안으로 설정
    - 마찬가지로 연수원의 실습실 구성 계획을 수용하고 생활관동의 경우 연수원에서 제시한 예상 침투 교육인원(2027년 510명)을 기준으로 검토
  
- 기본공사비와 현장여건 및 법령개정에 따른 비용,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요구안 566억 8,100만원으로부터 검토안 609억 7,800만원, 대안 532억 2천만원으로 검토
  - 기본공사비는 유사사례 공사비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제로에너지 공사비를 반영
  - ‘현장여건’ 중 흙막이 공사, 주차장 신설,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은 내역서 등을 검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제로에너지 공사비 및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별도 반영하지 않음
  - ‘법령개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고, 최근 나라장터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산정
    - 외벽마감재 불연성능향상의 경우, 본 재검토에서 반영한 유사사례 공사비와 조감도 등을 고려할 때 증액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보상비는 주차장 신설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시설부대경비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정책성 분석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나누어 검토
  -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재검토 과정 중 연수원의 사업계획 조정 요청, 증원 계획과 기존 시설 현황 등에 대한 번복 제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준비 정도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 더하여 환경영향평가 수행 중 발견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의 대체서식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사업 추진주체의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나 아산시, 지역 주민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현 사업 방향에 대한 수정 요구는 확인되지 않음

□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충청남도 아산시는 17개 광역시·도 기준 13위, 167개 시·군 기준 40위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검토안 기준 0.0232%, 대안 기준 0.0203%로 나타남

## 2. 정책제언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

○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준인원 및 정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조정 요구안의 구체성 미흡,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이전 및 맹꽁이 서식지 이주에 대한 계획 부재 등과 같은 사업 지연의 잠재적 요인 해소 필요

○ 경찰수사연수원 및 유사 교육기관의 시설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법적 기준 또는 규정 마련 필요



#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III.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IV. 비용 추정
- V. 정책성 분석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 사업의 추진 배경

경찰청은 2021년 사업계획 당시 범죄의 지능화,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수사환경의 변화와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전문 교육연구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전문수사 이론교육, 실습 위주 교육, 최신 수사기법 연구·교육을 통한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확대 및 수사 경찰의 교육주기 단축(약 6→3년 이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수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매년 4,850여 명(전체 수사관의 15.6%)을 교육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증원 및 여성청소년, 교통, 외사 분야 등 수사부서 확대와 기능별 수사영역 세분화로 전문·심화 교육 대상자가 점증 가속화되어 수사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sup>7)</sup> 또한 다양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과 첨단범죄에 대비한 신 수사기법 연구개발, 사물인터넷(IoT), AI, VR,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새로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년 주기 교육이 타당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주기는 약 6년/인으로 타 부처 교육기간(2년 이내)과 비교되며 이로 인해 수사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기초·심화·전문·보수 교육 등 교과과정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사건, 안전사고, 젠더 폭력, 민사법기반, 수사인권 교육 과정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또한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주기에 대한 외부 지적 등 문제 제기도 꾸준히 지속되어 2016년 경찰청 감사에서는 수사 경찰의 4년 교육주기 이행을 요구 및 지적받은 바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

---

7) 연수원에서 제출한 2018~2023년 교육과정 세부 내용에 따른 평균 교육인원(배정인원)은 4,492명으로 나타남

혁분과에서는 현장 수사관 교육을 최소 2~3년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 교육주기 단축을 위해 2019년부터 일부 교육과정의 기간 단축(3→1주) 및 횟수 증대를 통해 전체 교육인원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을 개진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수사인력 증대와 함께 수사인력 구조, 범죄 수법의 다양화,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수사교육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2020. 2. 4. 일부개정)으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이후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경력수사관들의 수사현장 이탈로 신입수사관 비중이 증가하여 중간관리자 및 신입수사관 교육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보험범죄, 부동산범죄 등 새로운 범죄수법의 등장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0. 21. 시행) 및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 제정, 「군사법원법」(2022. 7. 1. 시행) 개정, 「국정원법」(2024. 1. 1. 시행 예정)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9. 24. 시행) 개정 등을 통한 수사영역 확대, 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방법 수행 등으로부터 수사교육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경찰청은 고도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시설 등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경찰 전문 교육주기를 단축하여 현장인력에 맞는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자 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경찰관 교육주기 3년을 목표로 연간 98개 과정, 373회, 1만 1,2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동 및 생활관동 증축 추진을 목적하였다.<sup>8)</sup>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최상의 교육 인프라 제공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생활관 확보로 안정적인 교육기반 조성, 교육주기 단축 및 치안 환경 변화에 맞춘 교과과정 확대 운영, 수사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기여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나아가 수사경찰의 정체성 확립과 자신감 있는 법 집행,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인권 및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연수원은 재검토 과정에서 교육주기 3년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및 인원을 연간 112개 과정, 403회, 1만 2,480명으로 정정 제시함

## 2.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사업의 추진근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및 제31조(직무)가 제시되었다.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및 제31조(직무)는 경찰수사연수원을 경찰청장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교육훈련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찰수사연수원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본 사업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국고 지원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 나. 사업의 추진 경위

2017년 9월 경찰수사연수원은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제17차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경찰수사전문성 제고방안(교육체계 개선 등)’에 대하여 교육체계 및 인프라 측면의 일부 미흡함, 즉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육인원 한계를 지적하고 조직구조 개편(기능 신설 등), 인력, 예산, 시설 확충과 같은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 및 특사경 등에 대한 최소 5년 주기 교육을 위해서는 약 3배 수준의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연수원 교육기반 확대를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교육주기 및 교육과정의 한계, 전문성과 학과구성, 연구인력 등의 문제를 적시하고 교육주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시설 인프라 확보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교육 주기를 최소 2~3년 이내로 단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음을 밝히며, 교육주기 단축(2년)에 맞춰 교육과정 149개, 593회, 교육인원 1만 7,587명, 일시점 최고 교육인원을 1,553명으로 산정하고 일반 강의실 42개실, 컴퓨터 강의실 14개실, 분임토의실 28개실 등이 추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표 I-1〉, 〈표 I-2〉 참고). 이와 같은 경찰수사연수원 확대 개편방안은 같은 해 6월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제36차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1-1〉 교육주기별 교과편성(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학과	주기	인원(명)	2018년		3년주기		2년주기		1년주기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계		32,312	51	3,557	98	11,200	149	17,587	215	32,801
융합수사		17,923	7	637	22	2,240	33	3,260	51	6,170
교통범죄		3,000	-	-	8	1,080	11	1,980	17	3,060
인권수사		600	-	-	4	240	8	480	12	720
경제범죄수사		-	4	450	10	1,080	14	1,860	15	3,750
지능범죄수사		-	6	360	11	990	17	1,200	20	2,340
사이버수사		1,517	6	270	8	480	13	950	17	1,490
보안수사		1,905	2	110	3	660	5	1,080	7	1,920
외사수사		379	2	50	3	140	4	250	6	390
강력범죄수사		-	6	680	11	2,000	17	3,000	25	6,000
여청수사		5,827	4	360	8	1,920	13	2,880	22	5,800
과학수사		1,161	14	647	10	370	14	647	23	1,161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수사연수원 교육기반 확대를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표 1-2〉 교육기반 시설 확대(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시설	주기	2018년 (3,557명/년)			2년주기 (17,587명/년)		시설기준	
		소계 (a=b+c)	현재 <sup>b</sup>	부족 <sup>c</sup>	소요 <sup>d</sup>	추가 <sup>e</sup> (e=d-b)		
총계		205	190	15	939	749		
강의실	일반	10	7	3	49	42	30인 기준	
	외국인	1	1	-	1	-	30인 기준	
	컴퓨터	6	6	-	20	14	30인 기준	
	분임	12	-	12	28	28	5~6인 기준	
	단체	대형	-	-	-	-	-	500명이상
		중형	2	2	-	2	-	500명이하
소형		1	1	-	1	-	100명이하	
실습실		6	6	-	69	63		
생활실		166	166	-	766	600	2인 1실 등	
도서관		-	-	-	1	1		
구내식당		1	1	-	2	1		

'18년 일시점 최고(300명 연인원 44,100명) / 2년주기(1,533명 / 연인원 175,910명)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수사연수원 교육기반 확대를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경찰청은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시설(강의동, 생활관동) 증축사업'을 반영, 제출하였으며 2021년 '경찰청 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을 위한 예산이 최초 편성되었다. 이후 2021년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8월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그해 11월 이에 대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다.

당초 사업규모(연면적)는 18,266㎡, 공사비는 426억 7천만원(총사업비 473억 1,200만원)이었으며, 중간설계 이후 사업규모(연면적) 18,584㎡, 공사비 532억 8,800만원으로 각각 318㎡ 증가, 106억 1,800만원 증액되었다. 이에 대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규모는 지침면적을 수용하여 당초와 같은 18,266㎡, 공사비는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과 법령 개정 등에 따라 510억 7,7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에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 18,266㎡, 공사비 512억 9,100만원(총사업비 566억 8,100만원)으로 현행안 대비 86억 2,100만원 증액(총사업비 93억 6,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 제1항<sup>9)</sup>에 따라 2023년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요구 간의 공사비 차이는 적정성 검토 시 공사비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법정보호종 맹꽂이 발견에 따른 관련 용역사업비(맹꽂이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대상사업) 2억 1,400만원을 경찰청 및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공사비 항목으로 다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

9)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표 1-3〉 사업의 추진 경위

연월	내용
2018. 3.	• 수사교육기반 확대를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수립
2018. 6.	•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보고, 수사연수원 확대 공감
2020. 12.	• 국유재산관리기금 정부안 편성('21년 사업)
2021.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1. 6.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2021. 8.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2021. 11.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업체 선정
2021. 12.	• 기본설계 착수
2022. 2.	• 기본설계 완료
2022. 5.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2. 8.	• 중간설계 완료
2022. 11.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3. 2.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요청(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128)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조정요구서」;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최초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자료」;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경찰수사연수원)」; 「중간설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경찰수사연수원 현 청사(충남 아산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강의동과 생활관동을 각 1개동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최초 예산이 편성되었다. 당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7,137㎡, 연면적 18,267.6㎡, 총사업비는 473억 1,200만원, 사업기간은 2021~2024년으로 계획되었으며, 이후 부지면적 88,729㎡, 연면적 18,266㎡, 사업기간 2021~2026년으로 조정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금회 총사업비 조정 요구액은 566억 8,100만원으로 현행안 대비 93억 6,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과 법령 개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1-4〉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 개요

구분	현행안			조정요구안
사업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2(경찰청 부지)			
사업 규모	부지면적 <sup>1)</sup>	88,729㎡		
	연면적	<2021년도> 18,268㎡ - 강의동 12,882㎡ - 생활관동 5,385㎡	<2022년도> 18,266㎡ - 강의동 12,881㎡ - 생활관동 5,385㎡	<2023년도> 18,266㎡ - 강의동 12,614㎡ - 생활관동 5,652㎡
사업기간 <sup>2)</sup>	2021~2026년(6년)			
사업주체	경찰수사연수원(경찰청)			
재원분담	국고 100%(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47,312백만원			56,681백만원

주: 1)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서는 67,137㎡로 계획되었으나, 2022년도부터 부지면적을 변경(88,729㎡) 계획함  
 2)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서는 2021~2024년(4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통상적인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도부터 사업기간 변경(2021~2026년) 계획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조정요구서」; 「총사업비조정 관리대상사업 설명자료」; 「최초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자료」;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경찰수사연수원)」;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경찰수사연수원)」을 바탕으로 제작됨

[그림 1-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상지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중간설계보고서」

[그림 1-2]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조감도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 1) 사업 규모

경찰청에서 작성한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 규모는 경찰수사연수원 현 청사(충남 아산시) 내 기존 주차장 부지 및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강의동 12,882㎡, 생활관동 5,385㎡, 총 연면적 18,268㎡로 계획되었다. 이후 강의동 12,614㎡, 생활관동 5,652㎡, 총 연면적 18,266㎡로 조정되었으며 중간설계에 따라 강의동 12,782㎡, 생활관동 5,802㎡, 총 18,584㎡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당초면적(지침면적) 수용)를 반영하여 당초와 같은 18,266㎡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에 제시된 세부 실별 지침면적, 중간설계 면적, 검토 면적은 <표 I-5>, <표 I-6>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요구서의 요구안(당초안과 동일) 대비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서 일부 시설이 추가 또는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연수원은 요구서의 연면적(18,266㎡)을 유지하되 세부 공간의 구성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시 말해, 연수원에서 실제 계획 및 요구하는 증축 시설(강의동, 생활관동)의 세부 실별 면적의 합계(18,584㎡)가 요구서상의 연면적(18,266㎡)과는 다르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연수원의 요청으로 기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게 된 점이나 본 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재검토에서는 요구서, 설계지침, 중간설계 내역서, 조달청 검토서, 세부 공간의 구성 근거나 필요성 등을 제시한 연수원의 추가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였다(〈표 I-7〉 참고).

〈표 I-5〉 강의동 세부 시설규모

(단위: m<sup>2</sup>)

층별	시설명	지침면적	중간설계면적	조달청검토면적
공용 공간	기계실	450	179.99	450
	전기실	175	116.9	175
	발전기실	38	44.78	38
	방재실	0	14.99	14.99
	ESS실	0	20.5	20.5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2,621.6	3,947.22	3,332.62
	EPS/TPS, A/V	0	126	126
	지하주차장	857.5	0	0
	면적 소계	4,142.1	4,450.38	4,157.11
	수사정보분석실습실	90	144.71	90
	의료범죄수사센터	0	106.54	90
	사기범죄연구센터	90	89.88	90
	압수수색실습실	361.4	366.4	361.4
	모의범죄수사실습	162	196.46	162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실습실	51.6	100.05	51.6
	아동/장애인피해자(강의실)	144	98.32	83.7
	아동/장애인피해자(실습실)		67.92	144
	아동/장애인피해자(모니터실)		25.58	
	피의자신문실습강의실	144	97.49	83.7
	피의자신문조사실		68.25	144
	피의자신문모니터실		26.09	
	네트워크분석실	90	497.08	90
	사이버수사실습실	180		270
	데이터실	0	31.93	31.93
	참여실	0	19.34	19.34
	쉼드실	0	14.91	14.91

〈표 1-5〉의 계속

(단위: m<sup>2</sup>)

층별	시설명	지침면적	중간설계면적	조달청검토면적
전용 공간	접수실 & 회의실	0	58.5	58.5
	증거물 보관실	0	90.05	90.05
	현장복제실습실	0	85.78	85.78
	사이버추적실습실	90	119.58	119.58
	미세증거분석실습실	90	88.87	90
	교수연구실	807	1,419.2	1,419.2
	교수세미나실	0	434.42	300
	컴퓨터강의실	900	744.42	900
	일반강의실	1,841.1	827.22	837
	다목적실	450	422.38	450
	사무실A	312.4	238.03	315
	사무실B	380.6	220.55	378
	식당(통합설치)	350.5	462.13	462.13
	주방	73	311.05	311.05
	조리원휴게실(남)	33	13.04	13.04
	조리원휴게실(여)		37.3	37.3
	휴게공간	0	241.03	241.03
	직원휴게실(남/여)	54	83.31	83.31
	휴게실(외래강사)	66.7	83.13	66.7
	교재창고	147	51.88	51.88
	창고		103.22	103.22
	학과별창고		245.5	245.5
	수사자료연구도서관	661	0	0
	분임강의실	375	0	0
	의무실	48	0	0
	디지털포렌식실습실	132	0	0
	디지털증거분석실	132	0	0
	사이버현장수사실습실	216	0	0
	면적 소계	8,472.3	8,331.54	8,384.85
	<b>합계</b>	<b>12,614.4</b>	<b>12,781.92</b>	<b>12,541.96</b>

주: 지침면적은 당초안 및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요구안과 동일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1-6〉 생활관동 세부 시설규모

(단위: m<sup>2</sup>)

층별	시설명	지침면적	중간설계면적	조달청검토면적
공용공간	기계실	290	278.71	278.71
	전기실	124	77.34	77.34
	EPS/TPS, A/V	0	50.22	50.22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1,242.8	1,675.1	1,675.1
	면적 소계	1,656.8	2,081.37	2,081.37
전용공간	생활실	3,302.5	3,202.59	3,202.59
	장애인생활실		98.34	98.34
	매점, 커피숍	0	69.82	69.82
	세탁실	91	51.32	61.9
	린넨실	13.2	31.72	16.5
	세탁, 린넨실	0	8.29	
	휴게실, 정보검색실	84.4	86.19	105.5
	체력단련실	105.7	71.53	71.53
	당직실(지원계, 학생계)	66.1	49.76	49.76
	응역원실	30	15.04	9
	사무실	0	36.36	21
	목욕탕(남)	150	0	0
	목욕탕(여)	37.5	0	0
	탈의실	114.5	0	0
	면적 소계	3,994.9	3,720.96	3,705.94
	<b>합계</b>	<b>5,651.7</b>	<b>5,802.33</b>	<b>5,787.31</b>

주: 지침면적은 당초안 및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요구안과 동일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제작됨

강의동에 포함된 11개의 실습실 중 5개는 신규 시설이며, 나머지 6개는 기존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신규 시설을 살펴보면, 수사정보분석 실습실은 첨단화되는 현대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신 수사기법을 전문적으로 강의 및 실습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사기범죄연구센터 및 의료범죄연구센터는 최신 수사기법 및 장비, 범죄 변화 트렌드 등을 분석·연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자 계획되었다. 네트워크분석실, 현장복제실습실, 사이버추적실습실은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해킹·악성코드의 네트워크 행위정보, 공격 근원지 등을 분석·추적하기 위한 실습장이며, 사이버수사 실습실에서는 사이버수사관이 수사 현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공간




을 재현하여 효과적인 현장 실습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사이버수사 분야 실습실을 신규 시설로 제시한 한편, 기존의 사이버실습실(디지털포렌식실 포함) 1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이버 분야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기능을 분배하고자 함을 밝혀왔다. 디지털증거 분석 실습실(데이터실, 참여실, 쉘드실, 접수실·회의실, 증거물 보관실)은 시도경찰청 분석실과 동일한 환경의 실습 교육장으로 계획되었다.

확대 계획된 실습실로는 압수수색 실습실, 모의범죄수사 실습실,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 실습실,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 실습실, 피의자신문 조사실, 미세증거분석 실습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실습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공통 교과목 중 하나인 압수수색 집행 실습실이며, 모의범죄수사 실습실에서는 주요 강력사전에 대한 모의범죄 현장을 구축해 실습형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 대응력을 갖춘 수사교육을 시행한다.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 실습실은 마약 현장에서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직접 관람 및 시약검사 등 실습형 수업을 진행하며,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 실습실은 사회적 약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대상자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실습형 교육을 시행한다. 피의자신문 조사실은 피의로부터 임의적이고 증명력 높은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신문기법 훈련 실습실이며, 미세증거분석 실습실은 사건 현장의 미세증거물을 수집·분석하는 기법을 훈련하는 실습실이다. 각 실습실에 대한 자세한 현황 및 필요성은 <표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7> 강의동 내 실습실 구축 현황 및 필요성

시설명(연면적)	구분	현황 및 필요성
수사정보분석실습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정보 분석 : 광범위한 통신자료, 계좌내역,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범관계나 자금흐름, 동선 등을 확인하는 수사기법</li> <li>◦ 신속성과 정확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다양한 사례들을 실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실습실 및 데이터실에는 고사양의 메인 컴퓨터와 대용량 워크스테이션 등 설치하여 공유DB형 수사자료 분석 교육 실시</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lt;공유DB형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교육(예시)&gt;</p> </div>

〈표 1-7〉의 계속

시설명(연면적)	구분	현황 및 필요성
사기범죄연구센터 및 의료범죄연구센터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수사 관련 연구·교육은 과거 발생한 범죄를 중심으로 진행,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에 역부족</li> <li>◦ 현재 비직제(임시)로 보험범죄 연구센터를 두었으나, 규모의 문제로 적극적인 연구 수행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수본·연수원·금감원·심평원·건보·손보험·생보험 등 7개 기관이 MOU를 통해 세미나·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며, 보험개발원도 참여 요청하여 협의 진행 예정</li> </ul> </li> <li>◦ 최신의 기술동향과 장비, 범죄수법 및 범죄유형 변화 등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보험범죄 연구센터 규모로는 세미나 및 연구활동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li> </ul> </li> <li>◦ 미래 현장형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국내외의 최신 범죄동향과 첨단 수사기법, 장비 등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현장에 교육·전파</li> </ul>
사이버수사 분야 실습실 -네트워크분석실, 현장복제실습실, 사이버추적실습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상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저장·보관하고 분석하여 피의자를 추적하는 수업(네트워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인터넷 환경 및 독립된 보안관리가 되는 실습실이 없어서 제한적인 실습수업 및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li> </ul> </li> <li>◦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자 수사관의 사이버 추적, 사이버 테러분석, 디지털증거 수집 기법 실습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민간분야 사이버 전문교육기관(KISA 아카데미) 등은 주강의실과 별도로 소규모 조별 실습이 가능한 실습실을 별도 설치, 현장 전문인력 양성</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text-align: center;">  <p>〈네트워크 분석실(실습실) 구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이버 추적 실습실(강의장) 구성〉</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현장복제 실습실 구성〉</p> </div>

〈표 1-7〉의 계속

시설명(연면적)	구분	현황 및 필요성
사이버수사 실습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교육은 일반 강의와 달리 피의자가 방문한 국내의 사이트를 접속하여 자료를 수집·분석</li> <li>※ 교육과정에서 해킹·악성코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사이버수사 실습실은 별도의 독립된 보안관리가 필요</li> <li>◦ 경찰수사연수원의 「현장수사관 교육주기 단축 계획」 및 통합수사팀 전국 확대에 따라 모든 수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교육 수요 증가, 전문 교육시설 부족(현재 1실)</li> </ul>
디지털증거 분석 실습실 -데이터실, 참여실, 철드실, 접수실·회의실, 증거물 보관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시도경찰청 분석실과 동일한 환경의 실습교육장을 통해 분석관 전문성 향상 및 해외 법집행기관 대상 한국 경찰 포렌식 위상 제고</li> <li>※ 치안한류 등 목적으로 해외 법집행기관에서 수사연수원 포렌식 교육을 다수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및 시설한계로 수용 불가(몽골 내무대학(3월), 카타르 경찰대학(5월) 방문시 포렌식 교육 요구)</li> </ul>
압수수색 실습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수수색 집행 실습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교육과정에 포함</li> <li>◦ 현재 1개 실습장(6개실 구성)에서 일반 - 긴급 - 디지털 - CCTV 등 4개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증대 시 추가 실습실 확보 필요</li> <li>- 1개 교육과정의 교육생(평균 30명)이 조별로 다수 교수와 교육 참여, 파트별 실습 진행 → 일시적 1개 과정만 실습 가능</li> <li>- 현재 실습장은 모의범죄 실습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실습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li> </ul> </li> </ul>
모의범죄수사 실습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인·변사·절도 등 재연 실습실 4개실을 운영, 주로 압수수색 집행 실습으로 이용되어 재연 실습은 전무한 상황</li> <li>◦ 강력사건 범죄현장에서 초동수사부터 현장의 주요 쟁점 수사까지 다룰 수 있는 추가 실습장 마련 필요</li> <li>◦ 실습실 증축 시 다양한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재현 현장검증, 강력사건 초동수사, 위기협상 상황재연 등</li> </ul> </li> <li>◦ 증축을 통해 교육규모가 확대(약 2배 예상)되는 경우, 실습실 증축 없이는 현장 실습형 교육은 불가한 상황</li> </ul>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 실습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 40종 372점(마약 10종, 향정 28종, 대마 2종) 등 교육자재 보유</li> <li>◦ 법령상 분류 기준에 따라 보유 마약류를 종류별로 재분류, 동선에 따라 관람 및 실습으로 운영</li> <li>◦ 범정부적인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련 교육을 확대, 적극 호응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를 직접 관람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습장 부족으로 강의식 수업만 늘리고 있는 상황</li> </ul> </li> <li>◦ 실습실 증축으로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습형 교육으로 전환, 수사현장에 더욱 도움 될 수 있는 수사교육 설계</li> </ul>

〈표 1-7〉의 계속

시설명(연면적)	구분	현황 및 필요성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 실습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폭력 피해자 조사,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등 과목에서 실습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AI 음성인식 피해자조사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까지 병행하며, 증명력 높은 피해자 조사 작성 교육 진행</li> </ul> </li> <li>관련 사건들(주로 성범죄)은 피해자의 진술 외의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증명력 높게 확보하는 방법 필요</li> <li>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2018)을 활용한 단계별 조사기법을 연습할 실습실 필요</li> </ul>
피의자신문 조사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의자신문기법(피의자신문조서 작성기법)은 1건 수사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공통 과목으로 편성, 그간 진술녹화실(조사실) 부족으로 비녹화 실습 방식으로 수업 진행</li> <li>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되면서(「형소법」, '22. 1. 1. 개정), 조사자 증언의 중요성 증가</li> <li>조사자 증언이 인정되기 위한 특신상태의 요건(판례) 중 '영상녹화물 존재 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상 녹화를 전제로 하는 실습 수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 부정(안산지원 2021고합143)</li> </ul> </li> </ul>
미세증거분석 실습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증거분석 실습실은 형태학적 분석 실습에 특화된 상태로, 화학적 분석 실습을 위한 실습실 신설 필요</li> <li>증거재판주의로 사법환경이 변화하면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세증거에 대한 교육수요 계속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수사학과의 전문교육과정을 제외하고도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범죄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세증거 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사건은 1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아 과학수사, 사이버수사 등 분야별 기초지식에 대한 종합교육 필요('22. 9. 14. 한면수 동국대 교수)</li> </ul> </li> </ul> </li> </ul>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기존 시설」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최초 예산 반영 당시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장거리 교육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장 추가 증축의 필요성을 고려한 바 있으나, 옥외 주차장 신설에 대한 공사비 책정이 불가능하여 관련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회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회에 따른 주차대수 217대와 생활관동 증축에 따른 주차감소분 59대를 합하여 총 주차대수 276대의 주차장 신설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그 위치는 [그림 1-3]과 같다.<sup>10)</sup>

10) 아산시고시 제2022-223호(2022. 6. 25.), 「아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아산시 교통행정과-53011(2022. 11. 7.),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사업(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리 통보」

[그림 1-3] 주차장 신설 부지 위치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심의의결보완서」

## 2)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

조정요구안의 총사업비는 566억 8,100만원으로 현행안 473억 1,200만원 보다 93억 6,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I-8>, <표 I-9>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공사비는 물가변동과 흙막이공사, 옥외주차장 신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땀띠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사업 등 현장여건 및 사업특성, 법령 개정에 따라 86억 2,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신설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억 1,800만원이 순증하였다.

〈표 1-8〉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조정요구안 (B)	증감(B-A)		변경 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47,312	56,681	9,369	19.8	
1. 공사비	42,670	51,291	8,621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반영 (8,4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li> <li>- 법령개정 반영</li> <li>- 현장여건 반영</li> <li>- 각종 분담금 반영</li> </ul> </li> <li>• 법령 반영(2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li> <li>-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 모니터링</li> </ul> </li> </ul>
2. 보상비	-	218	218	순증	• 농지보전부담금 반영 (「농지법」 제38조)
3. 시설부대경비	4,642	5,172	530	11.4	
3-1. 설계비	2,125	2,125	-	-	
3-2. 감리비	2,419	2,929	510	21.1	• 지침요율 반영
3-3. 시설부대비	98	118	20	20.4	• 지침요율 반영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1-9〉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상세)

(단위: m<sup>2</sup>, 백만원)

구분	현행안(A)	증감(B)	요구안(A+B)
연면적	18,266	-	18,266
총사업비	47,312	5,359	52,671
□ 공사비	-1,185	3,110	1,925
- 물가변동(기본공사비)	42,670	4,950	47,620
- 현장여건① 흙막이공사 반영	-	707	707
- 현장여건②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주차장 신설	-	2,161	2,161
- 현장여건③ 주차장 신설부지 전신주 간섭에 따른 이설	-	66	66
- 현장여건④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비 대상사업	-	20	20
- 현장여건⑤ 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 대상사업	-	156	156
- 현장여건⑥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대상사업	-	214	214
- 법령개정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강화	-	195	195

〈표 1-9〉의 계속

(단위: m<sup>2</sup>, 백만원)

구분	현행안(A)	증감(B)	요구안(A+B)
- 법령개정②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	124	124
- 법령개정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	28	28
□ 보상비	-	218	218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218	218
□ 시설부대경비	4,642	0	4,642
- 설계비	2,125	-	2,125
- 감리비	2,419	510	2,929
- 시설부대비	98	20	118

주: 연수원은 재검토 과정 중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의 시설부대비(1억 1,800만원)가 오 기재되었다고 밝히며 1억 7,700만원으로 정정 제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총사업비조정 관리대상사업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총사업비 중 계약 체결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심사비, 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교통영향평가(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변경)용역, 재영향평가용역,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전용허가 용역 등에 설계비 20억 5,500만원이 계약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1-10〉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설계비	2,125	2021. 11.	44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심사비</li> <li>■ 설계용역</li> <li>■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li> <li>■ 교통영향평가(변경)용역</li> <li>■ 환경영향평가(변경)용역</li> <li>■ 재영향평가용역</li> <li>■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전용허가 용역</li> </ul>
		2021. 12.	1,884		
		2022. 03.	17		
		2022. 03.	48		
		2022. 07.	21		
		2022. 07.	20		
		2022. 07.	21		
감리비	2,419	-	-	2,419	■ 미계약
시설부대비	98	-	-	98	
합계	4,642		2,055	2,587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사업의 운영체계

경찰수사연수원은 본 사업을 통한 인프라 확충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주기 3년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확충 등 조직을 개편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표 I-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수원은 2과 4계 7개 학과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개정된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정원은 64명으로 확인된다. 정원 외 인원으로는 임기제 3명, 주무관 22명과 교수 4명이 추가 근무 중이라고 제시되었다. 향후 연수원은 교육주기 단축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교수 및 행정 인력을 단계별로 증원할 계획으로, 개편 교육과정은 <표 I-12>와 같이 연간 총 112개 과정, 403회, 교육인원 1만 2,480명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표 I-11> 경찰수사연수원 정원(훈령 제21호)

(단위: 명)

구분	총계	경찰관									일반직	
		소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계	64	54	1	2	3	16	22	8	1	1	10	
원장실	2	2	1				1					
운영지원과	과계	19	12			2	2	3	4		1	7
	총무계	8	5			1	1	1	1		유동1	3
	재정관리계	7	3				1	1	1			4
	교육지원계	4	4			1		1	2			
교무과	과계	43	40		2	1	14	18	4	1		3
	교무계	13	10		2	0	2	1	4	1		3
	수사지휘·심사학과	4	4			1	2	1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6	6				2	4				
	강력범죄수사학과	5	5				2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4	4				1	3				
	사이버수사학과	4	4				2	2				
	안보수사학과	3	3				1	2				
	과학수사학과	4	4				2	2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전문(230206 훈령 21호)」

〈표 1-12〉 교육 개편안

(단위: 개, 회, 명)

학과	주기	대상인원 (명)	2023년			3년 교육주기			비고
			과정	교육횟수	교육인원	과정	교육횟수	교육인원	
합계		36,678	85	220	6,070	112	403	12,480	
수사지휘심사		13,106	11	24	660	14	54	1,630	
경제범죄			13	39	1,390	11	46	1,900	신설
반부패범죄						12	38	1,140	
강력수사	10,134	17	49	1,410	15	69	2,070		
교통수사	3,789				8	38	1,140	신설	
여청수사	4,171	8	29	820	11	49	1,470		
사이버수사	2,091	11	26	710	14	46	1,380		
안보수사	2,120	8	18	460	10	30	900		
과학수사	1,267	17	35	620	17	33	850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사업 완료 후 교육일정 개편안」, 「교육과정 세부 내용」

증원에 관한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연수원은 〈표 I-13〉, 〈표 I-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2027년 총 정원 121명으로 교수요원 43명(연구교수 5명 포함), 행정요원 11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장관 현안 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증원 계획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표 1-13〉 증원 계획(2022년 주요 업무계획)

(단위: 명)

구분	1단계(+25명)			2단계(+29명)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교수요원	+4(현원)	+8	+14	+5	+6	+10	+43
행정요원	-	-	+3	+4	+4	-	+11
정원	67	75	92	101	111	121	121

주: 증원 교수요원 총 43명은 연구교수 5명을 포함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1-14〉 조직 개편안(2022년 주요 업무계획)

구분	2022년도(4계 7학과)	1단계(4계 9학과)	2단계(6계 9학과)
운영지원과	총무계, 재정관리계, 교육지원계	총무계, 재정관리계, 교육지원계	총무계, 재정관리계, 교육지원계, 시설관리계
교무과	교무계,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교무계, 수사지휘심사학과, <b>경제범죄수사학과,</b>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b>교통수사학과,</b>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b>교무기획계,</b> 교무운영계, 수사지휘심사학과, 경제범죄수사학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교통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6월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사전문성 강화, 교육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연수원은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원·협조사항으로서 교수요원 인력 부재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경제·교통범죄수사학과 신설 및 교수요원 14명 증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해 7월,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10월, 연수원은 「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에 교육주기 3년 달성을 위한 교수인력 확충과 수사교육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인력 확충 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경찰청에 보고하였다고 밝혔으며, 동 계획은 2026년까지 교수 정원 41명(연구교수 증원 없음), 행정 정원 3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42명으로 제시되었다.

〈표 1-15〉 증원 계획(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교수 정원	-	+10	+11	+10	+10	+41
행정 정원	-	시설 +4, 콘텐츠 +5	대외 +5, 기획예산 +4	교무기획 +4, 연구 +6	콘텐츠 +5, 사이버 +4	+37
정원	64	83	103	123	142	142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1-16〉 조직 개편안(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

구분	개편 前(4계 7학과)	개편 後(11계 9학과)
운영 지원과	총무계, 재정관리계, 교육지원계	총무계, 기획예산계, 경리계, 교육지원계, 시설관리계
교무과	교무계	교무운영계, 교무기획계, 교육콘텐츠계, 사이버연수원계, 대외협력계
교수과 (신설)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연구계, 수사지휘심사학과, 경제범죄수사학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교통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증원 계획 변동에 대해 연수원은 본 사업의 공사기간 변화에 맞춘 세부적인 조정이라 설명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른 2024년 소요정원안 작성 시 교수요원 6명, 행정요원 6명 증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2023년 5월,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통해 연수원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를 경제범죄수사학과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로 분리하고 교수요원을 7명 증원하였으며 교육지원계를 생활지원계로 명칭 변경하였다.<sup>11)</sup>

이를 고려하여 연수원은 최종적으로 기존 2과 4계 7학과 체제에서 「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에 명시한 바와 같이 3과 11계 9학과로 개편하고 2023년 2월 기준 정원으로부터 교수 정원 45명(연구교수 2명 포함), 행정 정원 36명을 증원하여 2027년 총 정원을 145명으로 계획하여 제시하였다.

〈표 1-17〉 연도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교수 정원	+7	+6	+10	+10	+12	+45
행정 정원	-	시설 +3, 콘텐츠 +3	대외 +5, 기획예산 +4, 콘텐츠 +3	교무기획 +4, 연구 +6	콘텐츠 +4, 사이버 +3, 시설 +1	+36
정원	71	83	105	125	145	145

주: 증원 교수요원 총 45명은 연구교수 2명을 포함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수사지휘·심사학과(4명), 경제범죄수사학과(6명),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4명), 강력범죄수사학과(5명),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5명), 사이버수사학과(4명), 안보수사학과(5명), 과학수사학과(4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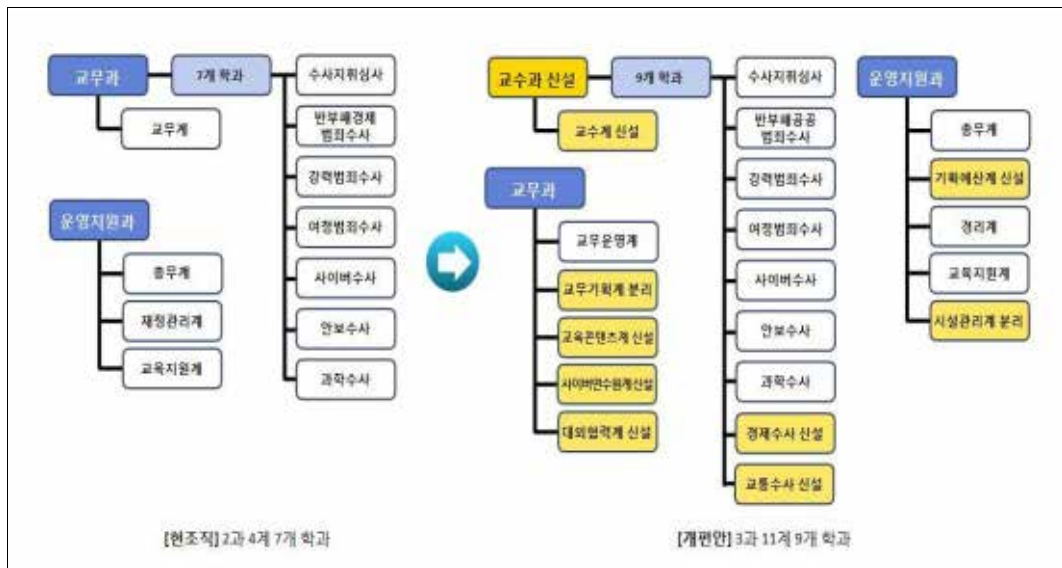
〈표 1-18〉 조직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단위: 명)

구분	교수요원	구분	행정요원	
수사지휘·심사학과	10	원장실	2	
경제범죄수사학과(신설)	10	운영지원과	총무계	8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	8		기획예산계(신설)	4
강력범죄수사학과	8		경리계	6
교통범죄수사학과(신설)	5		시설관리계(신설)	5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10		생활지원계	4
			교무운영계	13
사이버수사학과	8	교무과	교무기획계(신설)	4
안보수사학과	6		교육콘텐츠계(신설)	10
과학수사학과	8		사이버연수원계(신설)	3
			대외협력계(신설)	5
연구교수(연구계 소속)	2	교수과(신설)	연구계(신설)	6
합계	75	합계	70	

자료: 경찰수사연구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구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4] 조직 개편안(제출자료)



자료: 경찰수사연구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구원 운영 관련 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구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

구체적으로 교수 정원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교수 현원 34명이 2023년에 6,070명을 교육할 것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본 사업 이후 연 1만 2,480명 교육을 위해서는 73명의 교수요원이 요구된다고 개진하였다.<sup>12)</sup> 더하여 위탁교육 및 연구계에서 주관하는 수사기법 연구 등에 참여하거나 책임연구를 수행하는 등 연구계의 연구교수 중심 연구체제 운영을 위하여 연구교수 2명을 추가 반영하여 교수 정원을 총 75명으로 제시하였다.

행정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계, 시설관리계, 교무기획계, 교육콘텐츠계, 사이버연수원 계, 대외협력계, 연구계 등 7계 신설의 필요성과 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 인력을 상세히 제시해왔다.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인재개발원 등 다른 교육기관의 관련 조직과 비교하여 업무 능률 극대화 및 분업화·전문화를 위해 기획예산계, 시설관리계, 교육기획계, 대외협력계의 신설이 요구되며, 디지털 콘텐츠 자체 생산을 위한 교육콘텐츠계, 사이버수사연수원 설립에 대비한 사이버연수원계, 교수활동 관련 행정을 담당할 연구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인력은 36명 증원이 요구되어 2027년 총 정원은 70명으로 계획되었다.

〈표 1-19〉 신설 조직 담당 업무

구분	담당 업무
기획예산계(4)	계장(1), 예산편성, 재정성과, 예결산(1), 서무, 기획, 성과(1), 조직, 법제, 국회(1)
시설관리계(5)	계장(1), 정보화 장비(1), 시설유지보수 공사계획 수립 및 주무관 감독(1), 방화, 소방,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 관리(1), 국유재산 관리, 시설공사 계획, 설계, 관리(1)
교무기획계(4)	계장(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 기획(1), 교육 관련 통계(1), 교육기관 종합진단, 교육결과 보고(1)
교육콘텐츠계(10)	계장(1), 콘텐츠제작(9)
사이버연수원계(3)	계장(1), 교육행정시스템 운용(1), 교육 및 협업 콘텐츠 운용(1)
대외협력계(5)	계장(1), 국내 교류 및 민관경 협력사업 개발(1), 홍보콘텐츠 개발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1), 국제 교류사업 개발, 치안 분야 공적개발 원조(1), 국제교육, 치안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사업(1)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연수원은 연말 현원을 기준으로 차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고 제시함

한편 연수원은 정원 외 인원에 대해서는 주무관을 현원 22명으로부터 18명 증원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주무관은 기존 용역(미화, 조경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으로, 연수원 증축 시 관리면적이 약 2배 증가하므로 청사 관리를 위해 증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표 1-20〉 주무관 증원 계획

(단위: 명)

구분	현원	증원	비고
시설	8	8	관리면적 2배 증가
미화	8	8	
전산	3	2	
조경	3	-	조경 관리면적 동일
총계	22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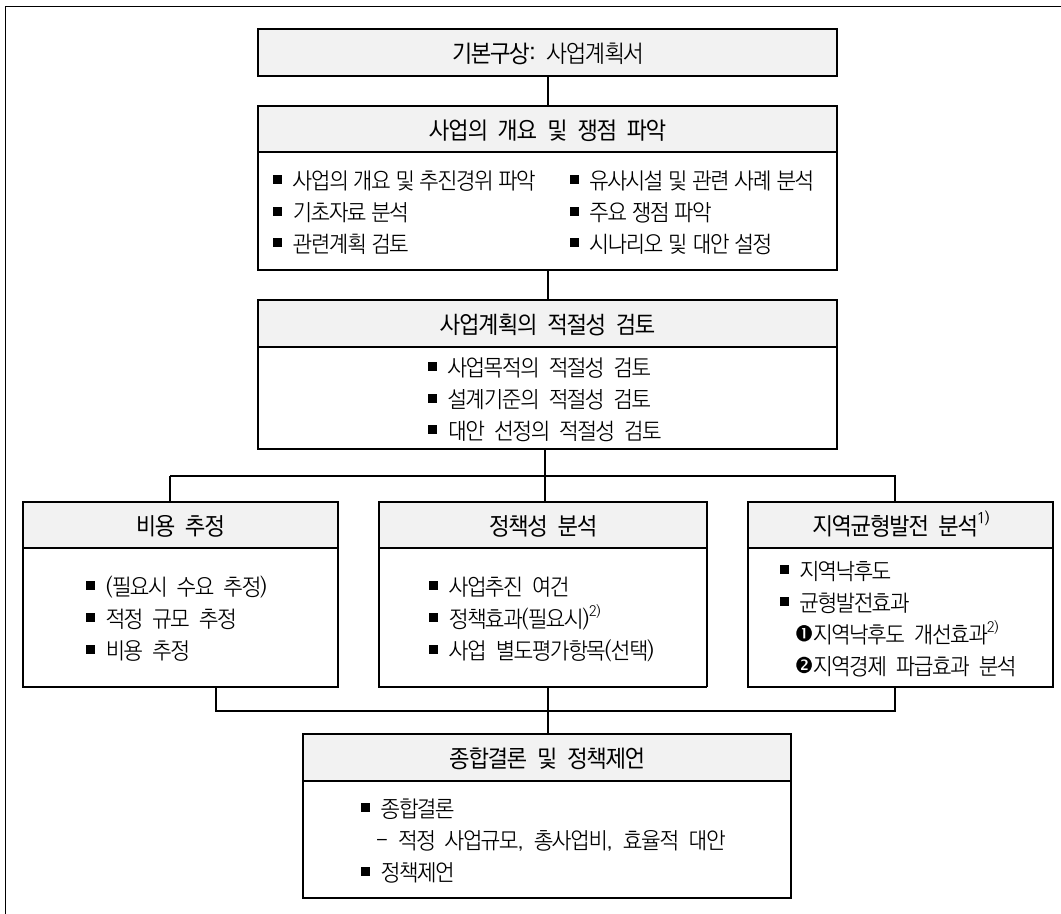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절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그림 I-5]의 수행 흐름도와 같이 단계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시된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I-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주: 1) 수도권 유형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또한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및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생략 가능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회의 자료(수정)」, 2023.

##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추진 경과 및 계획된 사업내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사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처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로부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총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체계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다음으로 대상사업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기존 업무처리 과정과 방식, 업무처리량, 업무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특성, 기존 업무처리 소요비용 및 시간, 업무처리방법이나 업무수행 절차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 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현황 분석 결과 및 기초자료에 기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각 평가요소별로 주안점을 둘 사항, 조사에서 한계가 되는 사항 등 쟁점사항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체계에 따라 미리 정리한다. 조사의 쟁점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체계에 따라 각 평가요소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제기한다. 제시된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 2) 비용 추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필요시 수요추정을 진행한다. 다만 본 사업은 별도의 수요추정 없이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안)에 누락된 비용항목 및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각 시설물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단가 산출을 통해 비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토한다.

### 3)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쟁점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적)으로 구성

된다.

먼저 사업추진 여건에서는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항목을 통해 상위계획 반영 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에서는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정책효과는 크게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선택)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효과에서는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생활여건 영향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을 검토하며, 환경성 평가에서는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분기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회의 자료(수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별도평가항목은 재원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 기타 개별사업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항목을 선택적으로 설정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 4)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지역낙후도를 평가한다. 또한 균형발전효과 분석을 위해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2019년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9. 5. 1. 시행)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였다. 제도 개

편방안에서는 수도권 유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비수도권 유형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5)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종합결론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용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비용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본 재검토의 한계점과 향후 본 검토 대상사업의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을 제언한다.

### 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범위

본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 제1항13)에 의거하여 의뢰(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128, 2023. 2. 10.)되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sup>14)</sup>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간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사전적 조사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시기적 측면에서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는 점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차별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 변경요인을 분석하여 총사업비 변경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변경된 총사업비하에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3)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기획재정부장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4)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 1. 기초자료 분석

#### 가. 사업대상지<sup>15)</sup>

##### 1) 자연환경

충청남도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서북단에 위치하며, 동서 간 연장은 29km, 남북 간 연장은 34km로 동쪽으로는 천안시, 남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으로는 예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다. 여름은 고온다우하고 겨울에는 다설 지역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기온은 12.4℃(연평균 최고 기온 18℃, 최저 기온 7.2℃)이다. 연강수량은 약 1,181mm이며 평균 7~8월 강수량이 약 635mm로, 연중 강수량의 51.7%가 여름에 집중된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은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불며 연평균 풍속은 1.7m/sec이다.

남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지나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 산지에서 발원하는 곡교천이 서류하여 그 유역이 평야를 형성하고 삽교천에서 통합되어 아산만에 유입하고 있다. 봉강천, 삽교천, 곡교천 등 그 유역을 따라서는 국내 유수의 온천수 등이 분포한다.

##### 2) 사회·경제적 환경

#### 가) 면적 및 행정 구역

충청남도 아산시는 전체 면적 542.78km<sup>2</sup>로, 2개 읍, 9개 면, 6개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이다. 전체 면적은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9번째로 크고 면적 구성비로는 6.3%를 차지하며, 행정구역별로는 2개 읍 91.73km<sup>2</sup>(16.9%), 9개 면 408.76km<sup>2</sup>(75.3%), 6개 동 42.32km<sup>2</sup>이다.

---

15) 아산시(2016), 아산시·충남연구원(2017), 아산시(<https://www.asan.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함

〈표 II-1〉 충남 아산시 행정구역

(단위: 개)

소계	읍	면	동(행정)	소계			반	면적	
								통	리(행정)
17	2	9	6	581	147	434	2,828	542.7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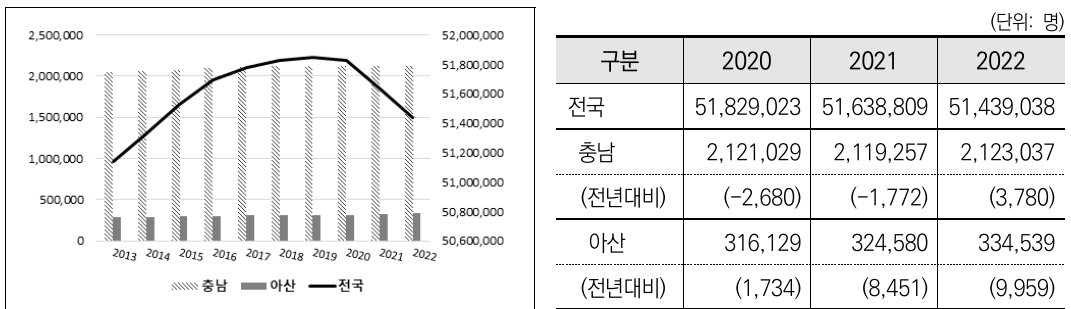
주: 2021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충청남도 아산시 기본통계,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 나) 인구 현황

2022년 충청남도 인구는 212만 3,037명, 아산시는 33만 4,539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0.18%(3,780명), 3.07%(9,959명) 증가하였다. 충남은 전국 인구와 마찬가지로 2013~2018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왔으나, 2019~2020년 미약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아산시는 최근 10년간 증가폭의 변동은 있으나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1〕 충남 및 아산시 인구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아산시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전국 및 충남과 유사한 증감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의 50대 이하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50대 이상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40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시는 10대 이하 및 30~40대 인구가 전국 및 충남 대비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및 충남의 10대 이하 및 30~40대 인구는 각각 약 16~17%, 27~29%를 차지하는 반면, 아산시의 경우 각각 약 21%,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인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전입 인구 5만 1,166명, 총 전출 인구 4만 751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1만 4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총 전입 인구의 약 20%, 총 전출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전입·전출지 현황을 보면, 충남의 전출 인구 중 약 58%가 도내로 전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12.77%), 서울(7.29%)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충남의 전입 인구 중 도내로부터 전입한 인구는 약 5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14.63%), 서울(6.75%)로부터 이동하였다.

〈표 II-2〉 충남 및 아산시 인구 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국	7,735,491	7,735,491	0	7,213,422	7,213,422	0	6,152,155	6,152,155	0
충청남도	287,127	286,386	741	282,195	273,673	8,522	260,488	246,174	14,314
아산시	45,651	44,441	1,210	52,347	43,463	8,884	51,166	40,751	10,415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 다) 교통 현황

2021년 기준 전국의 도로 연장은 총 113,405km, 포장율은 94.8%이며 시도 28%, 군도 19.95%, 지방도 16.12%, 구도 14.56%, 일반국도 12.5%, 특별·광역시도 4.58%, 고속국도 4.29%로 구성된다. 충남은 총 7,588km로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8위에 해당하며, 시도 39.28%, 지방도 22.52%, 일반국도 17.02%, 군도 15.51%, 고속국도 5.67%로 구성된다. 포장율은 97%로 전년 대비 미포장도는 171km 감소하였다. 면적당 도로연장은 0.9km/km<sup>2</sup>로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13위, 인구당 도로연장은 3.6km/명으로 8위,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6.5km/천대로 7위이며,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sup>16)</sup>은 1.8%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2년 12월 기준 충남은 1,211천대, 아산시는 192천대로 전년 대비 각각 약 3%, 5% 증가하였다. 아산시의 등록 자동차는 승용차 82.49%, 화물차 14.01%, 승합차 2.99%, 특수차<sup>17)</sup> 0.51%로 구성된다.

16) 도로보급률은 도로연장(도로용량), 인구, 국토면적, 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도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됨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도로보급률) = 도로연장(km)/√[국토면적(km<sup>2</sup>)×인구(천명)]

〈표 11-3〉 시도별 도로보급률

구분	면적당 도로연장 (km/km <sup>2</sup> )	인구당 도로연장 (km/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 (km/천대)	국도계수당 도로보급률 (%)
서울	13.8	0.9	2.6	3.5
부산	4.4	1	2.3	2.1
대구	3.4	1.2	2.5	2.1
인천	3.1	1.1	2	1.9
광주	3.7	1.3	2.7	2.2
대전	4.1	1.5	3.2	2.5
울산	2.4	2.2	4.4	2.3
세종	0.9	1.2	2.3	1
경기	1.5	1.1	2.4	1.3
강원	0.6	6.4	11.9	1.9
충북	0.9	4.3	7.7	2
충남	0.9	3.6	6.5	1.8
전북	1.1	4.7	8.9	2.2
전남	0.9	5.8	9.2	2.3
경북	0.7	5.2	9.1	1.9
경남	1.2	3.8	7	2.2
제주	1.7	4.8	4.9	2.9

주: 1. 2021년 기준

2. 면적은 지적통계연보(국토교통부), 인구는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현황(국토교통부)을 참고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도로현황,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17) 「자동차관리법」에서 지정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써 승용,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표 II-4〉 충남/아산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천대)

구분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2020. 12.	2021. 12.	2022. 12.	2020. 12.	2021. 12.	2022. 12.
계	1,150	1,176	1,211	173	182	192
승용	879	905	935	141	149	158
승합	41	40	39	6	6	6
화물	224	225	231	26	26	27
특수	5	6	7	1	1	1
관용 <sup>1)</sup>	6	6	6	1	1	1
자가용	1,104	1,130	1,164	166	175	185
영업용	40	41	41	7	7	7

주: 1) 관용차는 정부(중앙,지방)기관이나 국립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라) 산업 현황 및 구조

2020년 기준 아산시의 사업체 수는 34,436개로 전국의 0.57%, 충남의 13.6% 수준이며, 종사자 수는 19만 4,035명으로 전국의 0.01%, 충남의 0.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약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15.76%), 제조업(14.4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약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약 8%,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약 7%로 나타났다.

〈표 II-5〉 전국/충남/아산시 사업체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전국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산업	6,032,022	24,813,449	253,192	1,064,810	34,436	194,035
농업, 임업 및 어업	12,707	63,990	1,517	7,015	108	446
광업	2,205	14,941	137	866	13	116
제조업	579,645	4,260,429	24,423	314,229	4,964	98,5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4,092	142,433	9,814	16,797	567	1,0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097	127,635	859	7,393	116	971
건설업	471,217	2,159,187	24,300	90,189	3,138	10,704

〈표 II-5〉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전국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1,567,298	3,689,068	60,547	121,588	7,232	15,865
운수 및 창고업	593,274	1,326,727	22,455	46,272	3,513	6,905
숙박 및 음식점업	865,333	2,093,205	41,225	89,482	5,426	12,681
정보통신업	113,304	774,130	1,741	7,594	301	1,058
금융 및 보험업	64,108	728,687	2,037	18,056	224	2,085
부동산업	278,339	684,981	8,806	18,295	1,490	2,9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1,460	1,365,432	5,359	28,468	709	3,19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1,264	1,316,478	6,087	46,279	1,065	5,5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80	826,822	754	37,605	53	3,103
교육 서비스업	234,741	1,652,891	8,623	69,431	1,214	11,3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7,988	2,249,829	6,777	92,466	971	10,8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3,161	420,849	5,887	14,409	754	1,8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6,309	915,735	21,844	38,376	2,578	4,690

주: 1. 2020년 기준

2. 조사대상 사업체를 행정자료 등록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전 공표 자료(조사기반)와는 모집단 기준이 서로 달라 시계열 비교 시 주의 필요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총조사,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 나. 경찰 수사<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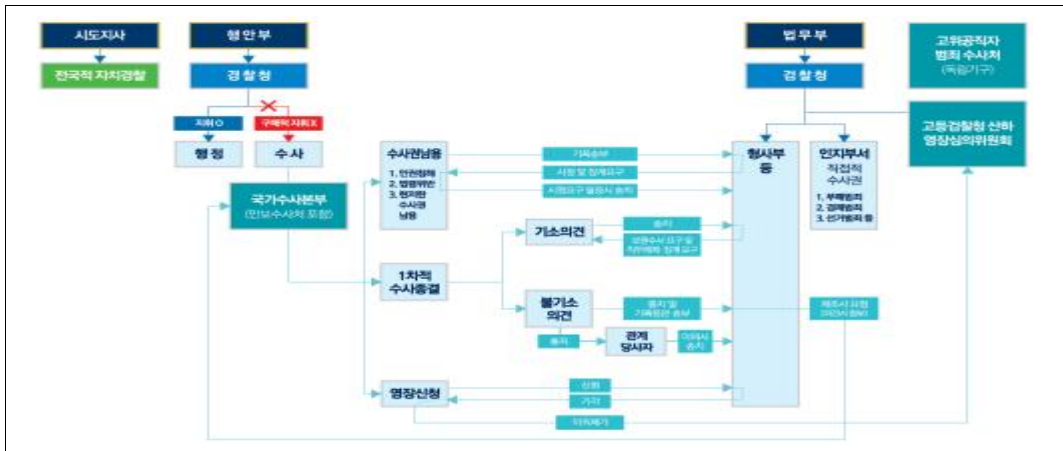
### 1) 수사 환경 변화(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2020. 2. 4.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18) 김대근·강동필·문성준(2022), 김상운(2014), 신우섭(2022), 심덕보·이환범(2010), 이성기(2021), 최정윤·주성빈(2019)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송치하지만, 그 외의 경우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종결의 주체가 전적으로 검찰에서 경찰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이를 통해 경찰은 수사에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검사는 제한적으로 수사하되 사후통제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2]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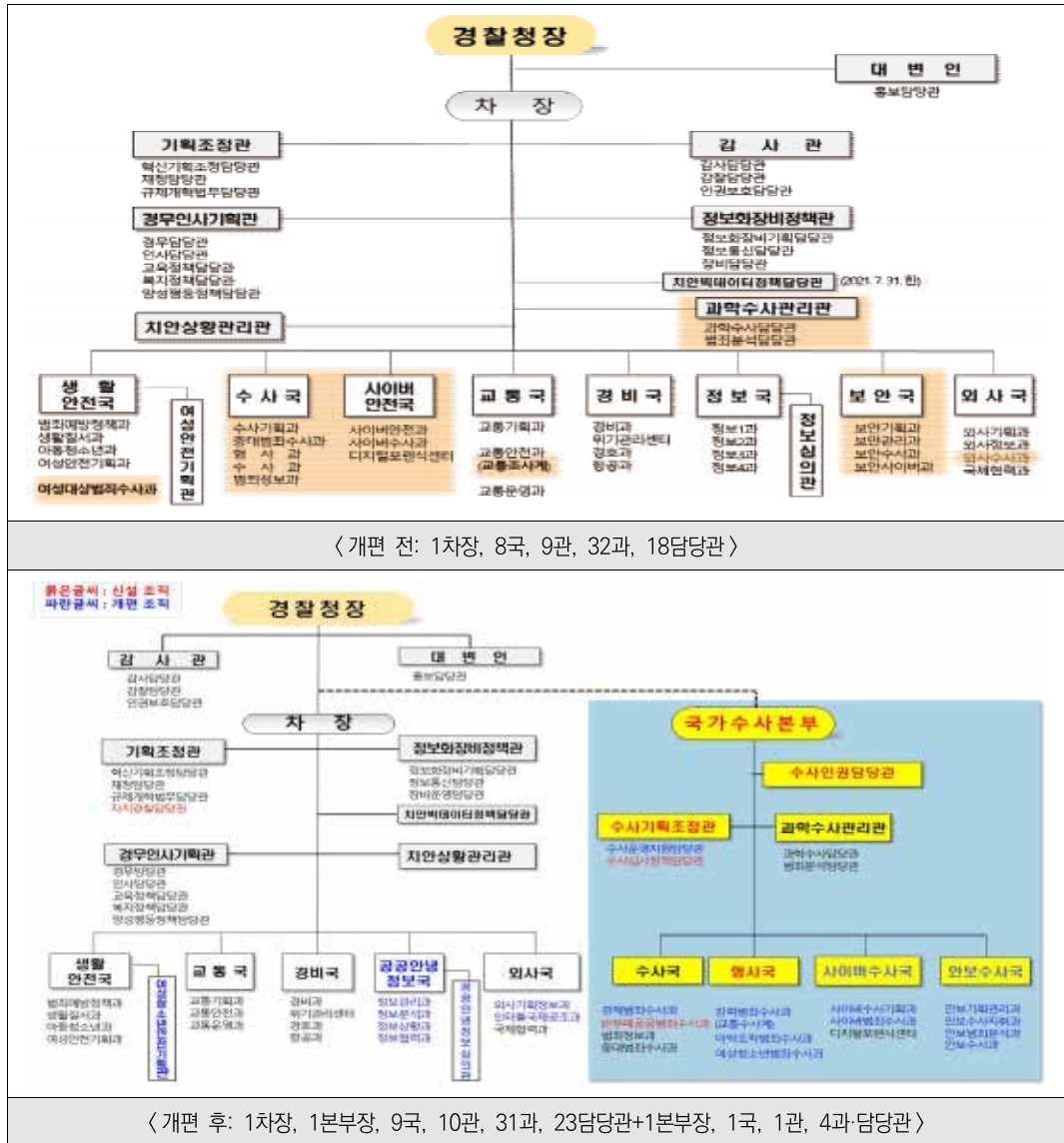
자료: 대통령비서실 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2018. 6. 21.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전부 개정(2020. 12. 22.)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수사 지휘총괄기구로서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업무만을 전담하던 수사·사이버·과수기능 외 범수사부서 기능인 안보수사·여청수사·교통조사 기능을 모두 편제하였다. 또한 시도 경찰청 내 수사지휘·수사부서를 재편하고 수사심사 전담조직을 도입하였으며, 경찰서 내 수사·형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조사 기능 중심의 수사부서를 편성하고 수사심사관을 도입하였다.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두도록 설계하였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11-3]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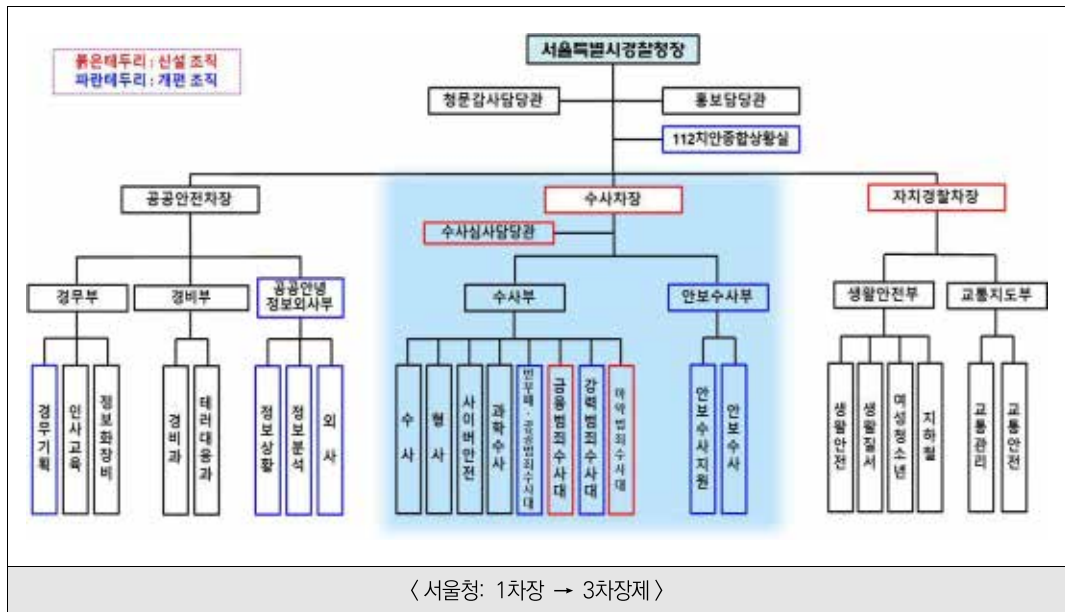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보도자료, 2020. 12. 29.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는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급지 경찰서(74개)에는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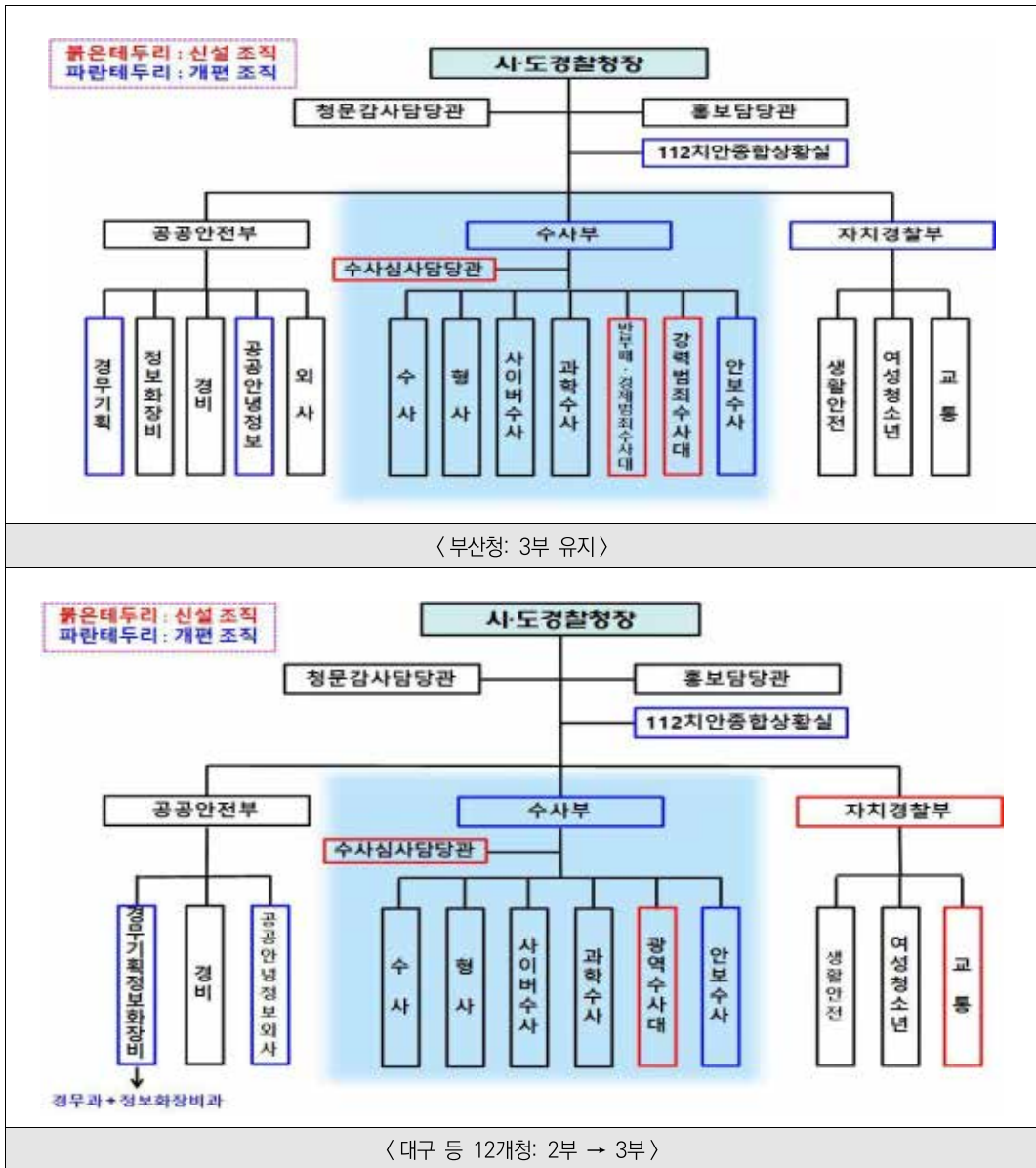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하여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하도록 하였다.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였다.<sup>19)</sup>

[그림 11-4] 조직개편에 따른 시도경찰청 조직도



19) 서울청은 3차장제로 전환, 14개 시도경찰청은 3부 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 수행 (12개 시도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 신설, 부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 재편, 제주청은 1차장체제 유지 등)

[그림 11-4]의 계속



자료: 관계부처 합동,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보도자료, 2020. 12. 29.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이 제정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전부 개정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규범이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이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 2) 수사경찰과 교육훈련

수사경찰의 개념에 대해서는 범죄의 진압과 검거를 비롯하여 범죄 유발 환경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시키는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사전적 예방활동을 제외한 사후적 범죄 진압과 범인 검거 위주 기능만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협의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2조(정의)에서 동 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로 정의하였으나, 2021년 11월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제2조)은 삭제되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시행, 수사권 개혁,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에 따라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사경과자 수사부서 배치원칙 확립, 수사의지가 높은 젊은 경찰관의 유입 확대, 수사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방식 등 관련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수사경과자 선발의 원칙(제10조), 대상(제11조), 방식(제12조)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통합보직공모 및 경과해제 요건을 강화(제6조, 제15조)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제7조) 등 수사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경찰청은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과자들의 수사부서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수사경과자의 희망부서를 취합하여 발령하는 통합보직공모제를 시행하고 수사경과자가 전입희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과제를 적극 해제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258개 경찰서 중 94.9%(245개)가 통합보직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수사경과제 적극 해제를 통해 시·도청 수사부서 진출대비 전입자 비율은 25% 이상 증가하였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경찰청에서 2020년 6월 경찰 책임수사 체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것으로, 수사관들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체계를 수립하여 자격에 맞춰 수준별 사건을 배당하고 희망부서 배치 시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보유한 수사 역량, 경력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며, 이는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된다. 각 자격등급별 선발방법과 선발기준, 역량 수준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수사관 자격등급별 선발방법

자격등급	선발방법	심사기관
책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	경찰청
전임수사관	시·도경찰청에서 전임수사관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시·도경찰청
일반수사관	수사경과자가 제3조 제1항의 수사부서 <sup>1)</sup> 전입 시 선발	시·도경찰청
예비수사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 부여 <sup>2)</sup> 시 선발	시·도경찰청

주: 1)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수사국장, 과학수사관리관, 안보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지하철범죄 및 생활질서사범 수사부서, 경찰교육기관의 수사직무 관련 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 내 수사관련 부서 등

2) 제12조(선발의 방식)에 따라 선발된 사람,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이나 변호사·공인회계 등 자격취득 3년 이내 수사경과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등

자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별표 1] 각 수사관 자격등급별 선발방법

〈표 II-7〉 단계별 수사관 역량 수준 및 선발기준

자격등급	선발기준	역량수준
책임수사관	수사경력 7년 이상 요건 충족 및 수사역량 평가시험(서술식) 합격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서 지휘·지도 및 직접 수사업무 수행
전임수사관	수사경력 3년 이상 요건 충족, 별도 심사	중요 사건에서 독자적 수사 수행
일반수사관	수사부서 전입·근무	실제 수사업무를 처리
예비수사관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합격·경과 취득	수사관이 되기 위한 기본지식 보유

자료: 경찰청 내부 분석자료, 2021; 이성기,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 2021 재인용

『2021 경찰통계연보』상의 기능별 정원을 살펴보면,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2021년 기준 과학수사 1,362명, 수사 1만 160명, 형사 1만 6,988명,<sup>20)</sup> 사이버수사 2,091명, 안보수사 2,268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능에서 관리하는 정원으로 정확한 수사경찰 인원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성기(2021)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3만 2,500명,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 정원의 112.2%(3만 3,531명)이며 수사부서 내 비경과자 비율은 전국 평균 23.8%로 보고되었다.

20) 「자료 출처별 수사인력」(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찰통계연보』상의 ‘형사’는 교통수사, 여성청소년 수사를 포함

〈표 11-8〉 최근 3개년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단위: 명)

구분	계	경무	정보통신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지구대(파출소)	기타
2019	122,913	3,354	1,258	14,405	21,109	10,321	13,348	2,991	2,205	1,575	1,840	469	49,808	530
2020	126,227	3,231	1,142	14,898	21,970	10,524	14,901	2,991	2,182	1,570	1,881	168	50,236	533

구분	계	대변인	감사	정보화장비	경무	치안상황	경비	정보	외사	과학수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관서	부속기관
2021	128,985	169	1,928	914	2,885	4,592	16,655	2,990	1,100	1,362	10,160	16,988	2,091	2,268	3,535	3,148	6,999	50,668	533

자료: 경찰청, 『2021 경찰통계연보』, 2022a

경찰의 교육훈련 실시권자는 법률상 경찰청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교육훈련 하부기관으로는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 경찰청 부속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시·도 경찰청(지방교육센터) 및 경찰서(직장훈련, 무도훈련)가 있다. 하부기관에서는 소속 경찰의 교육훈련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표 11-9〉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담당부서

구분	선발기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국가수사본부 (수사운영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li> <li>교육훈련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li> <li>경찰교육기관 업무 지원</li> <li>수사운영지원담당관(수사경찰교육)</li> </ul>
부속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대학: 치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이론·정책·과학기술 연구</li> <li>경찰인재개발원: 재직자 직무전문 교육훈련</li> <li>중앙경찰학교: 순경 공채 등 신입경찰관 교육훈련</li> <li>경찰수사연수원: 수사분야 재직자 직무전문 교육훈련</li> </ul>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관 공통 직장훈련(직장교육, 사격, 체력, 무도)</li> </ul>

자료: 경찰청, 2021; 신우섭, 「수사경찰 교육훈련의 전이효과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2022 재인용

수사 업무는 다른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서도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주로 범죄수사의 특수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수사경찰은 아주 즉각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며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된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각종 강력 사범들을 진압·검거하는 경우, 대부

분 현장에서 시간 여유가 없고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관 교육은 집합교육방식으로 경찰수사연수원과 시도청 경찰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교육과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훈련) 방식의 현장 교육을 병행해 왔다.

시도청 경찰교육센터는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요청에 따른 정책 안내, 현안교육, 기초 교육 위주로 <표 II-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7~14시간 정도의 교육을 구성하고 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1~4주 정도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훈련 방식은 기본적으로 강의 방식을 활용하고 직무사례 세미나 등 참여식 강의와 분임 토의교육, 실습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표 II-13> 참고).

〈표 II-10〉 시도청 경찰교육센터 수사 교육과정

과정	교육기간	교과편성	대상
사이버수사 기초과정	2일 (12시간)	• 네트워크 기초 • 인터넷 추적수사기법 이론 및 실습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주무관
지능범죄수사 실무과정	2일 (12시간)	• 공직선거법 수사 • 집회시위 및 집단불법행위 • 뇌물수수 등 공무원범죄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재산범죄수사 실무과정	2일 (12시간)	• 재산범죄에 대한 이해 • 주요 수사사례 연구 • 증거수집 및 수사요령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유치장관리업무 실무과정	2일 (12시간)	• 유치인 보호관 근무여건 개선방안 안내 • 석방 절차 개선방안 공유 • 유치장 업무 관련 중·장기 추진사항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안보수사·첩보 전문화과정	2일 (12시간)	• 국가보안법 조문별 이해 • 안보사범 검거 사례 • 안보첩보 일반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전문화과정	2일 (12시간)	• 신변보호 관련 법령 및 체계 이해 • 탈북민의 특성과 사회적응 • 신변보호 실무 및 사례분석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2일 (12시간)	•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이해 • 주요사례 경찰대응 연구 • 가·피해자 대응요령(2차 피해예방 등)	수사과 경정이하, 일반직, 주무관
여청수사기초과정	2일 (8시간)	•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스토킹,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수사 • 신상등록상자 관리	여청수사 6개월 미만자, 6개월 이상자 중 관련 교육 미이수자

〈표 II-10〉의 계속

과정	교육기간	교과편성	대상
여청수사지휘기초과정	1일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지휘일반 및 언론대응 유의사항</li> <li>여성폭력사건 처리절차의 이해</li> <li>아동청소년사건 처리절차 이해</li> </ul>	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실종수사기초과정	1일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가출 법령 및 수사절차 이해</li> <li>통신수사의 이해</li> <li>추적수사기법(cctv, 차량이동내역 등)</li> </ul>	시·도청 폭력계, 경찰서 실종팀 중 실종전담인력
강력범죄수사실무과정	1일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사사건 수사 착안사항 등</li> <li>추적수사 기법 및 실무 사례</li> <li>cctv 분석 기법</li> </ul>	현 수사부서 근무자 (경위이하)
교통조사관기초과정	2일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법 이해</li> <li>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해</li> <li>비정형적 사고 처리 기준</li> </ul>	교통과 경정이하, 일반직, 주무관
현장감식입문과정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현장사진과 기록</li> <li>증거와 압수의 이해</li> <li>법의학의 이해</li> </ul>	경찰서 수사·형사기능, 지역경찰 등
과학수사의 이해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문감정, DNA, 족·윤적, 화재감식 등 분야 소개</li> <li>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최신 기법 소개</li> </ul>	경찰서 수사·형사기능, 지역경찰 등
디지털포렌식 기초과정	1일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증거 압수방법 및 유의사항</li> <li>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사용법</li> <li>디지털 수사도구 사용법</li> </ul>	경찰서 수사부서 근무자(경정이하)
신입수사팀장과정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지휘 이론·사례 교육</li> <li>수사과오 사례 교육</li> <li>수사브리핑 및 오보대응 등</li> </ul>	새 수사부서 신입 팀장
수사자료분석 실무과정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분석(SNA) 일반이론</li> <li>연관분석 소프트웨어(i2) 활용 이론</li> <li>연관분석 소프트웨어(i2) 활용 실습</li> </ul>	경찰서 수사·형사기능
수사자료분석 실무전문가과정	3일 (1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엑셀 활용 기본 이론 및 실습</li> <li>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정형화 및 템플릿 추가 방법</li> <li>i2 활용 실습</li> </ul>	경찰서 수사·형사·사이버 근무자
불송치사건기록 작성기법	1일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송치 결정 의의 및 개념 학습</li> <li>불송치 관련 서류 및 결정·통지서 작성</li> <li>시·도청 불송치 결정서 우수사례 공유</li> </ul>	새 수사관
조사자증언 연락 향상	1일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자 증언 지원·교육·환류 시스템 안내</li> <li>조사자 증언 관련 이론(메뉴얼 교육)</li> <li>조사자 증언 관련 사례 분석 또는 특강</li> </ul>	직접수사부서 근무자, 수사심사관

〈표 II-10〉의 계속

과정	교육기간	교과편성	대상
발달장애인지원 조사과정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근거</li> <li>발달장애인 조사가이드</li> <li>장애유형별 유의사항</li> </ul>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 수사심리의 이해와 2차 피해 사례분석</li> <li>성폭력 피해자 조사모델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li> </ul>	경찰서 여청수사팀별 1인
마약류범죄수사 실무과정	1일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약류 종류 및 범죄 동향</li> <li>마약류 범죄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li> <li>첩보수집 및 소변·모발 감정의뢰 방법</li> </ul>	경찰서 수사·형사기능
안보상황분석과정	2일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동정보조사 개요 및 중요사례 공유</li> <li>합동정보조사의 운영</li> <li>상황별 조치사항 및 착안사항 등</li> </ul>	합동정보조사요원
첨단안보전문화과정	2일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관련 침해사고 특징과 분류</li> <li>탈북민 해킹메일 피해사례 및 예방법</li> <li>불법정보 차단·삭제 기준과 사례등</li> </ul>	시·도청, 경찰서 안보부서 근무자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시도청 경찰교육센터 교육일정」

이성기(2021)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 교육으로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교육콘텐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집합교육의 경우 보유사건의 지연처리, 동료의 사건 배당 부담 증가,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입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 집중도 문제, OJT 방식은 수사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신입 수사관 대신 어려운 사건을 배당받은 선배 수사관에게 신입 수사관이 제대로 질의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 등이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 다. 경찰수사연수원<sup>21)</sup>

##### 1) 경찰수사연수원 연혁

2007년 3월 경찰대학 부설기관이었던 경찰수사보안연수소를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경찰수사연수원이 개원하였다. 수사경찰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수

21) 경찰청(2022a), 경찰청(2022b), 경찰수사연수원(<https://www.kpia.go.kr>), 신우섭(2022)을 바탕으로 재작성함

사연수원은 당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했으나, 2013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남 아산시의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표 II-11〉 경찰수사연수원 연혁

연월	내용
1984. 1.	• 경찰대학부설 수사간부연수소 설치
1986. 10.	• 경찰대학부설 대공간부연수소 설치
1992. 10.	• 수사간부연수소를 경찰수사연수소로 확대 설치 • 대공간부연수소를 보안간부연수소로 변경
1996. 6.	• 보안간부연수소를 보안경찰연수소로 확대 설치
1999. 5.	• 경찰수사연수소와 보안경찰연수소를 경찰수사보안연수소로 통합
2007. 3.	• 경찰대학 부설기관 경찰수사보안연수소를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분리, 경찰수사연수원 개원
2013. 9.	•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남 아산(현 청사)으로 이전

자료: 경찰청, 「2022 경찰백서」, 2022; 경찰수사연수원, <https://www.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조직 및 기능

경찰수사연수원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실제적 진실 발견과 형사 정의 실현을 통한 ‘인권’을 이상향으로 삼으며 ‘진실’을 수사의 목표로 할 것을 원훈으로 한다. 교육목표는 ① 전문수사 이론교육 ② 현장실습중심 특성화 교육 ③ 인권경찰로서의 인성함양 ④ 최신 수사기법 연구보급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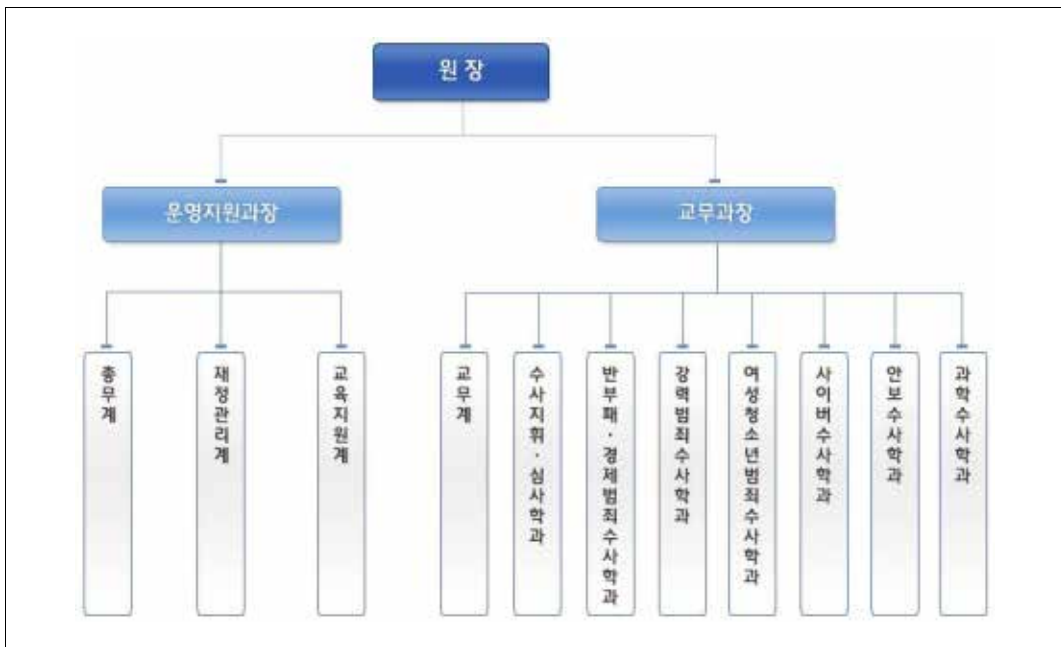
〔그림 II-5〕 경찰수사연수원 원훈(좌) 및 교육목표(우)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https://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

운영조직은 운영지원과 및 교무과(2과)로 구성되며, 운영지원과 아래 총무계, 재정관리계, 교육지원계를 두고, 교무과 아래 교무계(4계)와 7개 학과를 두고 있다. 7개 학과는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안보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를 포함한다. 조사 시점(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조직별 운영인원(정원)은 64명으로,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3명, 경감 16명, 경위 22명, 경사 8명, 경장 1명, 순경 1명 등으로 구성된다.<sup>22)</sup> 이들 중 교수요원은 30명으로 수사지휘·심사학과 4명,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6명, 강력범죄수사학과 5명,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4명, 사이버수사학과 4명, 안보수사학과 3명, 과학수사학과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우섭(2022)에 따르면 경찰수사연수원은 전임 교수요원 외에 특수한 수사분야에 대해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외래강사로 선발·초빙하여 수사교육을 진행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약 500여 명이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데이터와 강의 역량, 적격성 여부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II-6] 경찰수사연수원 조직도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https://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

22) 임기제, 주무관 미포함,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21호, 2023. 2. 6.)

2023년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 대상은 3만 6,678명이며 교육 과정은 85개 과정, 220회, 교육인원(배정인원) 6,070명으로 계획되었다. 학과별로 보면, 교육 과정은 수사지휘·심사학과 교육과정은 11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13개, 강력범죄수사학과 17개, 여성청소년 수사학과 8개, 사이버수사학과 11개, 안보수사학과 8개, 과학수사학과 17개로 구성된다.

〈표 II-12〉 최근 5개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육대상	교육과정(개)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배정인원)
2019	30,581	63	152	4,784
2020	31,199	60	119	1,890
2021	34,836	86	178	4,589
2022	36,101	81	215	6,199
2023	36,678	85	220	6,070

주: 2019년은 5개 학과, 2020년은 6개 학과, 2021년부터 7개 학과로 구성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운영 관련 자료」; 「교육과정 세부 내용」

〈표 II-13〉 2023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세부내용

학과	교육과정	기간(주)	1회 인원(명)	횟수(회)	총인원(명)
7	합계	-	-	220	6,070
수 사 지 휘 심 사 학 과  (11)	수사지휘과정(총경)	1	20	3	60
	책임수사관	1	30	1	30
	수사심사관과정	1	30	4	120
	변호사경채자과정	12	40	1	40
	일반수사관선발과정	2	30	1	30
	추적수사기초과정	1	30	3	90
	추적수사전문과정	2	25	2	50
	신임수사관(수사) 전문교육과정	1	30	5	150
	수사정보분석기초과정	1	30	1	30
	수사정보분석전문과정	3	20	2	40
	수사정보분석심화과정	1	20	1	20

〈표 II-13〉의 계속

학과	교육과정	기간(주)	1회 인원(명)	횟수(회)	총인원(명)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13)	수사지휘과정(수사)	2	30	1	30
	경제범죄수사팀장과정	2	30	3	90
	경제범죄수사과정	2	30	5	150
	신임경위수사실무과정	4	60	3	180
	신임수사관(경제) 전문교육과정	1	40	9	360
	예비수사관수사실무과정	4	50	2	100
	반부패수사팀장과정	2	30	2	60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정	2	30	4	120
	자금추적심화과정	2	30	1	30
	기업회계부정수사전문과정	3	30	2	60
	보건의료수사과정	1	30	1	30
	보험범죄수사과정	1	30	4	120
	부동산범죄수사과정	1	30	2	60
강력범죄수사학과 (17)	수사지휘과정(형사)	2	30	2	60
	강폭력범죄수사팀장과정	2	30	5	150
	강폭력범죄수사과정	2	30	5	150
	수사면담전문과정	2	20	2	40
	수사면담심화과정	1	20	1	20
	위기협상전문과정	2	20	2	40
	위기협상심화과정	1	20	1	20
	신임수사관(형사) 전문교육과정	1	30	11	330
	마약류범죄수사과정	2	30	2	60
	안전사고수사과정	1	30	2	60
	미제사건수사과정	1	30	2	60
	조직폭력범죄수사과정	1	30	2	60
	국제범죄수사과정	1	30	1	30
	교통조사지휘과정	2	30	1	30
	교통범죄수사실무과정	2	30	2	60
	신임수사관(교통) 전문교육과정	1	30	4	120
	교통조사실무과정	2	30	4	120

〈표 II-13〉의 계속

학과	교육과정	기간(주)	1회 인원(명)	횟수(회)	총인원(명)
여성 청 소 년 수 사 학 과 (8)	수사지휘과정(여청)	2	20	2	40
	여청수사팀장과정	2	30	8	240
	여청수사실무과정	2	30	4	120
	신임수사관(여청) 전문교육과정	2	30	9	270
	여성폭력피해자조사기초과정	1	20	2	40
	여성폭력피해자조사전문과정	2	25	1	25
	아동장애인조사기법전문과정	2	25	1	25
	성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2	30	2	60
사 이 버 수 사 학 과 (11)	사이버수사과정	2	30	1	30
	사이버경채과정	2	30	3	90
	신임수사관(사이버) 전문교육과정	2	30	8	270
	위장수사관양성과정	2	20	1	20
	사이버테러수사과정	2	20	1	20
	가상자산 수사기초과정	1	20	3	60
	디지털포렌식과정	2	30	3	90
	디스크포렌식전문과정	2	20	2	40
	모바일포렌식전문과정	1	20	2	40
	사이버범죄예방강사양성과정	1	30	1	30
	영상포렌식전문과정	2	20	1	20
안 보 수 사 학 과 (8)	안보수사팀장과정	2	20	2	40
	안보수사기초과정	2	25	2	50
	안보수사전문과정	2	30	2	60
	안보수사경력채용자과정	2	20	1	20
	공공안보범죄수사과정	2	30	3	90
	첨단안보수사과정	2	20	2	40
	경제안보수사과정	2	20	2	40
	신임수사관(안보) 전문교육과정	2	30	4	120
과 학 수 사 학 과 (17)	과학수사팀장과정	1	25	2	25
	현장감식기초과정	3	25	2	75
	현장감식전문과정	2	25	3	50
	현장감식심화과정	2	25	2	50
	현장감식과 변사자검시과정	2	30	2	60
	화재감식기초과정	1	25	2	25

〈표 II-13〉의 계속


학과	교육과정	기간(주)	1회 인원(명)	횟수(회)	총인원(명)
과 학 수 사 학 과 (17)	플리그래프심화과정	1	25	1	25
	지문감정(AFIS)과정	2	30	2	60
	지문감식과정	1	25	1	25
	변사자검시전문화과정	1	25	1	25
	법치면수사심화과정	1	25	1	25
	법사진과정	2	25	1	50
	수중과학수사전문과정	1	25	3	25
	화재감식전문과정	1	25	6	25
	법영상기본과정	1	25	2	25
	현장관찰감식과정	1	25	2	25
	DNA현장감식과정	1	25	2	25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교육과정 세부 내용」

### 3) 시설 현황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수사연수원 현 청사는 2013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건립되었다. 이때 본관동, 과학수사실습동, 제1, 2생활관이 구축되었으며 이후 사후변성연구센터(2021) 및 수사면담센터(2022)를 증축하였다. 부지면적은 본 사업 시행(옥외주차장 조성)을 위해 11,828㎡에 해당하는 부지의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을 진행하여 88,729㎡로 제시되었다. 연면적은 본관동 10,248㎡, 과학수사실습동 1,237㎡, 제1생활관 7,412㎡, 제2생활관 1,399㎡, 사후변성연구센터 214㎡, 수사면담센터 141㎡이며, 주요 시설로는 모의법정실, 모의범죄실습장, 마약범죄연구실, 사이버/KICS/심리증거수사실습실 등이 있다.

〈표 II-14〉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2 (경찰청 부지)
준공/개원	2013년
부지면적	88,729㎡
주요시설	본관동, 과학수사실습동, 제1생활관, 제2생활관, 사후변성연구센터, 수사면담센터 등
세부시설 (본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1층: 상수도물탱크,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창고, 전기실, 시설관리원휴게실</li> <li>- 지상1층: 재정관리계, 교무계, 문서고, 교수연구실, 당직실, 모의법정실, 모의범죄실습장, 최종라홀, 소/중 강의실</li> <li>- 지상2층: 모의범죄실습장, 교수연구실, 종합통제실(가상실습실), 범죄연구실, 종합전산실, 동시통역실, 정보통신실, 마약범죄연구실, 사이버/KICS/심리증거수사 실험실습실, 북카페</li> <li>- 지상3층: 원장실, 운영과장실, 교무과장실, 총무계, 소/대회의실, 교재실, 교수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외래교수실, 수사자료실</li> <li>- 지상4층: 식당, 옥상정원</li> </ul>
주요업무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신뢰 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외관	 <p>① 본관                      ② 과학수사실습동                      ③ 제1생활관                      ④ 제2생활관 ⑤ 증거물관리교육센터                      ⑥ 주차장</p>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중간설 계보고서」; 경찰수사연수원, <https://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를 바탕으로 제작됨

〈표 II-15〉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건물명	층수		연면적(㎡)	준공연도
	지하	지상		
본관동	1	4	10,248.43	2013년
제1생활관	-	7	7,412.08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제2생활관	-	3	1,398.83 (1인실 20실, 3인실 3실)	
과학수사실습실동	-	1	1,236.61	
사후변성연구센터(법인류학센터)	-	1	214.2	2021년
수사면담센터	-	1	140.91	2022년
관사	-	2	243	1994년
과학수사센터(증거물보관센터)	-	1	675	-
쓰레기분리수거장	-	1	63.23	-
합계	-	-	20,894.06	-

주: 과학수사센터(증거물보관센터)는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사전검토보완서」에서 경찰수사연수원으로 구분되었으나, 연수원은 재검토 과정 중 해당 건물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소속 건물로 경찰청에서 운영·관리 중이라고 제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세부 실별 면적 및 수용 인원」, 「경찰수사연수원 기존 시설」, 「기 제출자료 재확인」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II-7] 경찰수사연수원 현황(사진)



[그림 11-7]의 계속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중간설계보고서」

## 2. 유사사례 검토<sup>23)</sup>

### 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교육의 중추 기관으로서 현장경찰관 전문화 교육과 신입경찰(경찰 간부후보생, 변호사특채, 경정특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충청남도 아산시의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742,632㎡로 본관/도서관동, 강당동, 강의동,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

〈표 11-16〉 유사사례(1) 경찰인재개발원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1
준공/개원	2009년
부지면적	1,742,632㎡
주요시설	본관/도서관동, 강당동, 강의동, 생활관, 체육관/후생관/식당 등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도서관동: 홍보관, 국제회의실 도서관, 교수연구실 등</li> <li>▪ 강당동: 차일혁홀, 안병하홀 등</li> <li>▪ 강의동: 대강의실, 중강의실, 일반강의실, 각종 실습실 및 분임실 등</li> <li>▪ 생활관: 숙소, 독서실, PC실 등</li> <li>▪ 실내사격장: 실탄·영상 시뮬레이션 사격장, 부대시설</li> </ul>

23) 건축공간연구원(2015)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표 II-16〉의 계속

구분	내용
주요 기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직무교육</li> <li>▪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및 신임과정 교육</li> <li>▪ 경찰 관련 분야 연구 및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 등과의 교류협력</li> </ul>
외관	 <p style="text-align: center;">             ① 본관/도서관동    ② 강당동    ③ 강의동    ④ 체육관/후생관/식당    ⑤ 생활관              ⑥ 실내사격장    ⑦ 대운동장    ⑧ 체력단련장    ⑨ 경찰모빌리티센터         </p>

자료: 경찰인재개발원, 『2018 경찰인재개발원 연보』, 2019; 경찰인재개발원, <https://www.phrdi.go.kr>, 검색일자: 2023. 5. 17.;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재인용

경찰인재개발원의 2023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신임과정 1개(일반직신입과정), 기본과정 2개(경정/경감역량강화과정), 직무과정(인증보수 포함) 89개, 인증과정 26개, 기타 1개(한국어교육과정)로 총 119개 과정이 계획되었다. 연 교육횟수는 596회, 교육인원은 1만 7,204명이며, 과정당 교육기간은 보통 1~4주 정도이다.

〈표 II-17〉 2023년 경찰인재개발원 직무 교육과정

과정명	기간(주)	과정명	기간(주)
일반직직무향상과정	1	학교전담경찰관실무기초과정	1
주무관직무향상과정	1	총포화약업무심화과정	1
주무관퇴직예정과정	1	풍속업무심화과정	1
빅데이터인력양성과정	1	관광경찰실무과정	1
교육행정역량강화과정	1	교통관리자 기초과정	1
경무기초과정	1	교통안전 기초과정	1
보고서작성심화과정	2	과태료실무심화과정	1
사격술향상과정	1	운전면허실무심화과정	1
정보화장비계장직무과정	1	경찰싸이키기초과정	2

〈표 II-17〉의 계속


과정명	기간(주)	과정명	기간(주)
정보화장비심화과정	1	경찰차운전심화과정	1
청문감시기초과정	1	정보관리자기초과정	1
부청문관, 민원실장과정	1	정보분석관리자심화과정	1
송무실무심화과정	1	정보상황·협력관리자심화과정	1
재해보상심화과정	1	정보분석기초과정	2
경리회계심화과정	1	정보분석심화과정	2
공로연수과정	1	범죄첩보심화과정	1
일반직퇴직예정과정	1	국민안전정보심화과정	4일
경찰드론기초과정	1	대화경찰기초과정	1
드론1종자격증취득과정	4	대화경찰심화과정	2
지역관서장경찰리더십과정	1	정보상황·협력기초과정	2
공감힐링과정	1	정보상황·협력심화과정	2
성희롱·성폭력상담원실무기초과정	1	외사요원기초과정	2
성평등교육전문가심화과정(인증보수)	1	치안한류전문가기초과정	1
인권역량향상과정	1	치안한류전문가심화과정	1
2차피해예방직무기초과정	1	경찰주재관양성과정	3일
공감받는경찰과정	1	외사관리자기초과정	2
공감받는경찰세미나과정(인증보수)	1	외국어전문요원기초과정	1
동료개입현장메신저과정	1	외사대테러방첩심화과정	1
팀장리더십과정	1	대테러기초과정	1
리더십비기너과정	1	위기협상기초과정	1
미래치안전략과정	1	위기대응심화과정	1
과학치안전문가양성과정	2	작전특화부대기초과정	1
생활치안관리자	2	채증요원심화과정	1
지역경찰형사법과정	2	집회시위현장대응기초과정	2
범죄예방실무기초과정	1	경찰경호기초과정	1
스토킹대응역량기초과정	1	경찰수행경호심화과정	2
피해자위기개입전문가과정	1	경찰항공구조종사안전심화과정	1
지역경찰관서장기초과정	1	경찰항공정비사안전심화과정	1
지역경찰현장실무자과정	1	물리력대응기본과정	1
자치경찰사무실무자과정	1	현장경찰관 핸들러 기초과정	1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일반직과정	1	경찰견운용요원 능력향상과정	2
가정폭력학대예방기초과정	1	과학수사 경찰견운용요원 심화과정	2
민간경비관리자과정	1	경찰견 교수요원양성 심화과정	4
현장촬영시물레이션기초과정	1	경호기본교육과정	5
보호조치실무기초과정	1		

자료: 경찰인재개발원, <https://www.phrdi.go.kr>, 검색일자: 2023. 5. 17.

## 나.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 본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분원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624,025㎡로, 본관동, 강의동, 후생동, 교정훈련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옥외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다.

〈표 11-18〉 유사사례(2) 법무연수원(본원)

구분	내용
위치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준공/개원	2014년
부지면적	624,025㎡
주요시설	본관동, 제1강의동, 제2강의동, 후생동, 교정훈련센터 등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동: 원장실, 연구위원실, 검사·일반교수실, 대강당/소강당, 국제세미나홀, 도서관, 디지털홍보관 등</li> <li>▪ 제1강의동: 형사모의법정, 영상녹화조사실습실, 현장수사실습실, 보호관찰상담실습실, 역할극강의실, 위변조감식실습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전산교육실, 강사휴게실 등</li> <li>▪ 제2강의동: 어학실, 심리상담강의실, 전산교육실, 회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교정훈련과, 교정연수과, 교정교수실, 멀티미디어실, 강사지원실 등</li> <li>▪ 후생동: 직원식당/간부식당, 교육생식당 2개소, 연화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li> <li>▪ 교정훈련센터: 사격장, 교육실, 강의실, 교정장비보관실, 중앙통제실, 교정역사관 등</li> </ul>
주요 기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공무원 교육 및 법무행정 관련 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li> </ul> </li> <li>▪ 법치주의의 전파 및 공유</li> <li>▪ 국제교류를 통한 범우한류에 기여</li> </ul>
외관	 <p>① 본관동    ② 제1강의동    ③ 제2강의동    ④ 후생동    ⑤ 신동·지동·예동          ⑥ 인동·의동    ⑦ 예화정    ⑧ 체육관    ⑨ 실내사격장 교육훈련센터          ⑩ 양덕재    ⑪ 수안당(게스트룸)    ⑫ 대운동장</p>

주: 신동·지동·예동 및 양덕재는 생활관, 린넨실, 세탁실, 분임토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인동·의동은 생활관, 린넨실, 세탁실, 분임 토의실, 생활지도교수실 등으로 구성됨

자료: 국토교통부,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보도자료, 2015. 5. 27.; 법무연수원, <http://www.ioj.go.kr>, 검색일자: 2023. 4. 5.;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재인용

법무연수원의 교육과정은 검사교육, 일반직교육, 교정직교육과 그 외 송무/특사경, 기타 교육 등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집합교육을 기준으로 교육 과정은 검사교육 26개, 일반직 교육 82개, 교정직 교육 54개, 송무/특사경 5개, 기타 교육 12개 과정이 확인된다.


검사교육에는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공판, 아동학대·성폭력범죄, 조세·관세, 특허·지재, 경제범죄심화), 반부패수사, 공정거래, 공공수사, 디지털·사이버수사 등 과정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입검사 및 경력 신입검사 과정(100~190일)을 제외한 대부분 과정이 5일 이내로 진행된다.

일반직 교육은 심리분석 수사 실무, 공공범죄 수사 실무,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 증거물 처리 실무, 상담조사 실무, 출입국사범·보호 실무 등 과정으로 구성되며, 마찬가지로 검찰 7급/9급/보호지/출입국 9급 신규자, 검사 직무대리 외 대부분 교육기간은 5일 이내이다. 교정직 교육에는 보안실무전문화, 정보공개·기록물관리 실무, 기동순찰반 실무 등이 있으며 신규 교정직 7급/9급, 특별사법경찰관리(심화) 외 대부분 5일 이내로 진행된다.

## 다.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 등 국가재정 확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하여 5,600여 세관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관세·무역 전문성을 배양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훈련기관이다. 2008년 충청남도 천안시의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부지면적은 415,109㎡로 본관, 강의동/해경연구센터, 생활관, 체험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표 II-19〉 유사사례(3) 관세인재개발원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준공/개원	2008년
부지면적	415,109㎡
주요시설	본관, 강의동/해경연구센터, 후생관, 생활관, 체험학습관 등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 강의실, 중강당, 전산강의실, 분임토의실, 국제회의실 등</li> <li>▪ 체험학습관: 수입통관체험관, 여행자통관체험장, 전자통관체험장, 조사체험장 등</li> <li>▪ 생활관: A동 96실(192명 수용), B동 60실(120명 수용), 피트니스센터, 탁구장, 스마트워크센터, 힐링센터, 당구장, 세탁실 등</li> <li>▪ 야외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li> </ul>
주요 기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관세·무역 전문성을 배양, 미래 역량 함양 지원</li> <li>▪ 2010년부터 WCO(세계관세기구) RTC(지역훈련센터)로 지정, 외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관세 역량 전수</li> </ul>
외관	

자료: 관세인재개발원, <https://hrd.customs.go.kr>, 검색일자: 2023. 5. 17.

관세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체계는 <표 II-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본, 전문, Global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집합교육과 사전 이러닝, 대면-화상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기본교육은 27개, CDP전문교육은 84개, 선택교육 88개, 글로벌과정 7개, 기업고객 15개, 국제훈련 2개 과정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표 II-20> 관세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훈련구분	구분	역할
기본교육과정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자에게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자각시키고 직장인으로서의 기본교양과 관세 공무원으로서의 기초적인 지식과 실무능력 습득
	승진후보자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승진 후보자로서 세관행정 전반에 대한 필요 직무 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
	관리자기본	세관장 및 5급 관리자로서의 관리행정 능력 및 역량 배양
	리더십	세관주무 세관과장 세관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자 리더십 역량 배양
전문교육과정	필수과정	전문분야별 경력단계별 필수 직무 능력 및 역량을 배양 - 심화, 활용, 공통, 전문교육
	선택과정	조직 성장에 필요한 특수역량(조직운영,R&D,국제역량 등) 배양 - 전문기법과정, 특별과정, 사이버 과정
	인재원 지정 기관별 현장 (특성화) 교육	조직 성장에 필요한 특수역량(조직운영,R&D,국제역량 등) 배양 - 전문기법과정, 특별과정, 사이버 과정
Global 교육과정		국제 관세행정을 선도할 Global Leader 및 국제 전문가 육성 교육
		전세계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관세행정 교육, 전파

자료: 관세인재개발원, <https://hrd.customs.go.kr>, 검색일자: 2023. 5. 17.

## 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국토교통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2012년 제주도 서귀포시의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부지면적은 58,007㎡로 본관과 생활관, 후생관 등을 갖추고 있다.

〈표 II-21〉 유사사례(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분	내용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준공/개원	2012년
부지면적	58,007㎡
주요시설	본관, 생활관 등
세부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정보화교육실, 공유나눔마당, 강의실, 온라인 스튜디오, 도서마당, 사무실 등
주요 기능/특징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국토교통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전문교육 제공

외관



자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https://tilit.molit.go.kr>, 검색일자: 2023. 5. 17.;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재인용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2023년 교육훈련체계는 [그림 II-8], 〈표 II-2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교육대상자별 기본, 전문, 핵심가치교육으로 구분되는 집합과정과 이러닝 교육이 병행 운영되며, 집합교육 70개, 이러닝 118개 과정으로 총 교육인원(계획인원)은 6만 1,475명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11-8] 2023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자료: 관세인재개발원, <https://hrd.customs.go.kr>, 검색일자: 2023. 5. 17.

〈표 11-2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총괄 현황

구분	과정 수	과정 수	횟수	계획인원(명)
집합과정	기본	7	16	590
	전문	58	116	4,445
	핵심가치	5	8	240
	소계	70	140	5,275
이러닝과정	기본	29	290	29,000
	전문	89	890	26,700
	소계	118	1,180	55,700
합계		188	1,320	61,475

자료: 관세인재개발원, <https://hrd.customs.go.kr>, 검색일자: 2023. 5. 17.

### 3. 관련계획 검토

#### 가. 국민 중심 책임수사

2021년 1월,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에 담긴 국민의 염원 및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아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 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본질적인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나, ‘국민으로부터 주어질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①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 ②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 정립 ③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 전개 ④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통한 본래적 수사기관 ⑤ 수사 전문가 양성을 통한 경찰수사 역량 제고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II-9]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이 중 ⑤ 수사 전문가 양성을 통한 경찰수사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확충 및 교육학과 확대·개편 등 수사분야별 전문화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림 II-9]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

**국민 중심 책임수사, 우리 책이다**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습니다.

②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③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④ 책임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수사 전문가 양성을 통해 경찰수사 역량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중심 책임수사, 우리 책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료: 경찰청,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보도자료, 2021. 1. 4.

## 나.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계획(안)

2023년 1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찰교육대개혁 추진계획(안)'은 수사부서 진출률, 신입수사관 비율 감소 등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사교육 체계 재설계 및 전면 개편을 통해 수사품질을 균질화하고자 수립되었다. '매년 1% 최고 수사전문가 양성', '매년 수사경찰 30% 교육 실시', '경찰수사연수원, 국가 전반의 수사교육 선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있다.

동 계획(안)은 3개 전략에 걸쳐 예비 수사경과자를 위한 기초교육이나 신입수사관의 역량 성장, 승진 기본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연수원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전략 '책임수사관 기관으로, 경찰수사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에서는 본 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 세부과제 중 하나로 '수사연수원 외연확장(증축사업)과 연계, 국내 최대의 수사교육기관을 넘어 세계적 수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을 밝히고 있으며 '교육주기 3년 단축, 사업기간 2021~2026년, 사업비 총 473억, 중간설계 검토 중' 등 본 사업 내용을 직접 적시하고 있다.

[그림 11-10]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계획(안)

2 추진 전략(案)		① 책임수사기관으로, 경찰수사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
<b>목표:</b> ① 매년 1% 최고 수사전문가 양성, ② 매년 수사경찰 30% 교육 실시, ③ 경찰수사연수원, 국가 전반의 수사교육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수사교육 전담부서 신설) 수사경찰의 교육과 인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내 인력자원개발 전담조직 신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수사인재 개발계(연건 4명)를 2과 단위로 확대 운영하거나 2과 기존 과 단위로 수사교육계를 신설하여 수사교육의 콘도분타워 역할 수행</li> </ul> </li> <li>○ [중기] (국가수사원으로 도약) 수사연수원 외연확장(증축사업)과 연계, 국내 최대의 수사교육기관을 넘어 세계적 수사교육기관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부처·외국경찰 대상 교육기회를 개방해 부처·국가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국가전반의 수사교육을 선도하는 책임수사기관으로 역할 집결</li> <li>· 現 63년의 교육주기를 3년으로 단축(일시정 300명 → 500명, 연건 6,200억명 → 11,200명 교육 가능, / 21~26년, 사업비 총 473억, 중간설계 검토중)</li> </ul> </li> </ul>
<b>전략1</b>	<b>수사관의 단계별 역량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건] 신입수사관 '교육 후 수사현장 투입' 원칙 확립</li> <li>◇ [연건] '신입 → 전문가 → 수사지휘자' 교육체계 재설계 및 연사연계</li> <li>◇ [연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보급(국수본 연중 기본서 등)</li> <li>◇ [연건] 개인차이 → 조직역량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구축, 상시학습 기반 구축</li> </ul>	
<b>수사 품질 상황 균질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건] 1인1교관 '교육 후 수사현장 투입' 원칙 확립</li> <li>◇ [연건] '신입 → 전문가 → 수사지휘자' 교육체계 재설계 및 연사연계</li> <li>◇ [연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보급(국수본 연중 기본서 등)</li> <li>◇ [연건] 개인차이 → 조직역량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구축, 상시학습 기반 구축</li> </ul>	
<b>전략2</b>	<b>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수사전문가 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대학·타부처 등 외부 위탁교육 확대 및 수사특화 위탁과정 설계</li> <li>◇ [중기] 국내외 권위 기관·학회와의 세미나·협력 강화</li> <li>◇ [중기] FBI 등 외국 주요 수사기관, 대학·연구소 등 해외연수 확대</li> <li>◇ [중기] 수사연수원 최고 전문가 과정 설계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li> </ul>	
<b>전략3</b>	<b>책임수사기관으로, 경찰수사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교육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li> <li>◇ [중기] 수사연수원을 국가수사교육원으로 발전, 타부처·민간까지 개방</li> <li>◇ [중기] 유희부지 등 활용, 권역별 현장 수사교육센터 설치</li> <li>◇ [중기] 시·기반 조사 트레이닝, VR·XR 활용 현장 학습 시스템 구축</li> </ul>	
<b>교육 인프라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교육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li> <li>◇ [중기] 수사연수원을 국가수사교육원으로 발전, 타부처·민간까지 개방</li> <li>◇ [중기] 유희부지 등 활용, 권역별 현장 수사교육센터 설치</li> <li>◇ [중기] 시·기반 조사 트레이닝, VR·XR 활용 현장 학습 시스템 구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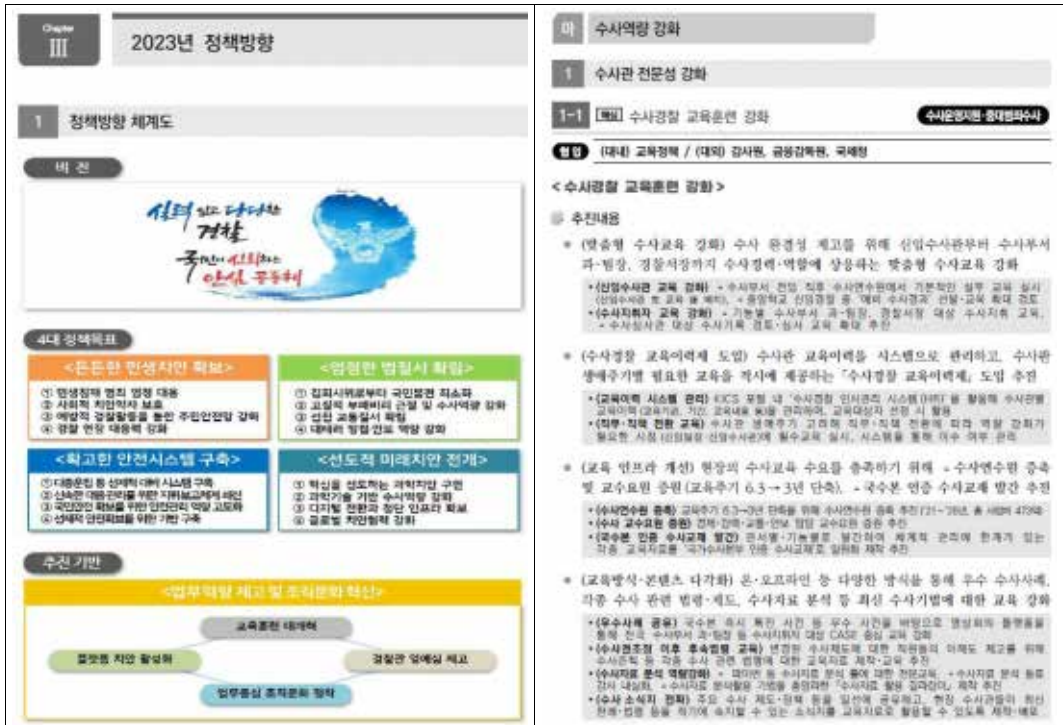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계획」

## 다.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경찰청의 「2023 주요 업무계획」(경찰청, 2023)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67개 핵심, 1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중 두 번째 목표 ‘엄정한 범질서 확립’은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부패·불공정 범죄 근절을 통해 준범질서를 구현하며 안전과 소통이 조화되는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 교육훈련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본 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원의 기본적인 실무 교육이나 수사관별 전문·심화교육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수사연수원 증축(‘21~’26년, 총 사업비 473억) 및 교수요원 증원(경제·강력·교통·안보 담당 교수요원 증원 추진) 등 교육 인프라 개선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림 11-11]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자료: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2023.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 1) 검토의 범위

본 사업의 추진 단계는 중간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비 증가 및 계획인원 조정으로 현 시점에 적합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본 재검토에서는 비용 증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목적 및 부지계획,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당초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본 재검토는 의뢰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말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재검토하고자 한다.

#### 2) 적정 시설 규모 검토

경찰수사연수원의 적정 규모 산정은 요구안과 같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등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 중간설계도서, 사업계획안의 설계지침(Space Program)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를 진행한다.

다만 재검토 과정 중 경찰수사연수원의 요구안 조정 요청으로 기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수원의 제출자료 간 불일치 등이 확인되면서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sup>24)</sup> 더하여, 연수원의 공간구성이 일반 경찰관서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경찰관서의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재검토에서는 사업계획안의 설계지침과 중간설계 내역서 및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시설규모 산출을 위한 기준인원 검토

시설 규모의 산정은 기준인원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는바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연수원으로부터 정원 내역을 전달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은 이에 대해 계획설계(2022. 3.) 및 중간설계(2022. 8.) 시점으로부터 본 재검토 시점까지 복수직급제에 따른

---

24) 연수원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연면적(18,266㎡)은 유지하되 실별 구성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함

직급별 정원이 미세 조정되었을 뿐 총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왔다고 제시하였다.<sup>25)</sup>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정원뿐만 아니라 사용인원(교육인원)을 고려해야 하며 본 사업은 장래 교육주기 단축을 목표로 하는 시설 증축사업이므로 기준 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은 본 사업 시행 이후의 교육계획과 교육인원, 증원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증원 계획을 반복하고 증원 계획과 시설 증축 계획 간 연계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교육주기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각 과정별 교육인원 등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본 재검토에서는 연수원의 목표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을 준용하고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과 시설 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 4) 대안의 설정

본 재검토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조달청 검토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로 제출된 요구안(당초안과 동일), 중간설계를 통해 도출된 '중간설계안',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인 '조달청 검토안'이 존재한다. 본 재검토에 앞서 조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된 요구서의 면적은 당초안을 준용하여 증감이 없었으나 비용은 증액 요구를 반영하여 당초안 대비 증가하였다. 요구안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연수원은 본 재검토 과정 중 요구서의 연면적(18,266㎡)을 유지하되 세부 공간의 구성과 실별 면적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추고자 요청한 바 있다.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의 세부 공간 구성은 요구서상의 요구안(당초안과 동일) 대비 일부 시설이 추가 또는 삭제되는 등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수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게 된 점,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다는 점, 수사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 재검토에서는 중간설계안과 조달청 검토서, 연수원의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사업 규모 검토 시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진이 재검토한 면적을 '대안'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이때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 합계는 총 18,584.25㎡로 당초안의 연면적인 18,266.10㎡와 상이하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중간설계안의 연면적을 18,266.10㎡로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

25)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정원 및 증원 계획 관련(수정)-임기제 제외」,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20호, 2022. 1. 3.; 훈령 제21호, 2023. 2. 6.)

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비용 검토에서는 조달청 검토 이후 누락된 항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비용을 ‘요구안’으로 하며, 적정 단가 등을 검토하여 요구안의 면적에 적용한 ‘검토안’과 대안의 면적을 적용한 ‘대안’으로 구성한다.

〈표 II-23〉 대안의 설정

구분		내용	
당초 사업계획안	요구서 요구안 (당초안)	- 사업주체의 조달청 조정요구 전 당초 지침면적 (조달청 검토 후 당초안을 요구안으로 선정)	
중간설계안		- 중간설계를 통해 도출된 조달청 검토요청안	
조달청 검토안		- 사업주체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른 조달청 검토안 (단, 조달청은 검토안과 별개로 당초안을 준용할 것을 제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규모검토	조정 요구안	- 중간설계안 설계면적을 토대로 조정 요구안을 설정하여 검토 (총면적이 조정요구서와 동일하도록 기타 공용시설면적 조절)
		대안	- 적정 기준인원 및 면적 검토
	비용검토	요구안	- 주무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조정요구서에 따른 비용
		검토안	- 요구안 면적을 기준으로 비용 검토
	대안	- 대안 면적을 기준으로 비용 검토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은 요구서(18,266㎡)와 동일하게 조정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비용 추정의 쟁점

### 1) 공사비

#### 가) 기본공사비

기본공사비의 경우, 주무부처에서 물가상승의 이유로 물가변동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 재검토에서는 기본공사비 단가를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및 나라장터의 최근 연도 유사사례 단가를 검토하여 재산정하여 연도보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공사비 단가 중 현장여건 공사비에 포함되어 중복되는 흙막이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 사례에 포함된 해당 공정을 제외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나) 현장여건

주무부처에서 현장여건 비용으로 제시한 항목은 흙막이 공사 반영, 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에 따른 전신주 이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으로 공사비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한 항목은 내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안을 준용하고자 하며 중복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 다) 법령개정

법령개정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강화,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그중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관련 비용은 앞서 검토하는 조달청의 최근 연도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사료됨에 따라 중복되는 비용으로 삭제하고자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충전시설 대수를 검토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내 설치단가 사례를 검토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 2) 보상비

보상비의 경우 주차장 신설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비용으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필지와 공시지가, 감면비율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 3)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 지침에 따른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안 대비 공사비 증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안과 대안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반영하여 시설부대경비를 산정하고자 한다.

##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정책성 분석은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한다. 정책성 분석상의 첫 번째 쟁점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정책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의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 상위 계획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관련 계획과 아산시의 지역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부지활용 및 설계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준비정도와 사업추진에 있어 우려되는 지연 사항에 대하여 분석한다. 사업계획의 준비정도와 관련하여서는 검토의 기준이 되는 요구안의 실 구성에 대한 조정 요청, 실별 기준 인원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성 및 증축 시 활용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사업추진에 있어 우려되는 지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법령 개정 및 현장 여건에 대한 반영으로 인하여 변경된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 부처의 추진 의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여건을 검토한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경찰청 및 경찰수사연수원과 사업 대상지인 충청남도 및 아산시, 아산시 지역 주민 등이 가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를 주무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언론보도,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 검토의 개요

##### 가. 사업개요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1항 및 제31조(직무) 제3항에 근거하여 강의동 및 생활관동 증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무부처에서는 2020년 사업 확정 이후 건설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급증으로 물가상승분 방어 및 각종 법정 분담금 등을 미반영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다.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물가상승분 및 현장여건, 법령개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상승, 부대비 요율 증가로 인한 증액이 반영되었다. 본 재검토에서 살펴볼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Ⅲ-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변경요구안 (B)	증감(B-A)		변경 사유
			순증액	(%)	
사업규모	18,266㎡	18,266㎡	-	-	-
총사업비	47,312	56,681	9,369	19.8	-
1. 공사비	42,670	51,291	8,621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반영 (8,4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li> <li>- 법령개정 반영</li> <li>- 현장여건 반영</li> <li>- 각종 분담금 반영</li> </ul> </li> <li>• 법령 반영(2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li> <li>-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 모니터링</li> </ul> </li> </ul>
2. 보상비	-	218	218	순증	• 농지보전부담금 반영(「농지법」 제38조)
3. 시설부대경비	4,642	5,172	530	11.4	• 지침요율 반영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2. 적절성 검토

### 가.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주무부처는 범죄의 지능화, 공판중심의 강화 등 수사 환경변화와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인프라 확충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주기 6.1년에 연간 4,800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 바, 교육주기 3년을 목표로 연간 98개 과정, 373회, 1만 1,2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동 및 생활관동 증축을 목적한다.<sup>26)</sup>

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라 수사 전문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경찰의 수사 교육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인 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 증원 및 시설 확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진의 현장답사 결과, 본관동을 비롯한 4개동은 2013년에 이전하여 약 10년이 된 건물로 교육인원 증원을 위한 공간 및 면적 부족, 환경개선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1] 경찰수사연수원 현황 사진



26) 본 재검토 과정에서 연수원은 2023년 기준 교육대상 3만 6,678명, 배정 교육인원 6,070명(교육주기 약 6년)이며, 교육주기 3년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및 인원은 연간 112개 과정, 403회, 1만 2,480명으로 정정 제시함

## 나. 교육인원의 적절성 검토

앞서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에서 주무부처는 현재 교육주기 6.1년에 연간 4,800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교육주기 3년을 목표로 연간 1만 2천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 및 생활관동 증축 추진을 목적으로 함을 확인하였다.<sup>27)</sup> 그에 따라 교육주기 3년 달성을 위해 본 사업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크게 일반강의실 10실, 컴퓨터강의실 10실, 실습실 13실, 생활실 200여 실로 제시되었다.

〈표 Ⅲ-2〉 교육주기 3년 달성 계획

구분	교육과정		연 교육인원	일반강의실	컴퓨터강의실	실습실	생활실
현황	85개	220회	6,070명	6개	6개	8개	300여명
증축 후	112개	403회	12,480명	16개	16개	21개	500여명
증감	+25개	+193회	+6,410명	+10개	+10개	+13개	+200여명

주: 제1생활관은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제2생활관은 1인실 20실, 3인실 3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감염병 확산 등을 감안하여 3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규모 산정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본관동 세부 실별 면적」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변하는 수사환경 및 국수본 정책 부서 요청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이 자주 수정·변경(2021년 18번 수정, 2022년 13번 수정, 2023년 4월 기준 6번 수정)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요구안의 경우 교육계획 및 조직 개편안상의 신설 학과(경제범죄수사학과, 교통범죄수사학과)에 대한 실습실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교육주기 및 각 과정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인원 설정 등의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설계 담당 부서 등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교육과정의 관계성, 연계성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재검토에서는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산술적인 목표 교육주기와 교육과정, 교육인원을 준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의뢰한 증축 시설면적에 대한 적정 규모와 비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점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의 설정 등이 적정하게 부합되도록 전문기관의 교육 설계와 수요 추정 과정을 통해 적정 교육인원을 산정하여 시설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7) 본 재검토 과정에서 연수원은 교육과정 및 인원을 정정 제시함(연간 98개 과정, 373회, 1만 1,200명 → 112개 과정, 403회, 1만 2,480명)

### 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최근 경찰수사연수원의 1개월 교육일정 현황을 살펴보면, 1개월간 교육시작 일을 기준으로 19개의 교육과정(온라인 1개 포함)이 진행되며, 첨두시 8개의 교육과정에 총 265명의 교육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대략 추정하면, 연간 228개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며 교육인원은 최대 6,840여 명 수준이다. 이는 2023년 교육계획(85개 과정, 220회, 6,040명)과도 유사한 수준이며, 연수원에서 일시점 교육인원이자 생활실 수용인원으로 제시한 300명과도 부합하여 기존 시설의 운용 역량과 교육과정 간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sup>28)</sup>

〈표 III-3〉 경찰수사연수원의 최근 1개월 교육일정 현황(2023. 5.)

(단위: 명)

교육과정	교육인원	2023년 5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30																														
2	30																														
3	30																														
4	30																														
5	25																														
6	30																														
7	30																														
8	30																														
9	60																														
10	25																														
11	25																														
12	30																														
13	30																														
14	30																														
15	30																														
16	20																														
17	30																														
18	30																														
19	30																														

주: 2023년 5월 중 시작된 교육과정에 한하며 교육과정 4는 온라인 교육으로 확인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www.kpia.go.kr, 검색일자: 2023. 8. 16.

28) 기존 생활관은 제1생활관은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제2생활관은 1인실 20실, 3인실 3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감염병 확산 등을 감안하여 3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됨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교육주거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각 과정별 교육인원 등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을 준용하되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과 시설 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추가로 요구되는 인원과 시설 수는 과거 교육시간에 대한 기존 정원 및 시설 수의 비율을 목표 교육시간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본 재검토 과정 중 연수원에서 추가 제시한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22호, 2023. 5. 30.) 개정 사항의 경우, 그 내역을 검토하여 장래 증원되는 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sup>29)</sup>

〈표 Ⅲ-4〉 기존/목표 교육인원 및 교육시간

구분	2027(목표)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교육인원	12,480	6,070	6,199	4,589	1,890	4,784	3,420
교육시간	29,600	10,760	11,744	9,200	13,480	15,360	15,080

주: 교육시간은 주 5일, 일 8시간 교육을 가정하여 산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교육과정 세부 내용(18-23년)」; 「증축사업 완료 후 교육일정 개편안」

〈표 Ⅲ-5〉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추정

구분	정원	2027년 기준		강의실
		교수	행정	
기준 정원 <sup>1)</sup>	64인	30인	34인	6실
2018~2023년(2020년 제외) <sup>2)</sup> 교육시간 대한 평균 비율 적용	138인 (+74인)	62인 (+32인)	76인 (+42인)	14실 (+8실)

주: 1) 기준 정원은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21호, 2023. 2. 6.)을 기준으로 함

2)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제외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Ⅲ-6〉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비교

구분	기존 (2023년 2월 기준)	2027년 기준		
		연수원 증원 계획	연구진 추정	
정원	교수 정원	30명	75명(+45) <sup>1)</sup>	62명(+32)
	행정 정원	34명	70명(+36)	76명(+42)
	정원	64명	145명	138명

29) 2023년 5월,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를 경제범죄수사학과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학과로 분리, 교수요원 7명 증원, 교육지원계를 생활지원계로 명칭 변경함

〈표 Ⅲ-6〉의 계속

구분		기존 (2023년 2월 기준)	2027년 기준	
			연수원 증원 계획	연구진 추정
강의실	일반강의실	6실	16실(+10)	14실(+8)
	컴퓨터강의실	6실	16실(+10)	14실(+8) <sup>2)</sup>
	강의실	14실	34실	30실

주: 1) 연수원 증원 계획의 교수요원 45명은 연구교수 2명을 포함함

2) 컴퓨터강의실은 연수원 증원 계획 상 일반강의실과의 비율(1:1)을 준용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라. 부지계획의 적절성 검토

본 사업은 현 경찰청 부지에 강의동과 생활관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강의동은 유희부지 내 증축되는 반면, 생활관동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생활관동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분을 고려한 주차장 신설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위해 11,828㎡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이 이루어졌다.<sup>30)</sup> 따라서 신설되는 주차장의 부지는 국유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하면 부지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2〕 주차장 신설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30) 아산시고시 제2022-223호(2022. 6. 25.), 「아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연구진 현장답사 당시 연수원 부지 내 유희공간에 생활관을 증축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연수원은 강의동이 증축되는 유희부지를 제외하면 추가 활용할 부지가 구역 내에는 없으며 기존 제1생활관 및 제2생활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주차장 부지활용을 계획하였고, 본 계획에 지하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업비 절감을 목표로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사업부지 내 생활관동 증축에 활용할 유희부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접하여 위치한 국유지 부지를 신설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기존 사업 구역 내 위치한 주차장 부지 일부를 생활관동 증축으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안의 부지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설 주차장 부지는 아산시 고시 제2022-223호(2022. 6. 25.)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 외에 일부 경찰인재개발원 재산관리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원은 인재개발원 재산관리 토지 사용과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등에 대해 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주차장 부지 활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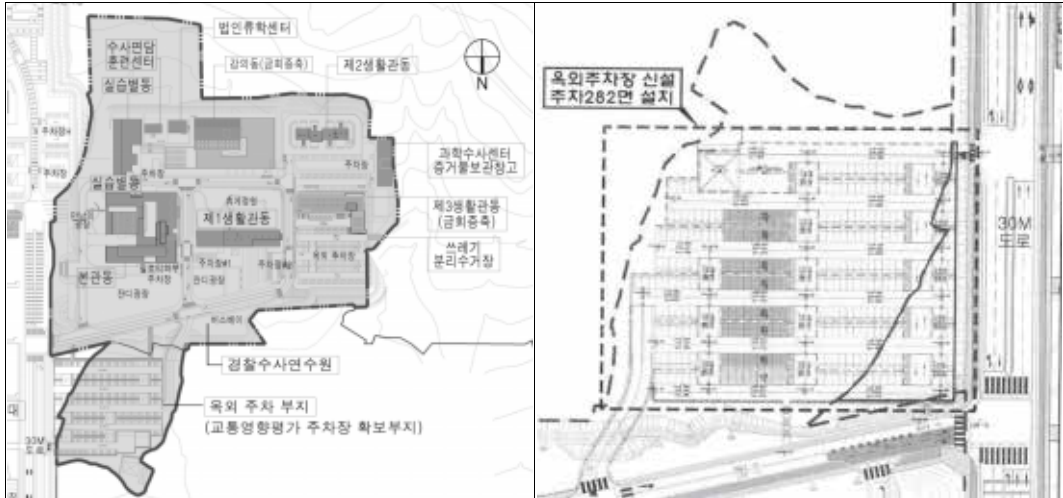
교통영향평가 3차 변경심의 결과, 계획주차대수는 552대로 법정주차대수 180대의 306.7%이므로 추가적인 지하주차장 설치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달청 검토안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삭제하여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변경심의 결과, 시설 증축에 따른 계획주차대수 증가분은 217대로, 연수원은 여기에 제3생활관 증축에 따른 기존 주차대수 감소분 59대를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 276대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sup>32)</sup>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주차장의 감소분을 고려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사전검토 보완 전후로는 계획주차대수가 조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주차대수는 558대에서 552대로 6대 감소되어 조정 정도가 미미하고 중간설계 도면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재 계획된 주차장 부지면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간설계 시 진입도로 등을 추가 고려하여 주차대수 282대에 대해 산정한 주차장 조성부지 10,027㎡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설치되어

31)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4527(2022. 7. 6.),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사업 관련 진·출입로 사용 등 협조 회신」;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5460(2022. 7. 1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사업 관련 진·출입로 사용 등 협조 회신」

32)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시 증축시설로는 본 사업(강의동 12,648.56㎡, 생활관동 5,556.05㎡) 외 과학수사센터증거물 보관 및 교육센터(675㎡), 쓰레기분리수거장(63.23㎡), 법인류학센터(214.20㎡), 수사면담훈련센터(140.91㎡)를 포함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전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증축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부지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I-3] 신설 주차장 부지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심의의결보완서」;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 사업에 따른 경찰교육원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 마. 기존 시설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본 사업에서 증축하는 강의동에는 기존 본관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강의실, 실습실, 저장보관실 등이 포함되므로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실의 경우 향후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기존 본관동 시설로는 대응 불가하여 동일(유사)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습실의 경우, 앞서 <표 I-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연수원은 확대 조성이 필요한 실습실에 대해 설명해 온 바 있으며 그중 압수수색 실습실과 모의범죄수사 실습실, 사이버수사 및 사이버 분야 실습실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기하였다. 압수수색 실습실은 연수원의 모든 교육에 포함되어 교육인원 증가와 함께 요구되며, 모의범죄수사 실습실의 경우 기존 실습실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의범죄 실습이 이론식 강의 위주로 진행되어온바 그간 진행하지 못했던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사이버분야 실습은 모의범죄 실습과 마찬가지로 기존 실습실이 부족하여 이론교육으로 대체해 왔으며, 기술발달에

따라 사이버 분야 교육 수요가 급증하여 사이버 분야 실습실(사이버수사 실습실, 사이버추적 실습실, 현장복제 실습실, 네트워크 분석실 등)의 증축이 요구된다고 한다. 본 재검토에서는 연수원에서 각 실습실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과 교육훈련 시설로서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의 한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을 준용하고 실습실 구성 계획을 수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저장보관실의 경우, 교육기록의 보존과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라 저작료 지급 확인용으로 교재 보관이 필수적이며 교재, 도서 등이 정기적으로 생산되어 지속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창고는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에 따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증가에 따라 필요에 의해 증축하는 시설로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당과 관련하여 설계지침(Space Program)은 본 사업의 증축 강의동에 계획된 수사자료도서관(661㎡)을 기존 본관동 식당에 설치하고 증축 강의동에 통합 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중간설계안과 중간설계 산출근거에 대한 연수원의 제출 자료, 조달청 검토안을 살펴보면 증축 강의동 내 수사자료도서관이 삭제되고 식당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도 기존 식당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합 식당의 면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 바.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 1) 요구안의 사업개요

본 사업의 당초안은 주무부처의 설계지침(Space Program)에 따라 연면적 18,266㎡로 계획되었으나 중간설계 단계에서 면적이 지침면적 대비 101.7%로 증가하여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당시 규모 증가를 요구하였다.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에서는 당초안과 조달청 검토 요구안의 시설별 면적을 검토한 결과, 중간설계 면적이 지침면적(당초안과 동일) 대비 다소 적정한 수준이나 일부 실의 과다·과소 설계 및 강의동의 공용면적이 다소 과다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침면적(당초안과 동일)을 수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초안과 조달청 검토 요구안, 조정 후의 사업규모는 <표 III-7>과 같으며, 이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에도 당초안의 면적과 동일한 18,266㎡로 제시되었다.

〈표 III-7〉 사업규모 개요

(단위: m<sup>2</sup>)

구분	현행안[A] (당초)	순증		조정 후 [A+B]	비고	
		조달청 검토요구	조정[B]			
규모 (연면적)	강의동	12,614	12,782(증168)	-	12,614	-
	생활관동	5,652	5,802(증150)	-	5,652	-
	계	18,266	18,584(증318)	-	18,266	지침면적 수용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 2) 요구안의 시설구성

본 재검토에서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의 '요구서 요구안'과 '중간설계안', '조달청 검토안'의 시설계획을 검토하고, 중간설계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기준으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조정요구서(18,266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중심으로 시설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각 시설의 면적은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요구안의 시설구성(강의동)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수사지휘· 심사학과	수사정보분석실습실	90.00	144.71	90.00	144.71	
	소계	90.00	144.71	90.00	144.71	
반부패경제 범죄수사학과	의료범죄수사센터	-	106.54	90.00	106.54	
	사기범죄연구센터	90.00	89.88	90.00	89.88	
	소계	90.00	196.42	180.00	196.42	
전용 공간	강력범죄 수사학과	압수수색실습실-1	361.40	60.39	361.40	60.39
		압수수색실습실-2		61.95		61.95
		압수수색실습실-3 (차량압수수색)		64.94		64.94
		압수수색실습실-4		57.27		57.27
		압수수색실습실-5		78.28		78.28
		압수수색실습실-6 (원룸압수수색)		43.57		43.57
	모의범죄수사실습실-1	162.00	54.66	162.00	54.66	
			모의범죄수사실습실-2		141.80	141.80

〈표 III-8〉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강력범죄 수사학과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실습실 (압수수색 실습실2실)	51.60	100.05	51.60	100.05		
	소계	575.00	662.91	575.00	662.91		
전용 공간	여성청소년 범죄수사학과	아동/장애인 피해자조사실(강의실)	144.00	98.32	83.70	98.32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1		11.60		11.60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2		11.04		11.04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3		10.97		10.97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4		10.97		10.97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5		11.96		11.96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6		11.38		11.38	
		아동/장애인 피해자 모니터실-1		8.48		8.48	
		아동/장애인 피해자 모니터실-2		8.35		8.35	
		아동/장애인 피해자 모니터실-3		8.75		8.75	
		피의자신문실습강의실		97.49		83.70	97.49
		피의자신문조사실-1		11.96		144.00	11.96
		피의자신문조사실-2		11.38			11.38
		피의자신문조사실-3		10.86			10.86
		피의자신문조사실-4		10.81			10.81
		피의자신문조사실-5		11.91			11.91
		피의자신문조사실-6		11.33			11.33
		피의자신문모니터실-1		8.75			8.75
		피의자신문모니터실-2		8.63			8.63
	피의자신문모니터실-3	8.71	8.71				
	소계	288.00	383.65	455.40	383.65		

〈표 III-8〉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전용 공간	사이버 수사학과	네트워크분석실	90.00	497.08	90.00	497.08	
		사이버수사실습실-1	180.00		270.00		270.00
		사이버수사실습실-2					
		사이버수사실습실-3					
		데이터실	-	31.93	31.93	31.93	
		참여실	-	19.34	19.34	19.34	
		월드실	-	14.91	14.91	14.91	
		접수실&회의실	-	58.50	58.50	58.50	
		증거물 보관실	-	90.05	90.05	90.05	
		현장복제실습실	-	85.78	85.78	85.78	
		사이버추적실습실-1	90.00	59.88	59.88	59.88	
		사이버추적실습실-2		59.70	59.70	59.70	
		소계	360.00	917.17	780.09	917.17	
	과학수사학과	미세증거분석실습실	90.00	88.87	90.00	88.87	
		소계	90.00	88.87	90.00	88.87	
교수실	지상 3층	교수연구실-1,10 [2개소]	807.00	70.88	1,419.20	70.88	
	지상 4~7층	교수연구실-2~9 [8개소]		255.12		255.12	
	지상 3층	교수연구실-1,10 [2개소]		234.64		234.64	
	지상 4~6층	교수연구실-2~9 [8개소]		858.56		858.56	
	지상 3층	교수세미나실	-	46.94	300.00	46.94	
	지상 4~6층	교수세미나실	239.97	239.97			
	지상 7층	교수세미나실-1	80.00	80.00			
		교수세미나실-2	67.51	67.51			
소계	807.00	1,853.62	1,719.20	1,853.62			

〈표 III-8〉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전용 공간	강의실	지상 3층	컴퓨터강의실-1	900.00	68.34	900.00	68.34		
			컴퓨터강의실-2,3 [2개소]		125.96		125.96		
			컴퓨터강의실-4		63.37		63.37		
			컴퓨터강의실-5		64.22		64.22		
		지상 4층	컴퓨터강의실-1		96.49		96.49		
			컴퓨터강의실-2~4 [3개소]		233.88		233.88		
			컴퓨터강의실-5		92.16		92.16		
		지상 5층	일반강의실-1		1,841.10		96.49	837.00	96.49
			일반강의실-2~4 [3개소]				233.88		233.88
			일반강의실-5	92.16		92.16			
		지상 6층	일반강의실-1	92.16		92.16			
			일반강의실-2	80.13		80.13			
			일반강의실-3	75.85		75.85			
			일반강의실-4	64.34		64.34			
	일반강의실-5		92.21	92.21					
	다목적실-1(무도장, 요가공간 등 다목적강당)		450.00	357.58		450.00	357.58		
	다목적실-2			64.80	64.80				
	소계			3,191.10	1,994.02	2,187.00	1,994.02		
	사무실	사무실A		312.40	238.03	315.00	238.03		
		사무실B		380.60	220.55	378.00	220.55		
소계		693.00	458.58	693.00	458.58				
식당	식당(통합설치)		350.50	462.13	462.13	462.13			
	주방		73.00	311.05	311.05	311.05			
	조리원휴게실(남)		33.00	13.04	13.04	37.30			
	조리원휴게실(여)			37.30	37.30	13.04			
	소계		456.50	823.52	823.52	823.52			

〈표 III-8〉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편의시설	지상 3층	휴게공간	-	38.50	241.03	38.50	
	지상 4층	휴게공간	-	67.51		67.51	
	지상 5층	휴게공간	-	67.51		67.51	
	지상 6층	휴게공간	-	67.51		67.51	
	직원휴게실(남/여)		54.00	83.31	83.31	83.31	
	휴게실(외래강사)		66.70	83.13	66.70	83.13	
	소계		120.70	407.47	391.04	407.47	
전용 공간	지하 1층	교재창고	147.00	51.88	51.88	51.88	
		총무, 교무, 재정관리, 교육지원창고-1		103.22	103.22	103.22	
	지상 1층	총무, 교무, 재정관리, 교육지원창고-2					
	지상 2층	총무, 교무, 재정관리, 교육지원창고-3		245.50	245.50	245.50	
		학과별창고-1					
	지상 4~6층	학과별창고-2		147.00	400.60	400.60	400.60
		학과별창고-3					
		학과별창고-4					
	지상 7층	학과별창고-5		147.00	400.60	400.60	400.60
		학과별창고-6					
학과별창고-7							
학과별창고-8							
지상 7층	학과별창고-9	147.00	400.60	400.60	400.60		
	학과별창고-10						
소계		147.00	400.60	400.60	400.60		
중간설계 삭제시설 <sup>2)</sup>	디지털포렌식실습실		132.00	-	-	-	
	디지털증거분석실		132.00	-	-	-	
	사이버현장수사실습실 1~8(모의상황재현)(4개소)		216.00	-	-	-	
	수사자료연구도서관		661.00	-	-	-	
	분임강의실		375.00	-	-	-	
	의무실		48.00	-	-	-	
	소계		1,564.00	-	-	-	
합계			8,472.30	8,331.54	8,384.85	8,331.54	

〈표 III-8〉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공용 공간	설비시설	기계실	450.00	179.99	450.00	179.99	
		전기실	175.00	116.90	175.00	116.90	
		발전기실	38.00	44.78	38.00	44.78	
		방재실	-	14.99	14.99	14.99	
		ESS실	-	20.50	20.50	20.50	
		소계	663.00	377.16	698.49	377.16	
	기타 공용시설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2,621.60	3,947.22	3,332.62	3,779.70	
		EPS/TPS, A/V	-	126.00	126.00	126.00	
		소계	2,261.60	4,073.22	3,458.62	3,905.70	
	중간설계 삭제시설 <sup>2)</sup>	지하주차장	857.50	-	-	-	
		소계	857.50	-	-	-	
	합계			4,142.10	4,450.38	4,157.11	4,282.86
	총계			12,614.40	12,781.92	12,541.96	12,614.40

주: 1) 중간설계를 기준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요구서 요구안 및 조달청 검토안의 실별 수는 표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를 수 있음  
 2) 요구서 요구안(당초안과 동일)에 포함되었으나 중간설계 시 삭제된 경우 '삭제시설'로 표기됨  
 3) 조정 요구안은 중간설계안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의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 요구안(강의동 12,614m<sup>2</sup>)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III-9〉 요구안의 시설구성(생활관동)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전용 공간	생활관	지상2층 (38실)	생활실-1, 33(2개소)	32.50	32.50	32.50
			생활실-2~12, 15~32, 34~37(33개소)	521.40	521.40	521.40
		생활실-13(1개소)	15.92	15.92	15.92	
		생활실-14, 38(2개소)	32.56	32.56	32.56	
	지상3~5층 (44실×3개 층 →132실)	생활실-1, 39(6개소)	97.50	97.50	97.50	
		생활실-2~12, 15~31, 33~38, 40~43 (114개소)	1,801.20	1,801.20	1,801.20	
			3,302.50			

〈표 III-9〉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생활관	지상3~5층 (44실×3개층 →132실)	생활실-13(3개소)		47.76	47.76	47.76	
		생활실-14, 44(6개소)		97.68	97.68	97.68	
		생활실32(3개소)		49.02	49.02	49.02	
	지상6층 (32실)	생활실-1(1개소)		16.25	16.25	16.25	
		생활실-2~12, 15~31(28개소)		442.26	442.26	442.26	
		생활실-13(1개소)		15.92	15.92	15.92	
		생활실-14(1개소)		16.28	16.28	16.28	
		생활실-32(1개소)		16.34	16.34	16.34	
		장애인생활실-1~2(2개소)		65.20	65.20	65.20	
		장애인생활실-3(1개소)		33.14	33.14	33.14	
소계			3,302.50	3,300.93	3,300.93	3,300.93	
전용 공간	매점, 커피숍		-	69.82	69.82	69.82	
	지상2층	세탁실	22.75	12.83	13.84	12.83	
			22.75	12.83	16.02	12.83	
			22.75	12.83	16.02	12.83	
			22.75	12.83	16.02	12.83	
	지상2층	린넨실	3.30	7.93	3.30	7.93	
			3.30	7.93	3.30	7.93	
			3.30	7.93	3.30	7.93	
			3.30	7.93	3.30	7.93	
	지상6층	세탁, 린넨실	-	8.29	3.30	8.29	
	편의시설	휴게실, 정보검색실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21.10	16.32	
			-	20.91	21.10	20.91	
	체력단련실			105.70	71.53	71.53	71.53
	소계			294.30	318.87	325.25	318.87
	관리시설	당직실(지원계, 학생계)		66.10	49.76	49.76	49.76
		용역원실		30.00	15.04	9.00	15.04
사무실		-	36.36	21.00	36.36		
소계			96.10	101.16	79.76	101.16	

〈표 III-9〉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sup>1)</sup>		요구서 요구안[A]	요구안 조정 요청		조정요구안 <sup>3)</sup> [D]	
			중간설계안 [B]	조달청 검토안(C)		
전용 공간	중간설계 삭제시설 <sup>2)</sup>	목욕탕(남)	150.00	-	-	-
		목욕탕(여)	37.50	-	-	-
		탈의실	114.50	-	-	-
		소계	302.00	-	-	-
	합계	3,994.90	3,720.96	3,705.94	3,720.96	
공용 공간	설비시설	기계실	290.00	278.71	278.71	278.71
		전기실	124.00	77.34	77.34	77.34
		소계	414.00	356.05	356.05	356.05
	기타 공용시설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1,242.80	1,675.10	1,675.10	1,524.47
		EPS/TPS, A/V	-	50.22	50.22	50.22
		소계	1,242.80	1,725.32	1,725.32	1,574.69
	합계	1,656.80	2,081.37	2,081.37	1,930.74	
총계	5,651.70	5,802.33	5,787.31	5,651.70		
총계(강의동 + 생활관동)	18,266.10	18,584.25	18,329.27	18,266.10		

주: 1) 중간설계를 기준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요구서 요구안 및 조달청 검토안의 실별 수는 표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를 수 있음  
 2) 요구서 요구안(당초안과 동일)에 포함되었으나 중간설계 시 삭제된 경우 '삭제시설'로 표기됨  
 3) 조정 요구안은 중간설계안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의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 요구안(생활관동 5,652m<sup>2</sup>)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의 세부 공간 구성은 요구서상의 요구안(당초안과 동일) 대비 일부 시설이 추가 또는 삭제되는 등 차이가 있다. 연수원이 요구서의 연면적(18,266.10m<sup>2</sup>)을 유지하되 세부 공간의 구성과 실별 면적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추고자 요청하였으므로 본 재검토에서는 사업 규모 검토 시 중간설계안의 설계 면적(실별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이때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 합계는 총 18,584.25m<sup>2</sup>로 당초안의 연면적인 18,266.10m<sup>2</sup>와 상이하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중간설계안의 연면적을 18,266.10m<sup>2</sup>로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표 Ⅲ-10〉 요구안의 시설구성 종합

(단위: m<sup>2</sup>)

구분		요구서 요구안	조정 요구안 <sup>3)</sup>
강의동		12,614.40	12,614.40
전용공간	수사지휘·심사학과	90.00	144.71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90.00	196.42
	강력범죄수사학과	575.00	662.91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288.00	383.65
	사이버수사학과	360.00	917.17
	과학수사학과	90.00	88.87
	교수실	807.00	1,853.62
	강의실	3,191.10	1,994.02
	사무실	693.00	458.58
	식당	456.50	823.52
	편의시설	120.70	407.47
	저장보관실	147.00	400.60
	삭제시설 <sup>2)</sup>	1,564.00	-
	소계	8,472.30	8,331.54
공용공간	설비시설	663.00	377.16
	기타 공용시설	2,621.60	3,905.70
	삭제시설 <sup>2)</sup>	857.50	-
	소계	4,142.10	4,282.86
생활관동		5,651.70	5,651.70
전용공간	생활관	3,302.50	3,300.93
	편의시설	294.30	318.87
	관리시설	96.10	101.16
	삭제시설 <sup>2)</sup>	302.00	-
	소계	3,994.90	3,720.96
공용공간	설비시설	414.00	356.05
	기타 공용시설	1,242.80	1,574.69
	소계	1,656.80	1,930.74
합계(강의동+생활관동)		18,266.10	18,266.10

주: 1) 중간설계를 기준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요구서 요구안 및 조달청 검토안의 실별 수는 표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를 수 있음

2) 요구서 요구안(당초안과 동일)에 포함되었으나 중간설계 시 삭제된 경우 '삭제시설'로 표기됨

3) 조정 요구안은 중간설계안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의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 요구안(18,266m<sup>2</sup>)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세부 시설 규모의 검토 기준

#### 가) 시설 규모 검토 기준

본 재검토에서는 경찰수사연수원 강의동 및 생활관동의 적정 시설규모 산정을 위하여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등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과 연수원의 제출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조달청 검토 결과에서 당초안과 같은 지침면적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의 요구안으로 제출받은바, 연수원의 설계지침(Space Program)을 검토하고자 한다. 설계지침의 강의동 설계(안) 규모는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2,614.4㎡, 생활관동 설계(안)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651.6㎡로 <표 III-11>, <표 III-12>과 같다.<sup>33)</sup>

규모 검토는 앞서 설명한대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아니라 중간설계 설계면적을 조정 한 '조정 요구안', 연구진이 재검토한 면적인 '대안'으로 구분한다.<sup>34)</sup> 본 사업이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다는 점과 수사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설계안과 조달청 검토서, 연수원의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며, 기존 연수원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인원과 면적을 재산 출하여 구성하였다.

<표 III-11> 설계지침(강의동)

총별	시설명	소요면적(㎡)	산출근거
공용시설/지하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2,621.6	전용면적의 30%
	(지하시설) 기계실·전기실 등	663	기계실 10,000㎡이하: 450㎡ 전기실 10,000㎡이하: 175㎡ 발전기 10,000㎡이하: 38㎡
	(지하시설) 지하주차장	857.5	25(차량수)×34.3㎡
	면적 계	4,142.1	야외주차장 별도 확보시 지하주차장은 공용 시설 및 기계실 등으로 변경 필요

33) 경찰수사연수원은 생활관동 신축부지 고저차로 인해 혼용 오류가 발생했으나, 접지면적 평균값으로 층수를 판단 하여 지상 6층으로 정정 제시함

34) 연수원의 요청 사항(요구서의 연면적을 유지하되 실별 구성 및 면적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이 요구서 (18,266㎡)와 동일한 '조정 요구안'을 설정함

〈표 III-11〉의 계속

층별	시설명	소요면적(㎡)	산출근거
1층	사무실	380.6	7㎡×54명 (당직실 포함)
	문서고	49	693㎡×7%
	강당	450	515명
	휴게실(외래강사 등)	66.7	9.9㎡+(292-24인)×0.22㎡
	여경, 여직원 휴게실	54	17~24인 기준 54㎡
	의무실(신규)	48	22㎡+(642-100인)×0.048㎡
	모의범죄수사실습실	162	54㎡×3실(모의상황재현)
	면적 계	1,210.3	
2층	교수연구실	161.4	26.9㎡×6명
	교수연구실	53.8	26.9㎡×2명
	일반강의실(30인실)	493.2	83.7㎡×6실
	압수수색 실습실	413	25.8㎡×16실 ※ 2개실은 마약범죄실습실 설치
	첨단범죄연구센터	90	3㎡×30인
	면적 계	1,211.4	
3층	교수연구실	161.4	26.9㎡×6명
	일반강의실(30인실)	493.2	83.7㎡×6실
	수사면담센터 (피의자신문실습실)	144	12㎡×12호실 (영상녹화실 8, 모니터실 4) ※ 실습강의실은 일반강의실을 조정하여 설치
	수사면담센터 (아동장애인피해자 조사실습실)	144	▲ 12㎡×9호실 (영상녹화실 6, 모니터실 3) ▲ 실습강의실36㎡×1실 ※ 실습강의실은 일반강의실을 조정하여 설치
	추적수사기법실습실	90	3㎡×30인
	수사정보분석실습실	90	3㎡×30인
	미세증거분석실습실	90	3㎡×30인
	면적 계	1,212.6	
4층	교수연구실	134.5	26.9㎡×5명
	일반강의실(30인실)	325.8	83.7㎡×4실-(9)
	사이버현장수사실습실	216	54㎡×4실(모의상황재현)
	사이버수사실습실	180	3㎡×30인×2실
	네트워크 분석실	90	3㎡×30인
	디지털포렌식 실습실	132	66㎡×2실
	디지털증거분석실 (클린룸, 쉴드룸)	132	66㎡×2실
	면적 계	1,210.3	

〈표 III-11〉의 계속

층별	시설명	소요면적(㎡)	산출근거
5층	교수연구실	134.5	26.9㎡×5명
	일반강의실(30인실)	167.4	83.7㎡×2실
	컴퓨터강의실	900	3㎡×30인×6실 3㎡×60인×2실
	면적 계	1,201.9	
6층	사무실	312.4	7㎡×45명
	교수연구실	161.4	26.9㎡×6명
	일반강의실(30인실)	361.5	83.7㎡×4.3실
	분임 강의실	375	3㎡×5인×25실
	면적 계	1,210.3	
7층	식당	219	292명×1/2×1.5㎡
	주방	73	219㎡×1.3
	주식창고	76.7	219㎡×35%
	부식창고	54.8	219㎡×25%
	조리원휴게실 등	33	10명×3.3㎡
	수사자료연구도서관 (자료실(2), 정보실(2), 열람실(2), 화장실(2) 등)	661	※ 수사자료도서관을 기존 강의동 식당에 설 치하고 기존 강의동 식당은 증축 강의동 식당에 통합 설치
	비품창고	49	693㎡×7%
	2. 소모품창고	49	693㎡×7%
	면적 계	1,215.5	
합계		12,614.4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표 III-12〉 설계지침(생활관동)

층별	시설명	소요면적(㎡)	산출근거	
공용시설/지하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1,242.8	전용면적의 30%	
	(지하시설) 기계실·전기실 등	290	5,000㎡이하: 290㎡	※증축 강의동에 기계실·전기실 설치에 따라 해당면적을 층별 정보검색실 등으로 조성
		124	5,000㎡이하: 124㎡	
	면적 계	1,656.8		

〈표 III-12〉의 계속

층별	시설명	소요면적(㎡)	산출근거	
1층	1당직실(지원계)	33.05	10㎡×2명 ※ 1생활관 지원계 사무실 기준 (탈의실 조정)	
	2당직실(학생계)	33.05	※ 1생활관 지원계 사무실 기준 (탈의실 조정)	
	목욕탕(남)	150	100명×1.5㎡	
	목욕탕(여)	37.5	25명×1.5㎡	
	체육실	105.7	75㎡+(250-58인) ×0.16㎡	※ 강의동에서 생활관 동으로 이동 설치
	탈의실	114.5	(250-42인) ×0.55㎡	
	미화관리 사무실	30	10명×3㎡	
	매점, 창고		※ 체육(탈의)실 및 로비 면적 조정 추가 설치	
	면적 계	503.8		
2층	생활실	825.625	13.21㎡×62.5실 ※ 1인실(4평) 기준	
	휴게실	21.1	1생활관 각 층 중앙 휴게실 기준	
	세탁실	22.75	(250명×0.364㎡) / 4 ※ 1생활관 각 층 세탁실 기준	
	린넨실(비품창고)	3.3	1생활관 각 층 린넨실 기준	
	정보검색실		※ 체육(탈의)실 및 로비 면적 조정 추가 설치	
	면적 계	872.775		
3층	생활실	825.625	13.21㎡×62.5실 ※ 1인실(4평) 기준	
	휴게실	21.1	1생활관 각 층 중앙 휴게실 기준	
	세탁실	22.75	(250명×0.364㎡) / 4 ※ 1생활관 각 층 세탁실 기준	
	린넨실(비품창고)	3.3	1생활관 각 층 린넨실 기준	
	정보검색실		※ 체육(탈의)실 및 로비 면적 조정 추가 설치	
	면적 계	872.775		
4층	생활실	825.625	13.21㎡×62.5실 ※ 1인실(4평) 기준	
	휴게실	21.1	1생활관 각 층 중앙 휴게실 기준	
	세탁실	22.75	(250명×0.364㎡) / 4 ※ 1생활관 각 층 세탁실 기준	
	린넨실(비품창고)	3.3	1생활관 각 층 린넨실 기준	
	정보검색실		※ 체육(탈의)실 및 로비 면적 조정 추가 설치	
	면적 계	872.775		

〈표 III-12〉의 계속

층별	시설명	소요면적(㎡)	산출근거
5층	생활실	825.625	13.21㎡×62.5실 ※ 1인실(4평) 기준
	휴게실	21.1	1생활관 각 층 중앙 휴게실 기준
	세탁실	22.75	(250명×0.364㎡) / 4 ※ 1생활관 각 층 세탁실 기준
	린넨실(비품창고)	3.3	1생활관 각 층 린넨실 기준
	정보검색실		※ 체육(탈의)실 및 로비 면적 조정 추가 설치
	면적 계	872.775	
합계		5,651.6	※ 체육실, 탈의실 강의동에서 생활관동으로 이동 설치 (266.2㎡+5,385.4㎡=5,651.6㎡)

〈참고사항〉

▲ 사무실, 휴게실, 세탁실 등 기존 제1생활관 시설 기준으로 면적 조정

▲ 생활실은 수사연수원 자체 위원회에서 1인1실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 사유 발생시 2인 1실 구성 등 재검토 후 최종 결정

※ 현재 수사연수원 제1생활관 2인실, 면적 25㎡(7.57평) → 1인실 기준 약 면적 13.21㎡(4평)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에 제시된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과 지방청·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은 〈표 III-13〉, 〈표 III-14〉과 같다.

〈표 III-13〉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계급별	구분	면적(㎡)	비고
치안총감	• 청장실	165	집무실·부속실
치안정감 (치안감)	• 청의 차장실	105	집무실·부속실
	• 시·도청장실	120	집무실·부속실
	• 기관장실	105	집무실·부속실
치안감	• 국장실	85	집무실·부속실
	• 시·도청의 차장실	85	집무실·부속실
경무관	• 기관장실	82	집무실·부속실
	• 국장실, 관리관실	82	집무실·부속실
	• 시·도청의 차장·부장실	82	집무실·부속실
총경	• 경찰서장실	80	집무실·부속실
	• 특수기관장실	66	집무실·부속실
	• 과장실	44	집무실
경정	• 특수기관장실	30	집무실
	• 과장실	30	집무실

〈표 III-13〉의 계속

계급별	구분	면적(㎡)	비고
경감	• 지구대장·파출소장실	20	집무실
	• 특수기관장실	20	집무실
	• 일반직원	7	집무면적
경위급 이하	• 파출소장실	20	집무면적
	• 일반직원	7	집무면적

주: 경찰업무의 특수성 고려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표 III-14〉 지방청·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회의실)	• 대강당	• 200명 미만: 350㎡ • 200~400명 미만: 400㎡ • 400~600명 미만: 45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7㎡ 가산	• 경찰시설 표준화기준 • 지방청, 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 대회의실	• 직원 100명 미만: 66㎡ • 100~200명 미만: 99㎡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	• 법무부시설기준(법무부)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 소회의실	• 20명 미만: 50㎡	• 경찰시설 표준화기준 • 국, 관, 과별 설치 ※ 112상황실은 미설치
	• 업무자료실	• 서고: 장서수/200 • 열람실: 서고×20%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최소 기준 33㎡(10평) 일괄 적용
업무시설 (수사, 형사, 생활안전, 여청, 외사, 교통, 경무, 청문감사, 정보, 보안, 경비)	• 행정, 관리업무부서	• 근무자 수×7㎡	• 행정업무 근무자 적용
	• 수사, 조사공간	• 근무자 수×10㎡	• 수사·조사부서 근무자 적용 ※ 순수 수사업무 담당자만 해당, 수사지원팀 등 행정업무 수행 근무자는 7㎡ 적용
	• 과학수사(신설)	• 근무자 수×7㎡	• 과학수사팀 근무자 적용 ※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경찰서만 적용
	• 진술녹화실	• 11㎡	•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기준 ※ 경찰청 내부 지침(2015년) • 수사관 10명당 1실 ※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조사, 청문 근무자 해당
	• 진술녹화모니터실	• 10㎡	•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기준 ※ 경찰청 내부 지침(2015년) • 수사관 10명당 1실
	• 거짓말탐지검사실	• 20㎡(4×5)	• 지방청만 해당

〈표 III-1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수사, 형사, 생활안전, 여청, 외사, 교통, 경무, 청문감사, 정보, 보안, 경비)	• 거짓말탐지관찰실	• 10㎡	• 지방청만 해당
	• 사고조사	• 미적용	• 수사부서 근무 인원에 편입
	• 디지털증거분석실	• 분석관수×11.5㎡	• 지방청만 해당 ※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 표준설계 지침(2018)
	•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 피의자(피해자)×3㎡	• 지방청 수사인력에 따라 검토 • 경찰서 수사(경제·지능), 형사(강력·당직), 여청과, 교통과 등 6개 부서 ※ 수사, 형사과는 업무특성상 별도 구분 필요
업무시설 (청문감사)	• 민원실	• 100명 미만: 120㎡ • 100~200명 미만: 160㎡ • 200~300명 미만: 220㎡ • 300~400명 미만: 280㎡ • 4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 가산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종합전산조회실, 수사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 다목적상담 부수 면적 민원실에 추가
업무시설 (경비)	• 상황실(지령실)	• 100명 미만 79㎡ • 100~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25㎡ • 400~600명 미만 175㎡ • 600명 이상은 1명 증가마다 2.5㎡ 가산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업무시설 (유치장)	• 일반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	• 수용인원 고려 개별 검토·적용 ※ 경찰청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시범운영 확대 및 인력재배치 계획'에 의거 현재 일시 사용치 않는 유치장은 일반유치장 적용
	• 광역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	
	• 초광역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업무시설 (생활안전)	• 112신고센터	• 1실: 327㎡	• 지방청만 해당
업무시설 (경무)	• 상무관 (체력단련장)	• 100명 미만 75㎡ • 100~200명 미만 200㎡ • 200~400명 미만 300㎡ • 400~600명 미만 4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5㎡ 가산	• 지방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 사격장	• 200명 미만(6개사로): 366㎡ • 200~400명 미만(8개사로): 464㎡ • 400~600명 미만(10개사로): 570㎡	• 지방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표 III-1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경무)	• 정보화교육장	• 교육인원×3.0㎡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1급서 교육인원 25명 2급서 교육인원 17명 3급서 교육인원 10명
편의시설	• 직원휴게실	• 9.9㎡+(정원-24인)×0.22㎡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 여경, 여직원 휴게실	• 1~4인기준 15㎡ • 5~8인기준 21㎡ • 9~16인기준 36㎡ • 17~24인기준 54㎡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여)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 체육실	• 75㎡+(정원-100)×0.16㎡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편의시설	• 관복보관 및 탈의실	• 직원 수×0.55㎡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 목욕실(남, 여)	• 인원×1.5㎡ • 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50㎡ • 400~600명 미만 2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5㎡ 가산	•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 종교단체 • 협의회	• 1실: 40㎡ • 1실: 33㎡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급지구분 없음) ※ 종교단체: 경목, 경승, 경신실(3개소) 협의회: 경우회, 청소년육성회(2개소)
정보통신	• 통신장비실	• 장비 1조×5㎡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급지구분없이 40㎡ 적용)
	• 전산장비실	• 전산기 수×5㎡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급지구분없이 50㎡ 적용)
	•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전산기 수×5㎡	• 지방청 적용
	• 교환실	• 미적용	• 미운영 시설로 제외
	• 보안실	• 1실: 33㎡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1실 33㎡)
저장, 보관실	• 문서고	• 순사무실 면적×7%	• 청사시설 기준(행안부)
	• 비품창고	• 순사무실 면적×7%	
	• 소모품창고	• 순사무실 면적×7%	
	• 피복창고	• 직원 수×0.17㎡	• 지방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표 III-1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저장, 보관실	• 수사 영치물 압수보관실 수사자료(송치)실 증거분석(보관)실	• 1실: 20㎡ • 1실: 34㎡ • 1실: 83㎡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수사 과학수사 통합 ※ 전산조회실, 저장, 보관실 항목에서 삭제 업무시설인 민원실 면적에 포함
	• 경무 문서보관실, 지출서류 보관실, 물품보관실	• 1실: 28㎡ • 1실: 32㎡ • 1실: 60㎡	
	• 생활안전 즉결유실물보관실 압수물보관실 자료, 장비보관실	• 1실: 15㎡ • 1실: 52㎡ • 1실: 60㎡	
	• 정보 정보기록보관실	• 1실: 74㎡	
	•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 1실: 145㎡	• 피복보관실 포함
	• 무기 탄약고	• 200명 미만 40㎡ • 200~400명 미만 50㎡ • 400~600명 미만 6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0.5㎡ 가산	• 지방청, 경찰서 평균
	• 탄약고 민간소유총포보관실 화학보관실	• 1실: 20㎡ • 1실: 30㎡ • 1실: 30㎡	
	관리시설	• 정문안내소	• 15㎡
• 당직실		• 지방청(당직자수×10㎡) •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 160㎡ - 2급서 : 120㎡ - 3급서 : 80㎡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급지별 구분
• 차고		• 미적용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 지하주차장		• 차량 수×34.3㎡	• 램프 및 통로면적 포함하여 34.3㎡로 조정
• 운전원대기실		• 미적용	• 미운영 시설로 제외
• 청사관리용역사무실		• 지방청(용역원 수×3㎡) •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 18㎡ - 2급서 : 12㎡ - 3급서 : 10㎡	• 지방청 개별검토 • 경찰서 급지별 구분

〈표 III-1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부대시설 (식당)	• 식당	• 직원수×1/2×1.5㎡	• 경찰시설기준 • 법무시설기준
	• 주방면적	• 식당면적×1/3	
	• 주식창고	• 식당면적×35%	
	• 부식창고	• 식당면적×25%	
	• 조리원사위장	• 인원×1.7㎡(탈의실 포함)	
	• 조리원휴게실	• 인원×3.3㎡	
		• 200명 미만 250㎡ • 200~400명 미만 310㎡ • 400~600명 미만 575㎡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13㎡ 가산	• 인원대비 식당면적 적용시
시설관리	• 기계실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 이하: 70㎡ 3,000㎡ 이하: 200㎡ 5,000㎡ 이하: 290㎡ 10,000㎡ 이하: 450㎡ 15,000㎡ 이하: 600㎡ 20,000㎡ 이하: 770㎡	• 경찰시설 기준(설비공학 편람) ※전용면적:기계·전기·발전실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
	• 전기실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 이하: 40㎡ 2,000㎡ 이하: 65㎡ 3,000㎡ 이하: 87㎡ 4,000㎡ 이하: 106㎡ 5,000㎡ 이하: 124㎡ 10,000㎡ 이하: 175㎡ 20,000㎡ 이하: 280㎡ 30,000㎡ 이하: 380㎡	• 경찰시설 기준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법무시설기준)
	• 발전기	• 전용면적: 기준면적 2,500㎡ 이하: 19㎡ 5,000㎡ 이하: 24㎡ 10,000㎡ 이하: 38㎡ 15,000㎡ 이하: 54㎡ 30,000㎡ 이하: 70㎡	• 경찰시설 기준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법무시설기준)
기타시설	• 공용면적	• 전용면적의 30% 추가 (복도, 계단, 화장실, 공조실 등)	• 건축계획 각론

주: 조달청 검토서의 첨부자료로서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과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첨부 3-1]지방청·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

나) 경찰수사연수원 인원 기준(정원)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제시한 기준 정원은 <표 III-15>와 같이 경찰관 54명, 일반직 10명으로 총 정원은 64명이다. 해당 정원은 교수인원을 포함하며 정원 외 인원인 임기제와 주무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III-15>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단위: 명)

총계	경찰관									일반직	주무관
	소개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64	54	1	2	3	16	22	8	1	1	10	22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전문(230206 훈령 21호)」

경찰수사연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정원뿐만 아니라 사용인원(교육인원)을 고려해야 하며 본 사업은 장래 교육주기 단축을 목표로 하는 시설 증축사업이므로 기준 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교육주기 단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수원은 최종적으로 기존 2과 4계 7학과 체제를 3과 11계 9학과로 개편하고 교수 정원 45명(연구교수 2명 포함), 행정 정원 3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45명을 계획하여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을 준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재검토 과정 중 증원 계획이 번복되고 시설 증축 계획 간 연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여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을 산출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과거 교육시간에 대한 기존 정원의 비율을 목표 교육시간에 적용한 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2027년 기준 증원 계획 비교

(단위: 명)

구분	기준	연수원 증원 계획	연구진 추정 <sup>1)</sup>
교수 정원	30	+45 <sup>2)</sup>	+32
행정 정원	34	+36	+42
정원	64	145	138

주: 1) 자세한 산출과정은 p. 129 참고

2) 연수원 증원 계획의 교수요원 45명은 연구교수 2명을 포함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또한 연수원은 교육주기 단축을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원 외 인원인 주무관을 현원 22명으로부터 18명 증원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주무관은 기존 용역(미화, 조경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으로, 연수원 증축 시 관리면적이 약 2배 증가하므로 청사 관리를 위해 증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원 외 인원이긴 하나 현재 창고 등 임시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과 대기 장소가 협소하여 소속감 고취 및 근태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주무관의 별도 사무실 및 휴게실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주무관의 기존 사무실 및 휴게실 확보 현황과 증축 계획은 <표 III-17>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III-17〉 주무관 증원 및 시설 증축 계획

구분	현원	기존 시설		증원 계획	증축 시설	
		사무실	휴게실		사무실	휴게실
시설	8명	기관실 사용	없음	+8명	8명 기준	16명 기준
미화	8명	없음	세탁실 옆 창고 사용	+8명	16명 기준	16명 기준
통신	3명	전산실 사용	없음	+2명	증축 불필요	5명 기준
조경	3명	없음	창고 옆 창고 사용	-	3명 기준	3명 기준
총계	22명	-	-	+18명	-	-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사무실 A, B 사용인원 80인 관련」; 「강의동 사무실 규모 관련」; 「증축 관련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증원 요청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 경찰수사연수원 현 시설 규모

본 사업은 경찰수사연수원의 강의동과 생활관동을 증축하는 시설로 기존 연수원 시설 중 본관동 및 생활관동의 기능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III-18〉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단위: m<sup>2</sup>)

건물명	층수		연면적	비고
	지하	지상		
본관동	1	4	10,248.43	식당, 강의실, 실습실, 교수실 등
제1생활관	-	7	7,412.08	2인실 198실, 4인실 10실
제2생활관	-	3	1,398.83	1인실 20실, 3인실 3실
합계	-	-	19,059.34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기존 시설」; 「기 제출자료 재확인」을 바탕으로 재작성

#### 4) 세부 시설 규모의 적절성 검토

##### 가) 강의동

경찰수사연수원은 본 재검토 과정 중 세부 공간의 구성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의 요구안이 아니라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추고자 요청하면서 각 실습실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왔다. 이러한 연수원의 제출자료와 더불어 수사 교육훈련 시설로서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재검토에서는 검토의 한계로 연수원의 실습실 구성 계획을 수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에 당초안에서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중간설계안과 조달청 검토안에서 추가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의료범죄수사센터를 반영하였으며,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에 대해 요구서와 중간설계안, 조달청 검토안, 연수원의 제출자료(수요기관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수사정보분석 실습실, 의료범죄수사센터, 사기범죄연구센터의 경우 설계지침 및 조달청 검토안 면적을 준용하였으며, 압수수색 실습실과 모의범죄수사 실습실,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 실습실은 연수원의 제출자료(수요기관의 요구사항)와 설계지침을 확인하여 이를 준용하였다.

〈표 III-19〉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

학과	실습시설명	기존 실습시설 기준	비고
수사지휘·심사학과	수사정보분석실습실	신규 시설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의료/사기범죄수사센터	신규 시설	
강력범죄 수사학과	압수수색실습실	시설 확대	
	모의범죄수사실습실	시설 확대	
	마약전시·범죄수사실습실	시설 확대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기존시설」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III-20〉 수사지휘·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수사지휘· 심사학과	수사정보분석실습실	144.71	3m <sup>2</sup> ×30인	90.00	-54.71
	소계	144.71	-	90.00	-54.71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학과	의료범죄수사센터	106.54	3m <sup>2</sup> ×30인	90.00	-16.54
	사기범죄연구센터	89.88	3m <sup>2</sup> ×30인	90.00	0.12
	소계	196.42	-	180.00	-16.42
강력범죄 수사학과	압수수색실습실 (차량압수수색, 원룸압수수색 등)	366.40	25.8m <sup>2</sup> ×14실	361.20	-5.20
	모의범죄수사실습실	196.46	54m <sup>2</sup> ×3실	162.00	-34.46
	마약전시/마약범죄수사 실습실	100.05	25.8m <sup>2</sup> ×2실+ 마약전시공간 50m <sup>2</sup> (1실)	101.60	1.55
	소계	662.91	-	624.80	-38.11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강의동 12,614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의 경우, 강의실과 조사실, 모니터실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지침과 중간설계안, 조달청 검토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간설계 및 조달청 검토안의 실 구성 계획을 준용하였으며, 조사실과 모니터실은 각각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진술녹화실(11m<sup>2</sup>)과 진술녹화모니터실(10m<sup>2</sup>) 면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강의실은 설계지침에서 일반 강의실을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연수원의 제출자료에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일반 강의실과 같은 면적을 적용하였다.

〈표 III-21〉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

학과	실습시설명	기존 실습시설 기준	비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아동/장애인피해자 조사실습실	시설 확대	강의실 + 진술녹화실 + 모니터실
	피의자신문조사실	시설 확대	강의실 + 진술녹화실 + 모니터실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기존시설」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III-22〉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학과	아동/장애인 피해자조사실(강의실)	98.32	3m <sup>2</sup> ×30인 (강의실)	90.00	-8.32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실습실	67.92	11m <sup>2</sup> ×6실	66.00	-1.92
	아동/장애인 피해자 모니터실	25.58	10m <sup>2</sup> ×3실	30.00	4.42
	피의자신문실습강의실	97.49	3m <sup>2</sup> ×30인 (강의실)	90.00	-7.49
	피의자신문조사실	68.25	11m <sup>2</sup> ×6실	66.00	-2.25
	피의자신문모니터실	26.09	10m <sup>2</sup> ×3실	30.00	3.91
	소계	383.65	-	372.00	-11.65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강의동 12,614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이버수사학과 및 과학수사학과와 디지털증거분석 실습실과 현장복제 실습실, 사이버추적 실습실은 상기한 의료범죄수사센터와 마찬가지로 당초안에서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중간 설계안과 조달청 검토안에서 추가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 실습실의 경우, 데이터실, 참여실, 쉼드실, 접수실&회의실, 증거물 보관실로 구성된다. 이 중 데이터실은 경찰대학교 수사정보분석 실습실의 규격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제시되어 중간설계 및 조달청 검토안의 면적을 준용하였다. 접수실&회의실은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에서 접수실만의 고정면적을 최대 20m<sup>2</sup>(대형)로 제시하고 있으나 회의실의 면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연수원의 제출자료를 확인하여 소회의실 면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나머지 참여실, 쉼드실, 증거물 보관실에 대해서는 조달청 검토 시 중간설계 면적을 준용하여 참여실 19.34m<sup>2</sup>, 쉼드실 14.91m<sup>2</sup>, 증거물 보관실 90.05m<sup>2</sup>로 제시하였으나, 본 재검토에서는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디지털증거분석실 규모 중 시설별 고정면적(대형)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밖에 네트워크분석실과 미세증거분석실, 사이버수사 실습실, 사이버추적 실습실은 중간설계 및 조달청 검토안을 준용하였다.

〈표 III-23〉 사이버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실습실

학과	실습시설명	기존 실습시설 기준	비고
사이버수사학과	사이버분야 실습실	신규 시설	네트워크분석실 + 현장복제실습실 + 사이버추적실습실
	사이버수사 실습실	신규 시설	
	디지털증거분석실습실	신규 시설	데이터실(1), 참여실(1), 쉘드실(1), 접수&회의실(1), 증거물보관실(1)
과학수사학과	미세증거분석실습실	시설 확대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경찰수사연수원 기존시설」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III-24〉 사이버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sup>1)</sup>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사이버수사 학과	네트워크분석실	497.08	3m <sup>2</sup> ×30인	90.00	-137.08
	사이버수사실습실		3m <sup>2</sup> ×30인×3실	270.00	
	데이터실	31.93	조달청 검토안 준용	31.93	-
	참여실	19.34	디지털증거분석실	20.00	0.66
	쉘드실	14.91		15.00	0.09
	접수실&회의실	58.50	소회의실(20명 미만)	50.00	-8.50
	증거물 보관실 <sup>2)</sup>	90.05	디지털증거분석실	22.00	-68.05
	현장복제실습실	85.78	조달청 검토안 준용	85.78	-
	사이버추적실습실	119.58		59.88	-
				59.70	-
소계	917.17	-	704.29	-212.88	
과학수사 학과	미세증거분석실습실	88.87	3m <sup>2</sup> ×30인	90.00	1.13
	소계	88.87	-	90.00	1.13

주: 1)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강의동 12,614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2) 중간설계 시 증거물 보관실의 기준인원은 40인이었으나 강의동 실별 사용인원 확인 요청에 대해 연수원은 기준인원을 10인으로 제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수연구실에 대해 연수원은 수요기관 요구사항으로 일반교수실(26.9m<sup>2</sup>)과 특임교수실(35.4m<sup>2</sup>)을 구분하여 면적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 대학교에

서 25㎡ 수준으로 배정하고 있고 두 교수실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 대학교 기준을 상회하는 일반교수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1실 기준 26.9㎡를 적용하였다.

한편 설계지침은 교수연구실을 30실로 산출하였으나 중간설계에서는 50실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연수원은 연 교육인원 2.14배 증가를 위하여 교수요원 39명 증원이 요구되며, 현재 시설 부족으로 창고 등을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교수 9명, 연구교수제 운영을 위한 교수 2명을 포함하여 총 50실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sup>35)36)</sup>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교육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sup>37)</sup> 연수원의 2027년 교육계획 추진을 위해 교수 32명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창고를 교수연구실로 사용하는 있는 9명과 연구교수 2명을 포함하여 총 43명을 기준으로 대안을 산정하였다.

교수세미나실은 당초안에서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중간설계안에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의해 추가되어 본 재검토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조달청 검토안에서는 이를 6실로 제시하였으나, 교수연구실의 기준인원을 고려하여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소회의실 기준(20명 미만)으로 3개실을 산정하였다.

강의실의 경우, 설계지침상의 컴퓨터강의실 및 분임강의실뿐만 아니라 상기한 일부 실습실에서도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정보화 교육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본 재검토에서는 일반강의실과 컴퓨터강의실에 동일하게 정보화 교육장 기준을 적용하였다. 실 개수는 교수연구실과 마찬가지로 교육계획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다목적실은 교육생 규모를 고려할 때 설계지침과 조달청 검토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대강당(400~600명 미만) 면적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사무실은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일반직원 사무실 면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무실 기준인원의 경우, 설계지침 및 조달청 검토안에서는 99명을 기준으로 하였으

35) 연수원은 연말 현원을 기준으로 차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말 현원 기준으로 교수 34명이 연간 6,070명, 연인원 5만 6,425명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이후 연간 1만 2,480명, 연인원 12만 325명 교육을 위해서는 73명의 교수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함

36) 연수원은 8명의 교수가 기존 본관동 창고를 교수실로 사용하고 1명의 교수가 연수원 부지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의 증거물보관센터 사무실을 교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함

37) 자세한 산출과정은 p. 129 참고

나, 연수원은 장래 증원 계획과 더불어 정원 외 인원인 주무관에 대한 증원 계획 등을 제기하며 총 80명으로 제시하였다. 증원 계획에 따른 행정 정원 37명과 현재 사무실이 부족한 본 사업 TF팀 3명, 주무관 40명(증원 18명 포함)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제출한 증원 계획에서는 행정 정원을 36명 증원할 것으로 제시하는 등 증원 계획을 번복하였다.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강의실과 마찬가지로 교육계획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2027년 교육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요원은 42명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인원인 주무관 40명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청사관리용역사무실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표 III-25〉 교수실, 강의실, 사무실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교수연구실(지상 3~7층)	1,419.20	26.9m <sup>2</sup> ×43실	1,156.70	-262.50
교수세미나실(지상 3~7층)	434.42	50m <sup>2</sup> ×3실	150.00	-284.42
소계	1,853.62	-	1,306.70	-546.92
컴퓨터강의실(지상 3~4층)	744.42	3m <sup>2</sup> ×30인×8실	720.00	-24.42
일반강의실(지상 5~6층)	827.22	3m <sup>2</sup> ×30인×8실	720.00	-107.22
다목적실(무도장, 요가공간 등)	422.38	400~600명 미만 450m <sup>2</sup>	450.00	27.62
소계	1,994.02	-	1,890.00	-104.02
사무실A	238.03	40인×3m <sup>2</sup>	120.00	-118.03
사무실B	220.55	42인×7m <sup>2</sup>	294.00	73.45
소계	458.58	-	414.00	-44.58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강의동 12,614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식당 및 주방의 경우, 설계지침(Space Program)에서 수사자료도서관(661m<sup>2</sup>)을 기존 본 관동 식당에 설치하고 증축 강의동에 통합 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으며, 기존 식당의 사용인원을 170명, 통합 운영 시 총 사용인원을 462명(292명 증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원은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정정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존 식당 면적을 298.9m<sup>2</sup>, 사용인원을 400명(직원 100명, 교육생 300명)으로 제시하였다. 본 사업을 통한 추가 사용인원은 292명으로 제시(직원 87명, 교육생 205명)하였는데, 이는

최종 제출한 증원 계획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앞서 추정한 2027년 정원 138명과 연수원에서 제시한 예상 첨두 교육인원 510명을 포함한 총 648명을 반영하고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에서 주방, 창고, 매점을 포함한 면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리원 휴게실은 조리원 인원에 대한 연수원의 제출자료를 준용하였으며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에 따른 조리원 휴게실 및 샤워장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층별 휴게실은 당초안에서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중간설계안과 조달청 검토안에서 추가된 시설로, 연수원은 이용인원을 505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산출근거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본 재검토에서는 연수원을 통해 확인한 2027년 예상 첨두 교육인원 510명에서 현재 교육계획의 첨두인원 300명을 제외하여 교육생 210명을 적용하였다.<sup>39)</sup>

직원휴게실의 경우, 앞서 연구진이 추정한 행정정원을 적용하였으며, 더하여 여성 직원에 대한 연수원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외래강사 휴게실은 층별 휴게실과 마찬가지로 제시된 기준인원이나 시설 기능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본관동의 외래교수실 면적을 반영하였다.

저장보관실의 경우, 운영조직인 총무, 교무, 재정관리, 교육지원 창고는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되 교재창고와 학과별 창고의 경우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용하였다. 다만 앞서 교수연구실 규모 검토 시 기존 시설 부족으로 인한 창고 사용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기존 본관동 내 추가 확보된 창고 면적 107.99㎡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무실 규모 검토 시 전체 주무관의 휴게실 면적을 반영하여 기존에 일부 주무관(미화, 조경)의 휴게실로 사용하던 창고도 추가 확보되나, 해당 창고는 본래 용도였던 세탁실 침구류 보관창고와 배차실로 운용 예정이라고 제시되어 증축 창고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38) 연수원은 2023년 2월 기준 정원으로부터 2027년까지 교수 45명, 행정 36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145명으로 최종 제시함

39) 연수원은 현재 교육계획은 일 10개 과정, 목표 교육계획은 일 17개 과정, 과정 당 교육인원 30명으로 가정하여 일시점 첨두인원을 각각 현재 300명, 목표 510명으로 제시함

〈표 III-26〉 식당·편의시설·저장보관실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식당	식당(통합설치)	462.13	648인 기준, 400~600명 미만 575m <sup>2</sup> +10명마다 13m <sup>2</sup> 가산	627.00	-146.18
	주방	311.05			
	조리원 휴게실(남)	37.30	3.3m <sup>2</sup> ×4인+ 1.7m <sup>2</sup> ×4인	20.00	-17.30
	조리원 휴게실(여)	13.04	3.3m <sup>2</sup> ×10인+ 1.7m <sup>2</sup> ×10인	50.00	36.96
	소계	823.52	-	697.00	-126.52
편의시설	휴게공간 (지상 3~6층)	241.03	9.9m <sup>2</sup> +(210~24인)×0.22m <sup>2</sup>	50.82	-190.21
	직원휴게실(남/여)	83.31	9.9m <sup>2</sup> +(42~24인)×0.22m <sup>2</sup> + 17~24인 기준 54m <sup>2</sup>	67.86	-15.45
	휴게실(외래강사)	83.13	기존 본관동 외래교수실 면적 반영	26.96	-56.17
	소계	407.47	-	145.64	-261.83
저장 보관실	교재창고(지하 1층)	51.88	54m <sup>2</sup> ×1개소	54.00	2.12
	총무, 교무, 재정관리, 교육지원 창고 (지하 1~지상 2층)	103.22	사무실 순면적×7%×3실 (문서고, 비품창고, 소모품창고)	86.94	-16.28
	학과별창고(지상 2~7층)	245.50	18m <sup>2</sup> ×8개소 - 107.99m <sup>2</sup>	36.01	-209.49
	소계	400.60	-	176.95	-223.65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강의동 12,614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제작됨

공용공간 설비시설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설계지침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용면적 산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지침과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은 전용면적의 3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한 「아산시 청사 관리 운영 조례」[별표 1]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는 공유면적을 직무면적, 부속공간면적, 설비관계면적 합이 30~40%로 제시하고 있다.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서는 전용면적의 30.9%를 적용하였으며 중간설계안에서는 47.4% 수준으로 다소 과하게 반영하여 조달청 검토안은 총사업비 조정요

구서와 같이 39.7%를 반영하였다. 본 재검토에서는 수사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로서 위급 상황 시 대피 인원이 밀집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의 40%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타 공용시설의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의 40%를 적용하였으며, 방재실과 ESS실, EPS/TPS, A/V는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을 준용하였다.

〈표 III-27〉 강의동 공용공간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설비시설	기계실	179.99	10,000m <sup>2</sup> 이하: 450m <sup>2</sup>	450.00	270.01
	전기실	116.90	10,000m <sup>2</sup> 이하: 175m <sup>2</sup>	175.00	58.10
	발전기실	44.78	10,000m <sup>2</sup> 이하: 38m <sup>2</sup>	38.00	-6.78
	방재실	14.99	-	-	-14.99
	ESS실	20.50	-	-	-20.50
	소계	377.16	-	663.00	285.84
기타 공용시설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3,779.70	전용면적×40%	2,676.55	-1,103.14
	EPS/TPS, A/V	126.00	-	126.00	-
	소계	3,905.70	-	2,802.55	-1,103.14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은 요구서(강의동 12,614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제작됨

#### 나) 생활관동

생활실은 일반생활실과 장애인생활실로 구분되며, 일반생활실의 면적기준은 중간설계안 15.85m<sup>2</sup>, 조달청 검토안 15.80~16.34m<sup>2</sup>로 확인된다.<sup>40)</sup> 연수원에서 제공한 유사사례 5건의 관련 자료 중 이화여자대학교 E 하우스의 2인1실 면적 기준인 16.08m<sup>2</sup>가 민간 시설이긴 하나 1인 1실 기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16.74m<sup>2</sup>)의 면적과도 유사하여 적정면적이 라고 판단하였다.<sup>41)</sup> 장애인생활실은 계획설계 자료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40) 연수원은 중간설계 시 산출근거로 일반 생활실 면적 기준을 15.80m<sup>2</sup>(1인실)로 제시하였으나, 중간설계안에 적용된 1인실 평균 면적은 15.85m<sup>2</sup>로 확인됨

41) 유사사례 5건은 이화여자대학교 E 하우스(2인1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1인1실, 2인2실), 숭실대학교 생활관(1인1실, 2인1실)임

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일법 시행규칙 검토를 통해 산정한 면적 기준 27.39㎡를 적용하였다.

생활실 기준인원의 경우, 연수원을 통해 확인한 2027년 예상 첨부 교육인원 510명에서 현재 교육계획의 첨부인원 300명을 제외하여 교육생 21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sup>42)</sup> 대안에서 증가된 생활실 5개실은 중간설계 도면 확인 결과 생활관동 6층에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8〉 생활실 규모검토

(단위: ㎡)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일반 생활실(지상 2~6층)	3,202.59	16.08㎡ × 207실	3,328.56	125.97
장애인생활실	98.34	27.39㎡ × 3실	82.17	-16.17
소계	3,300.93		3,410.73	109.80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은 요구서(생활관동 5,652㎡)와 동일하게 조정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편의시설은 중간설계안, 조달청 검토안을 종합 검토하여 연수원에서 제시한 소요면적을 준용하되 체력단련실은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대안의 생활실 기준인원과 연계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매점 및 커피숍은 기존 본관동에 이미 운영 중이며 생활관동 내 휴게공간이 충분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에서 삭제하였다.<sup>43)</sup>

관리시설 중 당직실의 경우, 연수원에서 제시한 당직실 근무인원에 따라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용역원실 및 사무실은 연수원에서 제시한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조달청 검토안을 준용하였다.

42) 연수원은 현재 교육계획은 일 10개 과정, 목표 교육계획은 일 17개 과정, 과정 당 교육인원 30명으로 가정하여 일시점 첨부인원을 각각 현재 300명, 목표 510명으로 제시함

43) 설계지침에서 매점, 창고를 체육(탈의)실 및 로비 면적을 조정하여 추가 설치하도록 적시하였음에도 매점 및 커피숍은 계획설계에 반영되지 않음

〈표 III-29〉 생활관동 편의시설·관리시설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sup>1)</sup>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편의시설	매점, 커피숍	69.82	삭제	-	-69.82
	세탁실	12.83	0.364×173실	62.97	11.65
		12.83			
		12.83			
		12.83			
	린넨실	7.93	3.3m <sup>2</sup> ×5실	13.20	-18.52
		7.93			
		7.93			
		7.93			
	세탁, 린넨실 <sup>2)</sup>	8.29	(0.364×37)+3.3m <sup>2</sup>	16.77	8.48
	휴게실, 정보검색실 <sup>2)</sup>	16.32	21.1m <sup>2</sup> ×5실	84.40	19.31
		16.32			
		16.32			
16.32					
20.91		21.10			
체력단련실	71.53	75m <sup>2</sup> +(210-100)×0.16m <sup>2</sup>	92.60	21.07	
소계	318.87	-	291.04	-27.83	
관리시설	당직실	49.76	10m <sup>2</sup> ×3인	30.00	-19.76
	용역원실	15.04	3m <sup>2</sup> ×3인	9.00	-6.04
	사무실	36.36	7m <sup>2</sup> ×3인	21.00	-15.36
	소계	101.16	-	60.00	-41.16

주: 1)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생활관동 5,652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2) 설계지침은 생활관동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연수원은 생활관동 신축부지 고저차로 인해 혼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접지면적 평균값으로 층수를 판단하여 지상 6층으로 정정 제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제작됨

앞서 강의동과 마찬가지로 공용공간 설비시설의 기계실, 전기실은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기타시설의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의 면적은 전용면적의 40%를 적용하였다. EPS/TPS, A/V는 요구안, 중간설계안, 조달청 검토안을 비교하여 중간설계안 면적을 준용하였다.

〈표 Ⅲ-30〉 생활관동 공용공간 규모검토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산출기준	대안[B]	증감(B-A)
설비시설	기계실	278.71	5,000m <sup>2</sup> 이하: 290m <sup>2</sup>	290.00	11.29
	전기실	77.34	4,000m <sup>2</sup> 이하: 106m <sup>2</sup>	106.00	28.66
	소계	356.05		396.00	39.95
기타 공용시설	코어, 홀, 복도, 화장실 등	1,524.47	전용면적×40%	1,504.71	-19.76
	EPS/TPS, A/V	50.22	-	50.22	-
	소계	1,574.69	-	1,554.93	-19.76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을 요구서(생활관동 5,652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결과

검토 결과, 강의동은 10,156.93m<sup>2</sup>로 요구안 12,614.40m<sup>2</sup> 대비 2,457.46m<sup>2</sup> 감소하였으며, 생활관동은 5,712.70m<sup>2</sup>로 요구안 5,651.70m<sup>2</sup> 대비 61.00m<sup>2</sup>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안의 전체 강의동과 생활관동 합계는 15,869.63m<sup>2</sup>로 요구안의 86.9%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의동에서는 교수실과 기타 공용시설 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생활관동의 경우 생활실의 면적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여 편의시설, 관리 시설, 기타 공용시설의 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면적이 증가하였다.

〈표 Ⅲ-31〉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결과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B]	증감(B-A)
강의동		12,614.40	10,156.93	-2,457.46
전용공간	수사지휘·심사학과	144.71	90.00	-54.71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196.42	180.00	-16.42
	강력범죄수사학과	662.91	624.80	-38.11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383.65	372.00	-11.65
	사이버수사학과	917.17	704.29	-212.88
	과학수사학과	88.87	90.00	1.13
	교수실	1,853.62	1,306.70	-546.92

〈표 III-31〉의 계속

(단위: m<sup>2</sup>)

구분	조정요구안 [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B]	증감(B-A)	
전용공간	강의실	1,994.02	1,890.00	-104.02
	사무실	458.58	414.00	-44.58
	식당	823.52	697.00	-126.52
	편의시설	407.47	145.64	-261.83
	저장보관실	400.60	176.95	-223.65
	소계	8,331.54	6,691.38	-1,640.16
공용공간	설비시설	377.16	663.00	285.84
	기타 공용시설	3,905.70	2,802.55	-1,103.14
	소계	4,282.86	3,465.55	-817.30
<b>생활관동</b>		<b>5,651.70</b>	<b>5,712.70</b>	<b>61.00</b>
전용공간	생활관	3,300.93	3,410.73	109.80
	편의시설	318.87	291.04	-27.83
	관리시설	101.16	60.00	-41.16
	소계	3,720.96	3,761.77	40.81
공용공간	설비시설	356.05	396.00	39.95
	기타 공용시설	1,574.69	1,554.93	-19.76
	소계	1,930.74	1,950.93	20.19
<b>합계(강의동+생활관동)</b>		<b>18,266.10</b>	<b>15,869.63</b>	<b>-2,396.47</b>

주: 규모 검토 시 연수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중간설계안의 설계면적(실별 면적)을 토대로 기타 공용시설 면적을 조절하여 연면적은 요구서(18,266m<sup>2</sup>)와 동일하게 조정된 '조정 요구안'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 IV. 비용 추정

### 1. 비용 추정의 개요

비용 추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에 따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로 구분하였으며, 비용 추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표 IV-1〉 총사업비 추정 절차 및 방법

구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I	사업개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분과 사업비 개요 작성</li> <li>- 용지보상비, 건축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분</li> </ul>
II	시설규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설별로 사업주체가 제시한 요구면적을 검토하고, 각 시설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 검토</li> <li>- 사업주체의 사업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li> </ul>
III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보상비 추정</li> <li>- 시설별 공사비 단가기준 및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공종별 추가 공사비를 항목별로 검토</li> <li>- 설계 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의 산정방식 검토</li> </ul>
IV	총사업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비 항목별 검토</li> <li>- 공사비를 기초로 시설부대경비 산정</li> <li>- 사업주체 제안 사업비와 검토 사업비 비교 검토</li> </ul>

자료: 연구진 작성

본 재검토의 분석 기준연도는 2022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기준단가의 조사시점이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표 IV-2〉와 같은 비용 보정지수를 활용하여 단가를 보정하였다.

〈표 IV-2〉 비용 보정 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12	100.0										
2013	100.1	100.0									
2014	101.5	101.4	100.0								
2015	101.7	101.6	100.2	100.0							
2016	102.0	101.9	100.5	100.3	100.0						
2017	105.5	105.3	103.9	103.7	103.4	100.0					
2018	108.7	108.6	107.1	106.9	106.6	103.1	100.0				
2019	111.7	111.6	110.0	109.8	109.5	105.9	102.7	100.0			
2020	113.0	112.8	111.3	111.1	110.7	107.2	103.9	101.2	100.0		
2021	122.5	122.4	120.7	120.5	120.1	116.2	112.7	109.7	108.4	100.0	
2022	131.9	131.7	129.9	129.7	129.3	125.1	121.3	118.1	116.7	107.6	100.0

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자료는 기준연도 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 투자 항목임

### 가. 요구안의 총사업비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473억 1,200만원, 총사업비 조정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566억 8,100만원으로 수요기관의 증액 요구에 따라 자료 및 산출내역 등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요구안은 조달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기본공사비 84억 700만원, 법령 반영에 따른 2억 1,400만원 증가하여 당초안보다 총 93억 6,900만원 증가한 566억 8,100만원으로 요청되었다.

〈표 IV-3〉 총사업비 요구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	(%)		
총사업비	47,312	9,369	19.8	56,681	
1. 공사비	42,670	8,621	20.2	51,291	물가변동 반영
1-1. 기본공사비	42,670	4,950	11.6	47,620	적정 공사비단가 반영
1-1-1. 물가변동반영	42,670	4,950	11.6	47,620	

〈표 IV-3〉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	(%)		
1-2. 현장여건	-	3,324	-	3,324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반영(8,407백만원) -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 - 법령개정 반영 - 현장여건 반영 - 각종 분담금 반영 법령반영 (214백만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 모니터링
1-2-1. 흙막이공사 반영	-	707	-	707	
1-2-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주차장 신설	-	2,161	-	2,161	
1-2-3. 주차장 신설부지 전신주 간섭에 따른 이설	-	66	-	66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설비 대상사업	-	20	-	20	
1-2-5. 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 대상사업	-	156	-	156	
1-2-6.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이주·모니터링 대상사업	-	214	-	214	
1-3. 법령개정	-	347	-	347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	195	-	195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	124	-	124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	28	-	28	
2. 보상비	-	218	순증	218	
2-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218	-	218	
3. 시설부대경비	4,642	530	11.4	5,172	
3-1. 설계비	2,125	-	-	2,125	
3-2. 감리비	2,419	510	21.1	2,929	지침요율 반영
3-3. 시설부대비	98	20	20.4	118	지침요율 반영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나.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본 재검토에서는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등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과 설계지침(Space Program),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설

면적을 검토하였다. 본 재검토에서 제시하는 시설 면적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 과업 내용인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연면적은 18,266㎡이며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결과도 요구서의 면적을 준용하여 동일한 18,266㎡이다. 비용 추정 시 검토안은 요구서의 규모인 18,266㎡에 대하여 비용을 추정하며, 대안은 앞서 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산정한 15,870㎡를 각각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표 IV-4〉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단위: ㎡)

구분	요구안(A)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검토안		대안	
		면적(B)	증감(B-A)	면적(C)	증감(C-A)
대지면적	88,729	88,729	-	88,729	-
연면적	18,266	18,266	-	15,870	-2,396
강의동	12,614	12,614	-	10,157	-2,457
생활관동	5,652	5,652	-	5,713	61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 2. 총사업비의 추정

### 가. 공사비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르면 설계가 이미 수행된 사업은 주무부처에서 요구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설계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공하는 단가 등을 이용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한다. 본 사업은 중간설계 단계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안과 중간설계 내역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결과를 검토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 1) 기본공사비

본 재검토에서는 ㎡당 공사비용 추정이 가능하도록 조달청의 공사비 정보광장과 나라장터의 자료 중 강의동과 생활관동 부문의 세부분석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조달청 자료 중 연면적과 층수 등 본 사업과의 유사성을 고려해 최근 유사사례 6개를 선정하였으며, 유사사례로 선정된 6곳은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이다.

〈표 IV-5〉 강의동 및 생활관동 단가 기준

구분		발주연도	연면적(㎡)	총공사비(원)	규모
강의동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신축공사	2018	11,892	28,572,753,754	B1/4F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	2022	11,807	34,679,418,175	B1/4F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공사	2022	13,080	39,136,637,000	B1/4F
생활관동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증축공사	2017	5,912	11,214,999,392	B1/4F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2021	6,709	15,911,406,200	B1/4F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	2022	4,084	10,176,637,000	6F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pcae.g2b.go.kr>;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본 재검토에서는 증액 요구된 흠막이 공사비를 별도로 반영하므로 유사사례 중 관련 공사비가 포함된 사례는 해당 공사비를 제외한 후 건축공사비 단가를 추정하였다. 또한 제외 항목에 대하여 직접공사비와 순공사원가의 비율인 원가율을 적용하였다.

선정된 유사사례의 단위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가격기준 시점이 상이하므로 2022년 말로 가격을 연도보정하고 2020년 이전연도 공사비는 제로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제로에너지 5등급 공사비 평균 증가율인 5%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단위공사비는 〈표 IV-6〉과 같이 강의동 2,706천원/㎡, 생활관동 2,283천원/㎡로 산정되었다.

〈표 IV-6〉 단위공사비 산정

구분		㎡당 공사비 (천원)	흠막이제외 공사비 (천원/㎡)	보정 지수 (%)	ZEB증가율 (%)	㎡당 보정 공사비(천원)	
						VAT 포함	VAT 제외
강의동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신축공사	2,403	-	121.3	105	3,060	2,78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	2,937	2,879	-	-	2,879	2,617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공사	2,992	-	-	-	2,992	2,720
평균		2,777	-	-	-	2,977	2,706

〈표 IV-6〉의 계속

구분	㎡당 공사비 (천원)	흙막이제외 공사비 (천원/㎡)	보정 지수 (%)	ZEB증가율 (%)	㎡당 보정 공사비(천원)		
					VAT 포함	VAT 제외	
생활관 동	중앙교육원 기숙사 증축공사	1,897	-	125.1	105	2,492	2,265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2,372	-	107.6	-	2,552	2,320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	2,491	-	-	-	2,492	2,265
평균		2,253	-	-	-	2,512	2,283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pcae.g2b.go.kr>;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요구서상 기본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물가변동 반영'으로, 본 재검토에서 공사비 단가를 재산정하고 검토안과 대안의 각 연면적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470억 4,500만원, 대안은 405억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면적(㎡)	전체	18,266	18,266	15,870
	강의동	12,614	12,614	10,157
	생활관동	5,652	5,652	5,713
단위공사비 (원/㎡)	전체	2,370,027	-	-
	강의동	-	2,706,415	2,706,415
	생활관동	-	2,283,418	2,283,418
1-1. 기본공사비		43,291	47,045	40,533
1-1-1. 물가변동 반영		43,291	47,045	40,533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2) 현장여건

현장여건에 포함되는 항목은 흙막이 공사, 주차장 신설, 전신주 이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이다.

흙막이 공사비는 연수원에서 제공한 원가계산서 내역의 금액에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주차장 신설 및 전신주 이설,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은 연수원에서

제출한 내역서를 검토하여 준용하였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공사비는 제로에너지와 중복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단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사비는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중복되는 비용으로 법령개정 항목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로 산정하였다.

#### 가) 흙막이 공사

연수원에서 제출한 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흙막이 공사비용은 강의동 3억 4,300만원, 생활관동 1억원으로 공사 원가요율 180%를 적용하여 본 재검토에서는 흙막이 공사비용을 7억 9,7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IV-8〉 흙막이 공사비 산정

구분	강의동(원)	생활관동(원)	합계(원)	원가요율(%)	금액(원)
흙막이 공사	343,271,926	100,418,412	443,690,338	180	796,953,722

주: 원가요율 = (흙막이 공사 직접공사비 + 제비율 흙막이공사 직접공사비) × 80%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최종내역서\_토목」

#### 나) 주차장 신설

주차장 조성부지는 중간설계 시 진입도로 등을 추가 고려하여 10,027㎡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 전의 계획주차대수 증가분 223대와 제3생활관 증축에 따른 기존 주차대수 감소분 59대를 합한 총 282대를 기준하여 설계된 면적으로 제시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 계획주차대수 증가분은 217대로 미세 조정되어 신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276대로 확인되나, 조정 정도가 미미하고 중간설계 도면 및 교통영향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부지의 주차장 신설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된 21억 6,100만원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표 IV-9〉 주차장 신설 공사비 산정

(단위: 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 직접공사비	394,065,117	527,845,677	106,388,227	921,910,794
나.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제비율)	122,022,560	426,393,738	32,778,213	687,562,738
다. 도급공사비(가+나)	516,067,677	954,239,415	139,166,440	1,609,473,532
라. 관급자재	551,690,859	-	-	551,690,859
공사비(다+라)	1,067,758,536	954,239,415	139,166,440	2,161,164,391

주: 제비율은 재료비 1.3096, 노무비 1.8078, 경비 1.3081 적용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조달청 검토안에 따른 신설 주차장의 단위공사비는 215,534원/㎡로 이를 다른 주차장 조성 사례의 단위공사비와 비교 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 사례 3건의 평균 단위공사비는 178,427원/㎡로 조달청 검토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가 경사면에 위치하여 주차장 내에 단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단에 옹벽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달청 검토안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표 IV-10〉 신설주차장 단위공사비 산정

구분	신설 주차장 면적(㎡)	공사비(원)	단위공사비(원/㎡)
주차장 단위공사비	10,027	2,161,164,391	215,534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IV-11〉 주차장 조성 사례 단위공사비 산정

구분	기준년도	면적(㎡)	공사비(원)	보정공사비(원)	단위공사비(원/㎡)
금릉동 노외주차장	2022	1,432	299,380,000	272,163,636	190,058
신길동 노외주차장	2022	919	213,290,000	193,900,000	210,990
양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2022	2,000	295,310,000	268,463,636	134,232
평균	-	1,450	269,326,667	244,842,424	178,427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10. 20.

다)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주차장 신설 부지 내 주차공간 전신주 간섭에 따라 전신주 2분의 주차구획 밖으로 이설

이 필요하다.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분담금은 부가세 포함 6,600만원으로 산정되어 이를 검토하여 준용하였다.

〈표 IV-12〉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분담금

(단위: 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 직접공사비	30,831,088	4,591,446	-	35,422,534
나.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제비율)	9,545,305	3,708,970	-	13,254,275
다. 도급공사비(가+나)	40,376,393	8,300,416	-	48,676,809
라. 이설분담금	17,656,760	-	-	17,656,760
공사비(다+라)	58,033,153	8,300,416	-	66,333,569

주: 제비율은 재료비 1.3096, 노무비 1.8078, 경비 1.3081 적용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조달청)」

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계약 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존 건물들에 대한 전력이 4,000kW 이상이므로, 강의동, 제3생활관동 증축으로 인한 계약전력 증가분의 5% 규모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재검토에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제로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2020년 이전 공사비 사례단가에 제로에너지 공사비 증가율 5%를 적용하고 ‘법령개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추가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 별도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비용은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IV-13〉 일반 수준(ZEB 등급 미달) 대비 공사비 증가율

(단위: %)

구분		태양광 공사비 포함시(A)	태양광 공사비 제외시(B)	증감(B-A)
대학교	중부	5.1	4.5	-0.6
	남부	4.9	4.3	-0.6
연구시설	중부	5.6	4.9	-0.7
	남부	5.5	4.9	-0.6
초중고	중부	4.8	4.2	-0.6
	남부	5.1	4.5	-0.6
도서관	중부	6.7	5.9	-0.8
	남부	6.8	6.2	-0.6
업무시설 소형	중부	6.7	5.7	-1.0
	남부	6.5	5.8	-0.7
업무시설 중형	중부	4.8	4.3	-0.5
	남부	5.2	4.6	-0.6
업무시설 대형	중부	5.2	4.0	-1.2
	남부	5.2	4.0	-1.2
평균		5.6	4.8	-0.7

주: 1.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분석 참고서』(한국에너지공단, 2020)에 제시된 시설유형·지역별 공사비를 적용하여 분석함

2. 중부는 서울 남부는 광주 지역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 2021.

#### 마)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연수원에 따르면 주차장부지 환경영향평가(동·식물성조사) 수행 중 법정보호종(맹꽁이) 개체 서식이 발견되어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3년 모니터링’ 혹은 ‘대체부지확보’ 등 조치 계획 이행 후 사업진행(건축허가)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수원에서는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3년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으로 부가세 포함 2억 1,400만원을 공사비 항목으로 예산 증액 신청하게 되었으며, 본 재검토에서는 비용 산정 내역서를 검토하여 준용하였다.

〈표 IV-14〉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비용 산정

구분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127,332,468	59.4	
경비	42,146,368	19.7	
일반관리비	7,626,548	3.6	
이윤	17,710,438	8.3	
소계	194,810,000	90.9	천단위 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19,481,000	9.1	
총계	214,291,000	100.0	만단위 이하 절사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맹꽁이 사업비 증액 설명자료」

바)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요구안 30억 2,200만원 대비 검토안과 대안은 모두 600만원 감소한 30억 1,6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흙막이 공사비는 요구안 대비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차장 신설과 전신주 이설,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은 사업계획안을 준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되었다. 요구안 대비 검토안과 대안의 현장여건 공사비 감소의 주된 원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을 공사비 단가와 ‘법령개정’에 포함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검토되었다.

〈표 IV-15〉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1-2. 현장여건	3,022	3,016	3,016
1-2-1. 흙막이 공사	643	797	797
1-2-2. 주차장 신설	1,965	1,965	1,965
1-2-3. 전신주 이설	60	60	60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18	-	-
1-2-5. 에너지저장장치(ESS)	142	-	-
1-2-6.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195	195	195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3) 법령개정

법령개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는 공사비 단가 사례의 최근연도 기준으로 차이나는 비율만큼 산정하였고,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은 기본공사비 산정 시 공사비 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외벽마감재 불연성능향상 항목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3일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항, 마감재료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성능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단열재 재료변경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으나, 본 재검토에서 반영한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는 법 개정 이후 공사비를 포함하며 세부 내역 및 조감도상에도 화재에 취약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관련 항목에 대한 증액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 및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공사비에 해당 비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22. 1. 4. 일부개정)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해당 비율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2015. 1. 28. 일부개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사비를 추가로 추정하고자 한다. 위 법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의거 사업 인허가 시점인 2024~202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인 34%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IV-16〉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연도	2018	2019	2020	20-21	22-23	24-25	26-27	28-29	30~
공급의무 비율(%)	24	27	30	30	32	34	36	38	4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다만 유사사례의 공사비에는 2020년 이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공사비용 의무화로 제로에너지 공사비와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적용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공사비 단가 최근 사례의 기준연도인 2022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인 32%에 대한 설치비용을 고려해 본 사업의 인허가 시점 연도인 2024~2025년의 의무비율 34%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분 2%에 대해서 추정하고자 한다.

〈표 IV-17〉 신·재생에너지 산정 비율 검토

구분	연도	최근 연도	최근 사례 적용 비율①	2024-2025년 공급비율②	추가 공급비율 (②-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	2022	2022	32%	34%	2%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공사	2022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	2022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2021				
중소기업 총청연수원 신축공사	2018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증축공사	2017				

자료: 연구진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추정 산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021. 4. 16. 일부개정)의 [별표 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표 IV-18〉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식

$$\text{예상 에너지 사용량} = \text{건축 연면적} \times \text{단위 에너지사용량} \times \text{지역계수}$$

주: 건축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19〉 단위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m <sup>2</sup> ·yr)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방송통신시설	490.18
	업무시설	371.66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종교시설	257.49
	의료시설	643.52
	교육연구시설	231.33
	노유자시설	175.58
	수련시설	231.33
	운동시설	235.42
	묘지관련시설	234.99
	관광휴게시설	437.08
	장례식장	234.99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운수시설	374.47
	업무시설	374.47
	숙박시설	526.55
	위락시설	400.3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본 사업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지역은 충남이므로 지역계수는 0.99이고, 단위에너지사용량은 231.33(kWh/m<sup>2</sup>·yr)으로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검토안 3,986,860kWh/yr, 대안 3,634,410kWh/yr으로 산정된다.

〈표 IV-20〉 지역계수

구분	지역계수
충남	0.9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21〉 에너지 사용량 산정

구분	연면적 (㎡)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지역계수	예상에너지사용량 (kWh/yr)	비고
검토안	17,409	231.33	0.99	3,986,860	교육연구시설/충남
대안	15,870	231.33	0.99	3,634,410	

주: 상기 연면적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의 면적이며,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보정계수는 교육연구시설을 적용하고, 지역 계수는 충남 지역을 기준함

자료: 연구진 작성

2024~2025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4%를 적용한 검토안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표 IV-2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의 산식

$$\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frac{\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text{예상에너지 사용량}} \times 100$$

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23〉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산정

구분	예상에너지사용량(kWh/yr)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kWh/yr)
검토안	3,986,860	34	1,355,532
대안	3,634,410	34	1,235,699

자료: 연구진 작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시설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수직밀폐형)과 태양광(고정식)을 각각 50%, 50%씩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고정식)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은 1,358(kWh/kW·yr)이며 보정계수는 0.95이고, 지열에너지(수직밀폐형)의 단위에너지생산량은 864(kWh/kW·yr)이며, 보정계수는 1.26이다. 이를 적용한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IV-2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식

$$\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text{원별 설치규모} \times \text{단위 에너지사용량} \times \text{원별 보정계수}$$

- 주: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임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임  
 3.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25〉 대안별 지열 및 태양광 설치 규모 산정

구분		신·재생에너지량 (kWh/yr)	단위에너지생산량 (kWh/kW·yr)	원별 보정계수	원별 설치규모(kW)
검토안	태양광	677,766	1,358	0.95	525
	지열	677,766	864	1.26	623
	소계	1,355,532	-	-	-
대안	태양광	617,850	1,358	0.95	479
	지열	617,850	864	1.26	568
	소계	1,235,699	-	-	-

주: 지열과 태양광의 설치 비율은 각각 50%, 50%로 산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policy/intro\\_govinstall.do?gubun=B](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policy/intro_govinstall.do?gubun=B), 검색일자: 2023. 7. 1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중복 계상을 피하기 위하여 적용 비율은 2%를 적용한 결과, 검토안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비는 검토안 9,400만원, 대안 8,6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구분		원별 설치규모(kW)	원별 공사 단가 (천원/kW)	공사비(34% 기준) (백만원)	적용공사비(2% 기준) (백만원)
검토안	태양광	525	1,664	874	-
	지열	623	1,174	731	-
	소계	-	-	1,605	94
대안	태양광	479	1,664	797	-
	지열	568	1,174	666	-
	소계	-	-	1,463	86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안내」, 2022.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경찰수사연수원은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완속 10대, 급속 3대(계획대수에서 제외)를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 검토에서 완속 3대, 급속 1대로 검토되어 이에 대해 수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으며,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에는 완속 10대, 급속 1대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준용하였다.<sup>44)</sup>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단가는 나라장터의 최근 사례를 통해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에 대한 1대당 설치금액을 검토하여 시점에 부합하도록 연도를 보정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IV-2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수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급속	완속	합계
전기자동차	1	10	11

주: 연수원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따라 완속 10대, 급속 3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11대(217대×5%=10.9대)를 제시함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조정 관리대상사업 설명자료」

- 44)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IV-2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단가 산정(급속)

(단위: 대, 원)

구분	연도	금액	대수	1대당 금액	부가세 제외	연도보정
2022년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구축공사 관급자재 전기차 급속충전기 제조구매	2022	408,200,000	13	31,400,000	28,545,455	28,545,455
교통약자경용 전기차 충전기 구매 설치(관급자재)	2022	69,300,000	2	34,650,000	31,500,000	31,500,000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전기공사 관급자재(전기차 급속충전기) 구매	2022	73,377,000	4	18,344,250	16,676,591	16,676,591
양천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관급자재 구매	2022	241,560,000	12	20,130,000	18,300,000	18,300,000
도남, 아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차 급속충전기 관급자재 구입	2021	174,240,000	8	21,780,000	19,800,000	20,809,800
외도, 한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차 급속충전기 관급자재 구입	2021	174,240,000	8	21,780,000	19,800,000	20,809,800
일도이동 82-8번지 외 3개소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차 급속충전기 관급자재 구입	2021	283,140,000	13	21,780,000	19,800,000	20,809,800
고흥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전기공사 관급자재(전기차충전기) 제조 구매	2021	26,840,000	1	26,840,000	24,400,000	25,644,400
평균						22,886,981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단가 산정(완속)

(단위: 대, 원)

구분	연도	금액	대수	1대당 금액	부가세 제외	연도보정
영광군 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구매 및 설치	2021	42,000,000	14	3,000,000	2,727,273	2,866,364
교육훈련장비 완속충전기 등 8종 구매	2020	-	2	3,637,000	3,306,364	3,560,954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구매설치	2018	26,330,833	5	5,266,167	4,787,424	5,203,930
평균						3,877,082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앞서 산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수에 각각 급속 충전시설과 완속 충전시설의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급속 충전시설 1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2,300만원, 완속 충전시설 10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3,900만원이 산정되어 총 6,200만원으로 검토되었다.

〈표 IV-3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용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급속	완속	합계
전기자동차	1	10	11
공사비 단가	22,886,981	3,877,082	-
합계	23	39	62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따라서 법령개정 공사비 추정 결과, 검토안은 1억 5,600만원, 대안은 1억 4,8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31〉 법령개정 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1-3. 법령개정	315	156	148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177	94	86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113	-	-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25	62	62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4) 공사비 종합

본 검토에서 추정된 공사비 종합 내역은 〈표 IV-32〉와 같다. 요구안의 공사비 512억 9,100만원 대비 검토안은 39억 4,800만원이 증가한 552억 3,900만원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안은 32억 2,400만원 감소한 480억 6,700만원으로 검토되었다.

검토안과 대안의 주요 변동 원인은 기본공사비의 단가 재산정에서 기인하였으며 그 외에 기본공사비에 포함되어 '현장여건'과 '법령개정'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는 등으로부터 변동이 발생하였다.

〈표 IV-32〉 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1. 공사비	51,291	55,239	3,948	48,067	-3,224
1-1. 기본공사비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1-1. 물가변동 반영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2. 현장여건	3,022	3,016	-6	3,016	-6
1-2-1. 흙막이 공사 반영	643	797	154	797	154
1-2-2. 주차장 신설	1,965	1,965	-	1,965	-
1-2-3. 전신주 이설	60	60	-	60	-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18	-	-18	-	-18
1-2-5. 에너지저장장치(ESS)	142	-	-142	-	-142
1-2-6.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195	195	-	195	-
1-3. 법령개정	315	156	-159	148	-168
1-3-1.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강화	177	94	-83	86	-91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113	-	-113	-	-113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25	62	36	62	36
1-4. 부가가치세	4,663	5,022	359	4,370	-293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보상비

보상비는 「농지법」 제38조(농지부담금)에 의거 주차장 신설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반영이 필요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 지목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단가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5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면적 11,143㎡ 기준 공시지가의 30%인 4억 3,400만원에 「농지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50%)을 적용해 2억 1,7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검토안과 대안의 농지보전부담금은 동일하다.

〈표 IV-33〉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부지

(단위: 백만원)

구분		지목	용도지역	면적(㎡)	2022년 공시지가	면적당 단가	농지보전 부담금	
1	아산시	초사동 438	전	계획관리지역	803	141,300	42,390	34,039,170
2		초사동 438-2	전		864	141,300	42,390	36,624,960
3		초사동 443-2	전		5,230	141,300	42,390	221,699,700
4		초사동 443-3	전		1,846	111,900	33,570	61,970,220
5		초사동 444	전		2,119	111,900	33,570	71,134,830
6		초사동 445	전		281	111,900	33,570	9,433,170
합계				11,143	-	-	434,902,050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총사업비조정 관리대상사업 설명자료」

〈표 IV-3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법적 근거

<p>「농지법」 제38조 제6항 제2호(농지보전부담금)</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3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단위: %)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p>「농지법 시행령」[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p> <p>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p>	50	5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36〉 농지보전부담금 면적당 금액

(단위: ㎡, 원, %, 백만원)

구분	전용면적	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	감면비율	비용
전	11,143	434,902,050	50	217

주: 1. 농지: 전, 답, 과, 유지, 수로, 제방(「농지법」 제2조)

2. 농지보전부담금=전용 농지면적(㎡)×개별공시지가의 30%, 5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적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 다. 시설부대경비

요구안의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재검토에서는 조사비 및 측량비, 설계비, 건설사업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 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설부대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총공사비는 앞서 추정된 공사비(기타 법정경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요율은 다음의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Y = y_1 - \frac{(X - x_2) \times (y_1 - y_2)}{(x_1 - x_2)}$$

$X$  : 당해 금액

$x_1$  : 큰 금액

$x_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 요율

$y_1$  : 작은 금액 요율

$y_2$  : 큰 금액 요율

### 1) 조사 및 측량비

조사 및 측량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르면 각종 측량, 및 조사,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세 검토가 어려울 경우 총공사비(자재비 포함)의 1%를 조사 및 측량비로 산정한다. 다만, 본 검토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이미 중간설계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추가적인 조사 및 측량비의 산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 2) 설계비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심사비, 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등 기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비의 증감 없이 제시되었으나, 요구안의 설계비는 기존 설계를 유지할 경우의 비용으로 전체적인 면적이나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설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재검토에서 설계비를 산정하였다.

설계비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하였다. 먼저 설계비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다음 표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 기준표에 따라 구분하며, 본 시설물은 교육연구시설이므로 2종(보통)을 적용하였다.

제2종(보통) 요율 중 도서의 양은 설계의 난이도 및 공공발주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상급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표 IV-37〉 공종구분

종별	건축물의 종류
2종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li> <li>• 단독주택</li> <li>• 공동주택</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장례식장</li> <li>• <b>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b></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li> </ul> <p>※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락시설</li> <li>• 공장</li> <li>•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제외)</li> <li>•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li> <li>•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li> </ul>
3종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li> <li>• 의료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li>• 운동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li> <li>•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li> <li>•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li> <li>•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li> <li>•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표 IV-38〉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공사비 (억원)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원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억원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원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2,000억원	5.06	4.22	3.38	4.60	3.84	3.07	4.14	3.45	2.76
3,000억원	5.01	4.17	3.34	4.55	3.79	3.03	4.10	3.42	2.73
5,000억원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4],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이며 설계비 요율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각 안별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추정한 결과, 검토안 23억 8천만원, 대안 20억 7,9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39〉 설계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공사비	46,628	49,901	43,381
적용요율(%)	-	4.77	4.79
설계비	1,932	2,380	2,079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검토안 및 대안은 전신주 이설비용,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비용,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연구진 작성

### 3) 감리비

책임감리비는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기성고 산정 및 기성검사,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책임감리 대상(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전면 책임감리비의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감리비 산정 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은 건축공사 공사복잡도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본 사업은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통의 공종 요율을 적용하였다.

〈표 IV-40〉 공종별 건축물의 구분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li> <li>• 축사 등 동물관련 시설</li> <li>•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li> <li>• 기숙사</li> <li>• 근린생활시설</li> <li>•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li> <li>• 종교시설</li> <li>•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li> <li>• <b>학교, 교육원 등 교육 연구시설</b></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교도소 등 교정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li> <li>•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li> <li>•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li> <li>• 박물관 등 전시시설</li> <li>• 의료시설</li> <li>•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운수시설</li> <li>•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li> <li>• 분뇨·쓰레기처리 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중 전망탑</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에 따라 본 사업에 적용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은 다음과 같다.

〈표 IV-4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사비 (억원)	개산요율(%)			비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7.67	8.52	9.37	
200	6.14	6.81	7.50	
300	5.34	5.92	6.52	
400	4.81	5.34	5.88	
500	4.44	4.94	5.43	
700	4.02	4.47	4.91	
1,000	3.66	4.06	4.46	
1,500	3.20	3.56	3.92	
2,000	2.89	3.21	3.53	
3,000	2.54	2.82	3.09	
5,000	2.15	2.39	2.62	

-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함  
 2. 5,000억원 초과외의 경우 개산요율은 단순=12,933.1967×(공사비)<sup>-0.3230</sup>, 보통=14,498.7284×(공사비)<sup>-0.3234</sup>, 복잡=16,006.0775×(공사비)<sup>-0.3236</sup> 적용함  
 3. 위 기준요율은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0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4. 도로건설사업(유지관리 포함)의 경우에는 위 감리비 요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0.

감리비 요율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각 안별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추정한 결과, 검토안 24억 6,700만원, 대안 22억 5,8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42〉 감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
공사비	46,628	49,901	43,381
적용요율(%)	-	4.94	5.20
감리비	2,663	2,467	2,258

-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검토안 및 대안은 전신주 이설비용,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비용,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연구진 작성

#### 4)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각종 수수료 등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이다.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에 제시되어 있는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였다.

요율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각 안별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부대비를 추정한 결과, 검토안 1억 7,200만원, 대안 1억 5천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43〉 시설부대비 요율

(단위: %)

공사비(억원)	시설부대비 요율(%)
100	0.25
200	0.23
300	0.23
500	0.23
1,000	0.23
2,000	0.21
3,000	0.19
5,000	0.17

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표 IV-44〉 시설부대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공사비	46,628	49,901	43,381
적용요율(%)	-	0.23	0.23
시설부대비	107	172	150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검토안 및 대안은 전신주 이설비용,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비용,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연구진 작성

### 5) 시설부대경비 종합

본 재검토에서 추정된 시설부대경비 종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침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결과, 검토안의 시설부대경비는 요구안 51억 7,200만원 대비 3억 5천만원 증가한 55억 2,2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은 요구안 대비 2억 3,600만원 감소한 49억 3,6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검토안과 대안에서 시설부대경비의 주요 변동 원인은 검토안과 대안의 공사비 변동에서 기인하였다.

〈표 IV-45〉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설계비	1,932	2,380	449	2,079	148
감리비	2,663	2,467	-196	2,258	-405
시설부대비	107	172	65	150	42
부가가치세	470	502	32	449	-21
합계	5,172	5,522	350	4,936	-236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라. 예비비

예비비는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물량 계획이 당초 계획처럼 되지 못할 경우 또는 인플레이션 등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발생 등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이다.

다만 현재 본 사업의 단계는 중간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및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회의 자료(수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에 따라 예비비는 제외하였다.

〈표 IV-46〉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구분	요구안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이전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 2021.

###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총사업비 추정 결과, 요구안 대비 검토안은 42억 9,700만원 증가, 대안은 34억 6,1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검토안의 주요 증가 원인은 공사비 단가 증가로 확인되며 대안은 공사비 단가가 증가하

였음에도 공사비와 총사업비가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대안 면적의 감소(2,396㎡)로 판단된다. 본 재검토에 추정된 총사업비의 종합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7〉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총사업비	56,681	60,978	4,297	53,220	-3,461
1. 공사비	51,291	55,239	3,948	48,067	-3,224
1-1. 기본공사비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1-1. 물가변동반영	43,291	47,045	3,754	40,533	-2,758
1-2. 현장여건	3,022	3,016	-6	3,016	-6
1-2-1. 흙막이 공사 반영	643	797	154	797	154
1-2-2. 주차장 신설	1,965	1,965	-	1,965	-
1-2-3. 전신주 아설	60	60	-	60	-
1-2-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18	-	-18	-	-18
1-2-5. 에너지저장장치(ESS)	142	-	-142	-	-142
1-2-6. 맹공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	195	195	-	195	-
1-3. 법령개정	315	156	-159	148	-168
1-3-1. 산·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강화	177	94	-83	86	-91
1-3-2. 외벽마감재 불연성능 향상	113	-	-113	-	-113
1-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25	62	36	62	36
1-4. 부가가치세	4,663	5,022	359	4,370	-293
2. 보상비	218	217	-1	217	-1
3. 시설부대경비	5,172	5,522	350	4,936	-236
3-1. 설계비	1,932	2,380	449	2,079	148
3-2. 감리비	2,663	2,467	-196	2,258	-405
3-3. 시설부대비	107	172	65	150	42
3-4. 부가가치세	470	502	32	449	-21

자료: 연구진 작성

## V. 정책성 분석

### 1. 정책성 분석의 개요

정책성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sup>45)</sup> 정책성 분석의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한다.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① 사업추진여건 ② 정책효과 ③ 별도평가항목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표 V-1>에 정리되어 있다.

<표 V-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li><li>•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li></ul>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자리 효과</li><li>• 생활여건 영향</li><li>• 환경성 평가</li><li>• 안전성 평가(선택)</li><li>• 사업특화항목</li></ul>
사업별도평가항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원조달 위험성</li><li>• 문화재 가치</li></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별표 3],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정책성 분석의 첫 번째 중분류 평가항목인 사업추진여건은 정책 일치성 등의 내부 여건과 지역주민 태도 등의 외부여건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뉜다.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으로 평가한다. 지역주민의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갈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다.

4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7조 제1항

두 번째 평가항목인 정책효과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사업특화항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효과는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활여건 영향은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공동체 복원 영향 등으로 평가 가능하다. 환경성 평가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생태계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성 평가(선택)는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가능성,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가 가능하다. 사업특화항목에서는 사업별 정책목적 및 특성에 맞게 사업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본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생략하고 사업추진 여건을 중심으로 정책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별도평가항목은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재원조달 위험성 및 문화재가치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재원조달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사업 대비 낮은 경우, 혹은 장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재원조달 위험성 항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재원조달의 위험 측면에서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재검토에서는 별도평가항목을 정책성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 2. 사업추진여건

###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1) 개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혹은 국민들의 요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아간다.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추진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

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평가로 일컫는다.<sup>46)</sup>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의뢰된 사업으로서 본 재검토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사업계획이 주무부처인 경찰청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얼마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등을 근거로 사업의 준비 정도를 평가하였다.

## 2) 검토결과

### 가) 상위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본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으로는 경찰청의 「주요업무계획」,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 계획(안)」 및 아산시의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며, 본 사업은 해당 계획들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은 그간의 치안정책과 정책여건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명시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표 V-2>에서 정리하였듯이 「주요업무계획」에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수사전문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왔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로 수사교육 인원 및 인프라 확대를 설정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치안여건에 맞춰 4대 목표 및 추진기반 67개 핵심·1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2023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2023)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수사경찰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수사교육동 증축사업(교육 인프라 개선)이 세부 정책과제로 명시하고 있다(<표 V-3>).

<표 V-2> 수사교육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연도	관련 정책목표·추진전략	관련 과제 항목
2013	2.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신뢰사회 구현 3. 적극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로 치안역량 제고	2-3.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3-3.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경찰관 양성
2014	3. 「정부 3.0」을 체질화하여 치안경쟁력 제고	3-4. 국정과제로 제시된 치안인프라 확충

4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제1호

〈표 V-2〉의 계속

연도	관련 정책목표·추진전략	관련 과제 항목
2015	3. 실감나는 「조직혁신」으로 치안경쟁력 제고	3-1. 인사·교육제도 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 운영 3-2. 경찰 업무전문성 제고
2016	3. 세심한 조직혁신	3-3. 경찰 업무 전문성 강화
2017	4. 내부역량 강화 및 치안인프라확충	4-2.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2018	2. 따뜻한 인권경찰	2-4.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개선
2019	3. 현장을 활력있게 4. 경찰개혁 제도화	3-2. 치안인프라 확충 및 경찰 처우 개선 4-2.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수사 공정성·전문성 제고
2020	6. 현장을 활력있게	6-1. 인력·예산·시설 등 치안인프라 확충
2021	1. 국민체감 경찰개혁 2. 든든한 이웃경찰	1-3. 지속가능한 경찰개혁 토대 완성 2-4. 부단한 교육·훈련으로 준비된 치안전문가 양성
2022	3. 경찰을 당당하게	3-1. 현장 중심의 치안전문가 양성

자료: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각 연도

〈표 V-3〉 경찰청 「2023 주요업무계획」

[수사경찰 교육훈련 강화 - 경찰청 핵심과제]

- (맞춤형 수사교육 강화)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신입수사관부터 수사부서 과·팀장, 경찰서장까지 수사경력·역할에 상응하는 맞춤형 수사교육 강화
  - (신입수사관 교육 강화) △ 수사부서 전입 직후 수사연수원에서 기본적인 실무 교육 실시(신입수사관 先 교육 後 배치), △ 중앙학교 신입경찰 중 '예비 수사경과' 선발·교육 확대 검토
  - (수사지휘자 교육 강화) △ 기능별 수사부서 과·팀장, 경찰서장 대상 수사지휘 교육, △ 수사심사관 대상 수사기록 검토·심사 교육 확대 추진
- (수사경찰 교육이력제 도입) 수사관 교육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수사관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수사경찰 교육이력제」 도입 추진
  - (교육이력 시스템 관리) KICS 포털 내 '수사경찰 인사관리 시스템 (HR)' 을 활용해 수사관별 교육이력(교육기관, 기간, 교육내용 등)을 관리하며, 교육대상자 선정 시 활용
  - (직무·직책 전환 교육) 수사관 생애주기 고려해 직무·직책 전환에 따라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신입팀장·신입수사관)에 필수교육 실시, 시스템을 통해 이수 여부 관리
- (교육 인프라 개선) 현장의 수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 수사연수원 증축 및 교수요원 증원 (교육주기 6.3 → 3년 단축), △ 국가수사본부 인증 수사교재 발간 추진
  - ※ 교육주기 6.3→3년 단축을 위한 수사연수원 증축('21~'26년, 총 사업비 473억)
  - (수사 교수요원 증원) 경제·강력·교통·안보 담당 교수요원 증원 추진
  - (국수본 인증 수사교재 발간) 관서별 기능별로 발간하여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각종 교육자료를 '국가수사본부 인증 수사교재'로 일원화 제작 추진
- (교육방식·콘텐츠 다각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수 수사사례, 각종 수사 관련 법령·제도, 수사자료 분석 등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

자료: 경찰청, 「2023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2023.

2023년 1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교육대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책임수사기관으로, 경찰수사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수사교육 등 증축사업을 중기적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V-4〉).

〈표 V-4〉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 계획(안)」

[ 책임수사기관으로, 경찰수사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 - 국가수사본부 중점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국가수사원으로 도약) 수사연수원 외연확장(증축사업)과 연계, 국내 최대의 수사교육기관을 넘어 세계적 수사 교육기관으로 발전</li> <li>- 타부처·외국경찰 대상 교육기회를 개방해 부처·국가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국가전반의 수사교육을 선도하는 책임수사 기관으로 역할 정립</li> <li>* 現 6.3년의 교육주기를 3년으로 단축(일시점 300명 → 500명, 연간 6,070여명 → 12,480명 교육 가능, / '21 ~'26년, 사업비 총 473억, 중간설계 검토중)</li> <li>- (R&amp;D 단지) 미래 범죄양상 변화를 예측하고 첨단수사기법·장비를 연구·개발하는 「수사기법 R&amp;D 단지(가칭)」 조성 추진(미래비전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추진) '23년 연구용역 예산확보(3억원), △'24~'28년 설계·건축 추진(74억원)</li> <li>▶ (조직구성 案) 첨단기법 연구부, 첨단장비 연구부, 스마트수사 연구부(40명 내외)</li> </ul>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 계획(안)」

국가수사본부 창설(2021. 1. 1.) 및 수사권 확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자치경찰 분리 등 급변하는 수사 환경 속에서 수사경찰의 조직·인력 확대 조정으로 수사경찰 교육 대상(수요)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화된 수사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제출자료(〈표 V-5〉)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수사경찰에 대한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에 필요한 수사연수원 기반시설(강의실, 실습실, 생활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사업목적이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목적이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의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V-5〉 수사교육동 증축 필요성

- (경찰수사 여건의 변화) 국민의 요구와 제도 변화에 발 맞춰 본래적·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각 수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 수사역량 강화가 중요
  - 수사 기본교육 외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각 수사분야별(형사, 과학수사, 사이버수사 등) 기본 - 전문 - 심화 - 보수교육 과정 이수까지 고려 할 경우 교육이 2배 이상 증가
  - 특히, 수사부서 경사·경위과정과 경감·경정 과정의 「기본교육」 및 여청수사·교통조사·안보수사 등 확대 수사 부서 교육과정도 수사연수원에서 교육 필요
  -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수사권 확대, 국정원 일부업무(보안) 추가 등에 따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수사 및 수사 과정 인권보호 교육 강화도 필요
- (교육수요 대응 한계) 재직자 교육기간 단축(6.3년→3년 이내), 신입 수사관 교육(수사경과 취득자, 신규 채용자), 타부처 수사관(특사경) 교육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
  - 현장수사관 1인 1회 교육주기 6.3→ 3년으로 단축, 교육인원 연 6,070여명 → 12,480명 교육 확대 필요
    - ※ 現 실습 강의실 7개(PC실 6개)만 보유, 3년주기 교육 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운영 중
  - 별도의 의무 수사교육 없이 수사부서에 배치, 필요한 실무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신입수사관(신규채용자, 수사경과 취득자) 의무 교육 신설 필요
    - ※ 신규 채용자 수사부서 배치 前 1~2주 짧게 교육, 매년 수사경과 시험 합격자 교육도 부족한 실정
- (현장중심 전문교육 기반 구축) 다양한 현장상황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과 첨단범죄에 대비한 新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 경찰수사의 과학화·전문화를 위해 교육·연구 환경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
- (他부처 교육기관 비교) 공무원 교육기관은 대부분 2년 이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실정
  - ※ 경찰개혁위 수사개혁분과에서는 현장 수사관의 교육은 최소 2~3년 이내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할 것을 권고 (2017년 12월)수사사례, 각종 수사 관련 법령·제도, 수사자료 분석 등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제출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계획으로는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아산시, 2008)이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품격높은 교육·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발전방향으로 경찰수사연수원과 인근에 위치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을 합친 경찰교육타운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47)</sup>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은 결과적으로 경찰교육타운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인 ‘품격높은 교육·문화도시 육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 나)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의 준비 정도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자원 투입 정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사업의 목적 등이 정책 방향과

47) 해당 계획에서 언급된 중앙경찰학교는 2023년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함

부합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의 객관성과 운영 방안의 구체성 등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2017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의 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시설(강의동, 생활관동) 증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경찰청 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을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이듬해 8월 중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그해 11월에 대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 주체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목적, 사업범위, 사업효과, 운영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한다. 반면 본 사업의 경우 세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검토 과정 중 요구안 조정 요청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계획 불분명해진 측면이 존재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요구안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의 경우, 중간설계시 당초안으로부터 실 구성을 변경하였음에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요구안의 연면적을 당초안(18,266㎡)과 동일하게 제출하였다.<sup>48)</sup> 연수원은 본 재검토 과정 중 공간 구성을 중간설계안(18,584㎡)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시 말해, 본 재검토 과정 중 확인된 연수원 측의 실질적인 요구안은 조정요구서의 연면적(18,266㎡)을 유지하면서 중간설계안(18,584㎡)의 실 구성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요구서상의 연면적 18,266㎡과 중간설계안의 세부 실 면적의 합계(18,584㎡)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본 재검토의 대상이 다소 불분명하게 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 계획 및 교육 인원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결정된다. 다만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수한 교

48)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중간설계 면적(18,584㎡)은 지침면적(18,266㎡) 대비 101.7%로 다소 적정 수준이나 일부 실의 과다·과소 설계 및 공용면적이 다소 과다함을 제기하며 지침면적을 수용할 것을 제시함

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sup>49)</sup> 본 사업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연구진은 수사 인력의 교육주기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 등에 대해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원 측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다만 교육 확대를 위한 증원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이 있어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재검토 기간 동안 2027년 목표 교수 인원은 80명(연구교수 10명), 73명(연구교수 2명), 73명(연구교수 5명), 71명(연구교수 0명), 75명(연구교수 2명) 등으로 계속 바뀌었으며, 목표 행정 인원도 70명에서 44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70명으로 반복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사업계획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 인원의 변화가 관련 자료 제출마다 발생하고 증원 계획과 시설 증축 계획 간의 연계성이 저하되어 사업의 준비 정도가 다소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수원은 교육 주기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 및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증축 사업의 특성상 기존 시설에 대한 현황과 증축 시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나, 본 사업은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 인원 또는 사용 인원 등에 대한 파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보였다. 예를 들어 당초 기존 식당의 면적을 254.26㎡에 사용 인원을 180명으로 제시하였으나 298.90㎡와 170명으로 정정하였고, 사용 인원은 다시 400명(직원 100명, 교육생 300명)으로 재차 정정하였다.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존 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성은 증축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검토하는 데 불확실성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의 준비 정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에는 신축 및 확충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본 사업으로 인한 기존 시설 등의 철거 및 이전이나 장기적인 부지활용과 같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의 계획이 필요하다. 본 사업에서의 주요한 계획 중에 하나는 생활관동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증축하는 것과 이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분을 고려한 주차장의 신설이다. 신설되는 주차장의 부지는 국유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하면 부지활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전에 대한 구체적

49) 연수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급변하는 수사환경 및 국수본 정책부서 요청 등으로 인하여 교육계획이 자주 수정·변경된 것으로 확인됨(2021년 18번, 2022년 13번, 2023년 4월 기준 6번 수정)

인 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지에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가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수사연수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동·식물성조사) 수행 중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10개체의 서식이 발견되었으며, 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3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맹꽁이를 사업지구 내부에 조성된 대체서식지로 모두 이전할 계획을 밝혔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생태계 보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주계획(포획 방법, 시기, 이주 후 유지관리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0)</sup>

## 나.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 1) 개요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책일치성 등 내부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sup>51)</sup>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의지를 가지지 않거나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이러한 외부여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외부여건'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와 현장 실사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주체,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본 사업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였다.

---

50)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 반발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여러 사업에서 맹꽁이 포획 시기와 방법, 대체 서식지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함

5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제2호

## 2) 검토결과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경찰청은 수사교육동 증축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권 확대, 자치경찰 분리 등 급변하는 수사 환경에 따라 수사 경찰의 조직·인력 확대 조정으로 교육 대상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제출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경찰수사연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강의실, 실습실, 생활실 등)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주기는 6.3년으로 수사 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목표 교육주기 3년(연간 112개 과정, 403회, 1만 2,480명)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강의동 및 생활관동의 증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본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아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현 단계에서 본 사업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교육동 증축은 현 경찰청 부지 내 건축이기에 지역 주민과 관련성이 적으며, 주변에 민가가 적어 공사로 인한 불편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 교육기관(경찰대학, 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의 직원 및 교육생 등 추가 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의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나 아산시 또한 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현 사업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산시는 2008년에 공표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 ‘품격높은 교육·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발전방향으로 경찰수사연수원과 인근에 위치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경찰종합학교) 등을 합친 경찰교육타운의 조성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경찰수사연수원 우측에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통해 보다 확장된 경찰교육타운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립경찰병원 경찰청 현장 실사에 아산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sup>52)53)54)</sup>

52) 『동양일보』, 「박경귀 아산시장의 강력한 리더십 국립경찰병원(분원) 유치 성공 원동력.. 박시장 1.2차 PT발표 직접하고, 37만 시민 뚝뚝뚝 쳐 총력 지원」, 2022. 12. 21.,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712>, 검색일자: 2023. 5. 2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부처는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본 사업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경 피해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

53) 『세계일보』, 「충남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유치 확정」, 2022. 12. 1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4517107>, 검색일자: 2023. 5. 22.

54) 『아시아투데이』,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지원에 시민역량 결집」, 2023. 4. 1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11010005540>, 검색일자: 2023. 5. 22.

---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B/C로 표현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인 경우,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낮게 나타나므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점점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통해 사업 시행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2. 지역낙후도

####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본 재검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서 제시하는 지역낙후도지수를 사용한다. 동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방법론을 토대

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UI^r = \sum_j W_j \sum_i W_{ij} \cdot Z_i^r$$

단,  $UI^r = r$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Z_i^r = r$  지역의 표준화된 지표  $i$ 의 값(단,  $i = 1, 2, 3, \dots, \dots, 36$ )

$W_{ij} =$  요인  $j$ 에 대한 지표  $i$ 의 가중치(단,  $i = 1, 2, 3, \dots, \dots, 36$ )

$W_j =$  요인  $j$ 의 가중치(단,  $j = 1, 2, 3$ )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 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균값으로서, 지역낙후도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다. 균형발전지표는 '핵심·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성되는데, 본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문에 의해 구성되는 주관지표는 배제하고 '핵심·객관지표'를 기본적으로 차용하였다. 지수 산정에는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2020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 중 핵심·객관지표 중 36개 지표를 다음과 같이 준용 및 변형하였다.<sup>55)56)</sup>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인구	연평균 인구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2010~2020)</li> <li>•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해당년/기준년)<sup>(1/기간)-1</sup>)×100</li> </ul>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제	재정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2018~2020)</li> <li>•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 세입)×100</li> </ul>	행안부 (지방재정365)
주거	노후주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li> </ul>	통계청 (주택총조사)
	빈집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li> <li>* 빈집: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신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li> </ul>	통계청 (주택총조사)

55) 2020년 자료 기준, 핵심지표(2), 주거(5), 교통(4), 산업·일자리(6), 교육(4), 문화·여가(6), 안전(4), 환경(4) 및 보건복지(8)의 총 43개 핵심·객관지표가 발표되었으며, 이들 중 시·군·구 단위로 발표된 자료 총 36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56)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에서는 2019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주거	상수도보급률	•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환경부 (상수도통계)
	하수도보급률	•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환경부 (하수도통계))
교통	도로포장률	• 개통도 연장에 대한 포장도로 연장비율	국토부(도로현황조사) 및 통계청(e지방지표)
	고속도로 IC 접근성	•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 가까운 고속·고속화철도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서비스 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산업 일자리	사업체수 증감률	• 최근 3개년 •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해당년/기준년) <sup>(1/기간)-1</sup> )×10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 증감률	• 최근 3개년 •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해당년/기준년) <sup>(1/기간)-1</sup> )×10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3개년 평균 • 지식기반산업 = 지식기반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LQ) =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지역의 전산업 종사자수)/(전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전국의 전산업 종사자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상용근로자 비중	• 총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교육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 보육시설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유아인구(0-5세)수÷1,000)	통계청 (e-지방지표)
	학령인구(6-21세) 당 학교수(초·중·고)	• 초중고 학교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학령인구(6-21세)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영유아(7세 이하)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영유아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령(8-13세)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초등학령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문화 여가	인구십만명당 문화여가시설수	• (문화여가시설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000 * 문화여가시설=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①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② 생활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③ 공공체육시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체육시설(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문체부 행정자료 (생활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현황)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문화 여가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공연문화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도서관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안전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 주민등록인구수÷119안전센터수	통계청(e-지방지표)
	소방서 접근성	•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경찰서 접근성	•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환경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 (도시공원 조성면적/주민등록 인구)×1,000(m <sup>2</sup> /인) *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간(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포함)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 도시계획현황통계
	녹지율	• (녹지면적/도시지역면적)×100 * 녹지: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간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 도시계획현황통계
	1km <sup>2</sup> 당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배출량(kg)/시군구 면적(1km <sup>2</sup>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8개(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임	환경부 시군구별 배출량 자료, UPIS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생활권공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보건 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 65세 이상 1인 가구수×100/전체 일반가구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보건분야 예산액)×100/전체 일반회계 예산	통계청(e지방지표)/ 행안부(지방재정연감)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총 사회복지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 *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	통계청(e지방지표)/ 시도통계연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주민등록인구)×1,000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통계청(e지방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보건 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노인 (60세 이상)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 노인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병원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표별로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표 간 척도를 통일시켜야 한다. 지표 간 척도의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지표를 표준화하였다.

$$Z_i = \frac{X_i - \bar{X}}{S}$$

단,  $S$  는 표준편차,  $\bar{X}$  는 표본평균

한편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6개 지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으로 명명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지표별 가중치는 가급적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수치를 이용한다. 요인별 지표의 가중치( $W_{ij}$ )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고, 요인별 가중치( $W_j$ )는 3개 요인의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지표별 가중치는 〈표 VI-2〉와 같다.<sup>57)</sup>

57)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 참조.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를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였음

〈표 VI-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부문	지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인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0.0459	-0.1438	0.2793
경제	재정자립도	0.1649	-0.1429	0.1424
주거	노후주택비율	0.2451	-0.3217	-0.0796
	빈집비율	0.0502	-0.0151	-0.0294
	상수도보급률	-0.0144	0.0123	-0.0328
	하수도보급률	0.0528	-0.0939	0.0185
교통	도로포장률	0.0256	-0.0254	-0.0049
	고속도로 IC 접근성	0.1171	-0.2062	-0.0135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0.1212	-0.2871	0.0840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0183	0.0070	-0.0466
산업 일자리	사업체수 증감률	-0.2000	0.0783	0.3455
	중사자수 증감률	-0.0374	-0.0120	0.0989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년 평균	-0.0381	0.0434	0.0342
	상용근로자 비중	-0.0637	0.0680	0.0281
교육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0.0294	0.0280	-0.0098
	학령인구 천명당 학교수	0.0758	-0.3275	-0.0516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영유아비율	0.0058	0.1992	-0.0273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학령인구 비율	0.0724	-0.0713	-0.0564
문화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0274	-0.0490	0.0463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0778	0.0691	-0.0380
	도서관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2109	-0.0690	-0.0422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0274	0.0199	0.0035
안전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0.1030	-0.0184	0.0284
	소방서 접근성	-0.1800	0.0529	0.0306
	경찰서 접근성	-0.0216	-0.0610	0.0019
환경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0.0094	0.0186	-0.0122
	녹지율	0.0048	0.0016	0.0105
	1㎢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0.2232	-0.2075	-0.1280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2702	-0.0111	-0.0367

〈표 VI-2〉의 계속

부문	지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보건 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0.3704	0.4229	-0.252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0.0017	0.1840	-0.0006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0.0137	0.0398	-0.007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0.0968	0.2291	-0.0989
	노인여가복지시설서비스권역내 노인비율	-0.0181	0.0381	0.0328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0213	0.0814	-0.0675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0983	-0.0315	-0.077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VI-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기본생활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여건	기타 경제활동여건
0.5017	0.2792	0.219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 나.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본 분석은 앞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토대로 지역낙후도지수를 새롭게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였다. 기존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가이드라인」(한국개발연구원, 2012) 배포 이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통합되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시·군 기준 기존 170개에서 167개 시·군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2012년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연기군 전역 및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됨에 따라 광역시·도 기준 기존 16개에서 17개 광역시·도로 증가하였다.

〈표 VI-4〉의 17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에 따르면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충청남도의 순위는 13위로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5〉의 167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67개 시·군 중 40위로 나타났다.

〈표 V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구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특별 광역시	서울특별시	2.598	-0.037	-0.647	1.151	1
	부산광역시	0.564	0.957	-1.004	0.330	8
	대구광역시	0.524	0.938	-0.563	0.402	7
	인천광역시	1.521	-0.366	0.023	0.666	2
	광주광역시	0.681	1.445	-0.610	0.611	3
	대전광역시	0.705	1.058	-0.418	0.558	4
	울산광역시	1.103	-0.078	-0.228	0.482	5
	세종특별자치시	-1.318	-0.456	4.147	0.120	9
도	경기도	0.233	0.457	0.901	0.442	6
	강원도	-1.249	-1.069	0.044	-0.915	16
	충청북도	-0.646	-0.083	0.117	-0.321	11
	충청남도	-0.942	-0.264	0.197	-0.503	13
	전라북도	-0.804	0.287	-1.097	-0.564	14
	전라남도	-1.067	-0.751	-1.009	-0.966	17
	경상북도	-1.158	-0.686	-0.296	-0.837	15
	경상남도	-0.552	0.209	-0.408	-0.308	10
	제주특별자치도	-0.193	-1.561	0.850	-0.346	1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V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충청남도	아산시	0.192	0.646	1.165	0.532	4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 3. 균형발전효과

#### 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은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내실화,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신설을 비롯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사업특화항목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신설로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와 균형발전효과 분석으로 구성되고 균형발전효과 분석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포함하게 되었다.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에서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로서 해당사업 및 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검토 수행기관은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와 더불어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재검토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다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 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 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 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sup>58)</sup>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 간 거래가 국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

58) ‘Input Output Model’은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 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 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재검토에서는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보완한 모형 및 자료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 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작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 개요

### 가) 작성현황

한국은행은 지역통계의 확충과 통계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의 6개 권역<sup>59)</sup>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를 작성·발표하였다. 동 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공식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권역 세분화 및 최신 경제구조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 기준의 16개 시·도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실측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 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작업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2005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실측이 아닌 2003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연장표로 작성하였다. 그 이후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에 맞추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에 그 동안 축적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기법과 산업연관표 연장기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표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발표하였으며, 2020년 7월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공표하였다.

### 나) 작성기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로 구분한 지역 간 투입산출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2010/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달라진 점은 전업 환산<sup>60)</sup> 지역 고용표를 함께 작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59)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을 의미함

60) 전업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노동투입량 측면의 취업자 수 측정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

지역별 산출 및 소득통계, 수출입 및 카드사용 실적 등 지역생산과 지역 간 이출입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였고, 부문분류는 165부문으로 기준년 2015년의 상품분류를 적용하였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격 기준은 2005년 생산자가격 기준에서 2010년 기초가격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나, 2015년 다시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종 계수를 산출하였다. 기초가격이란 생산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를 차감하여 생산자가 실제 수취하는 금액으로, 수요처 간 생산물 세율의 차이를 배제하고 동질적인 기준으로 거래액과 투입구조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생산자가격에는 생산물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처가 기업, 가계 또는 정부인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거나 한 부문에 세율이 다른 여러 품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면 파급효과 측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초가격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생산물세가 중간투입이나 부가가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투입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 도출 시에 순생산물세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혼돈과 분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5년에는 생산자가격으로 계수를 도출하였다.

#### 다)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이다.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가로(행,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배분구조는 다른 사업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성된다.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 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한다.

지역산업연관표도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연관산업표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뉜 지역 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므로, 지역 내인지 지역 간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 형식이 다르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문의 배분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처럼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되는 것이 전국산업연관표와 다르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에 포함되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 내 총산출액이 된다.

- 총산출액=총투입액
- 총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투입구조]
-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이출)-수입-이입[배분구조]
- 총수요(=총공급)

타 지역 생산품(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공제)	이입 (공제)	지역 내 산출액	
		산업1	...	산업n	중간 수요계	소 비	투 자	수 출	이 출	최 종 수 요 계				
내생 부문	산업1	$X_{11}$	투 입 구 조	$X_{1n}$	$W_1$	$C_1$	$I_1$	$E_1$	$O_1$	$Y_1$	$M_1$	$N_1$	$X_1$	
	...													
	산업n	$X_{n1}$		$X_{nn}$	$W_n$	$C_n$	$I_n$	$E_n$	$O_n$	$Y_n$	$M_n$	$N_n$	$X_n$	
	중간투입계	$U_1$		$U_n$										
외생 부문	피용자보수	$R_1$	↓	$R_n$										
	영업잉여	$S_1$		$S_n$										
	고정자본소모	$D_1$		$D_n$										
	순생산세	$T_1$		$T_n$										
	부가가치계	$V_1$		$V_n$										
지역내산출액		$X_1$		$X_n$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동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의 산업 1부문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 부문 및 타 부문에서 생산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  $V_1 (= R_1 + S_1 + D_1 + T_1)$ 을 구입하였음을 나타낸다. 가로 방향은 산업 1부문이 자기 지역에서 산출한  $X_1$ 과 해외에서 수입한  $M_1$  및 타 지역에서 이입한  $N_1$ 을 합한 총공급액( $= X_1 + M_1 + N_1$ )이 자가지역의 산업 1부문 및 타 부문으로만큼 중간수요로 판매되고, 소비·투자·수출 및 타 지역 이출로  $Y_1 (= C_1 + I_1 + E_1 + O_1)$ 만큼 최종수요로 판매되었음을 나타낸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은 해외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된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에는 이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 [그림 VI-2]와 같다.

[그림 VI-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 내산 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 업 1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소 비	투 자	수 출	소 비	투 자	수 출	
국산 투입	지 역 1	산업1 ⋮ 산업n	$Z_{11}$		투 입 구 조  ↓		$Z_{1n}$		$Y_{11}^d$		...		$Y_{1n}^d$		$X_1$
	⋮	산업1 ⋮ 산업n	배 분 구 조 →												
	지 역 n	산업1 ⋮ 산업n	$Z_{n1}$				$Z_{nn}$		$Y_{n1}^d$		...		$Y_{nn}^d$		
수입 투입			$M_1$		$M_n$		$Y_1^m$		...		$Y_n^m$				
부가가치			$V_1$		$V_n$										
지역내산출액			$X_1$		$X_n$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 간 산업연관표에서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가지역 및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VI-2]에서 지역 1의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활동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Z_{11}$ ),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이입된 중간재( $Z_{21} + \dots + Z_{n1}$ ),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중간재( $M_1$ ), 그리고 노동,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 $V_1$ )를 투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가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가지역 또는 타 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VI-2]에서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가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 $Z_{11}$ )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 $Z_{12} + \dots + Z_{1n}$ )와 자가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로 사용된 최종수요( $Y_{11}^d$ ) 및 타 지역의 소비투자로 사용된 최종수요( $Y_{12}^d + \dots + Y_{1n}^d$ )로 배분되었음을 나타낸다.

### 3)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165부문 기준으로 건설업 중 토목건설은 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시설건설, 산업시설건설, 기타건설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세부 산업<sup>61)</sup>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건설업부문뿐만 아니라 정보화부문 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부 산업의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5 기준년 상품분류와 2015 기준년 상품분류를 비교하였을 때 기본부문에서 공항시설은 도로시설에, 지하철시설은 철도시설에, 농림수산토목 중 일부는 하천사방에 포함되었다. 또한 비주택 건축은 비주거용 건물과 산업플랜트로 구분되었다. 특히 산업플랜트는 2005년 기준 상하수도시설, 기계조립설치의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본부문으로 제시되었다. 통신도 우편, 유선, 무선, 기타로 단순화되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속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로 변경되었다.

61) 원칙적으로는 상품이나 투입산출표가 상품 구분으로 작성되고 있고 한 산업에 한 상품이 생산된다는 가정하에 산업으로 표현함

〈표 VI-6〉 상품분류 구분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 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18	건 설	55	건축 건설	123	주택 건축	305	주택건축	5010	주거용 건물	501	주거용 건물	50	건물 건설 및 건축 보수	F	건설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5020	비주거용 건물	502	비주거용 건물				
				125	건축 보수	307	건축보수	5030	건축보수	503	건축 보수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6	교통 시설 건설	308	도로시설	5111	도로시설	511	교통 시설 건설	51	토목 건설		
						312	공항시설		도로시설						
						309	철도시설	5112	철도시설						
						310	지하철 시설		철도시설						
						311	항만시설	5113	항만시설						
				127	일반 토목	313	하천사방	5121	하천사방	512	일반 토목 시설 건설				
						315	농림수산 토목		하천사방						
						314	상하수도 시설	5122	상하수도 시설						
						315	농림수산 토목	5123	농림수산 토목						
						316	도시토목	5124	도시토목						
				128	기타 특수 건설	320	기타건설	5131	환경정화 시설	513	산업 시설 건설				
						318	통신시설	5132	통신시설						
		317	전력시설			5133	전력시설								
		55	건축 건설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5134	산업 플랜트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7	일반 토목	314	상하수도 시설								
				128	기타 특수 건설	319	기계조립 설치	5190	기타 건설						
						320	기타건설			5190	기타 건설				

〈표 VI-6〉의 계속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 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22	통신 및 방송	62	통신	141	우편 및 전화	341	우편	5710	공영우편 서비스	571	공영우편 서비스	57	우편 및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H	운송 서비스
						342	전화	5720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572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343	초고속망 서비스	5911	유선통신 서비스	591	유·무선 및 위성 통신 서비스				
				342	전화	5912	무선 및 위성통신 서비스	59	통신 서비스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3	초고속망 서비스	5991	통신 재판매 및 중개 서비스	599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
				141	우편 및 전화	342	전화	5999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4	부가통신			6001	지상파 방송 서비스	600	방송 서비스	60	방송 서비스
				346	지상파 방송	6002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 서비스	610	정보제공 서비스	610	정보 서비스				
				347	유선 및 위성방송	6100	정보제공 서비스	610	정보 서비스	61	정보 서비스				
				63	방송	143	방송	346	지상파 방송	6001	지상파 방송 서비스	600	방송 서비스	60	방송 서비스
				62	통신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5	정보 서비스	6100	정보제공 서비스				

〈표 VI-6〉의 계속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 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24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65	부 동 산	153	컴 퓨 터 관 련 서 비 스	366	소 프 트 웨 어 개 발 공 급	6211	게 임 소 프 트 웨 어 출 판	621	소 프 트 웨 어 개 발 공 급	62	소 프 트 웨 어 개 발 공 급 및 기 타 IT 서 비 스		
								6212	소 프 트 웨 어 개 발 공 급						
						367	컴 퓨 터 관 련 서 비 스	6290	기 타 IT 서 비 스	629	기 타 IT 서 비 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그러나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소분류(165부문)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 등의 부문을 기본부문(381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방법을 달리하여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165부문 또는 83부문)를 최대한 활용한 뒤 전국산업연관표상 기본부문별 유발계수와 소분류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도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생산기술이 표준화되어 산업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현재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분류(165부문)까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기본부문 배분 시에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기본부문 및 소분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평균적인 기본부문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를 분석한다고 하자. 도로시설은 기본부문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을 포괄하는 교통시설 건설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 건설을 기준으로 A지역에 해당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i$ 지역,  $j$ 산업(교통시설)의 파급효과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_{ij}$$

$i$ 는 지역(16개 광역시도),  $j$ 는 산업(소분류 기준)

이후 전국산업연관표상에서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의 비율( $\theta_{jk} = E_k / E_j$ )을 기본부문 산업별( $k$ , 도로시설)로 계산한다. 위 비율( $\theta_{jk}$ )은 광역시도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첨자  $i$ 가 없다. 이 비율( $\theta_{jk}$ )을 앞서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교통시설( $j$ ) 건설에 따른  $i$ 지역의 파급효과( $E_{ij}$ )에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효과를 계산한다. 따라서  $i$ 지역,  $k$ (도로시설) 산업의 최종적인 파급효과는  $E_{ik} = E_{ij} \times \theta_{jk}$ 가 되며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취합하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환경정화시설 등 기본부문이 없는 IRIO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또한 생산유발효과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국산업연관표상 소분류 대 기본부문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의 제공자료가 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중분류(82부문), 전국산업연관표는 소분류(161부문)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중분류와 소분류의 비중을 적용하고, 소분류와 기본부문의 차이는 취업과 관련이 높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상 제공하지 않는 고용유발계수는 전국산업연관표상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비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이상을 통해 추정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정 계수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취업)유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 유발효과

생산된 상품들과 해외부터 수입된 상품은 중간수요 혹은 최종수요의 형태로 소비된다. 투입산출표는 이를 내생부문에서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잔폐물 및 수입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잔폐물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 생략한다.

이 과정은 식 (1)로 표현이 가능하다.

$$X_{i1} + X_{i2} + \dots + X_{in} + Y_i - M_i = X_i \quad \text{식 (1)}$$

- 식 (1)에서  $X_{i1}$ 은  $i$ 번째 상품에 대한 1번째 상품의 중간수요를 의미
- 따라서,  $X_{i1} + X_{i2} + \dots + X_{in}$ 은  $i$ 번째 상품에 대한 내생부문의 총 중간수요의 크기를 의미
- $Y_i$ 는  $i$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의미
- $M_i$ 는  $i$ 상품의 수입액을 의미
- $X_i$ 는  $i$ 상품의 국내 총산출액을 의미
- 즉 식 (1)은  $i$ 상품에 대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이 국내 총산출액과  $i$ 상품의 수입액의 합으로 총당되는 되는 과정을 나타냄

총  $n$ 개의 상품에 대해 식 (1)을 모두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행렬의 형태로 투입산출표의 사용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X_{11} + X_{12} + \dots + X_{1n} + Y_1 - M_1 &= X_1 \\ &\dots \\ X_{i1} + X_{i2} + \dots + X_{in} + Y_i - M_i &= X_i \quad \text{식 (2)} \\ &\dots \\ X_{n1} + X_{n2} + \dots + X_{nn} + Y_n - M_n &= X_n \end{aligned}$$

식 (2)의 내생부문에 표기된 각  $X_{ij}$ 들을  $a_{ij} = X_{ij}/X_j$  의 형태로 다시 쓰면,

$$\begin{aligned} a_{11}X_1 + a_{12}X_2 + \dots + a_{1n}X_n + Y_1 - M_1 &= X_1 \\ &\dots \\ a_{i1}X_1 + a_{i2}X_2 + \dots + a_{in}X_n + Y_i - M_i &= X_i \quad \text{식 (3)} \end{aligned}$$

$$\dots$$

$$a_{nn}X_n + a_{n2}X_2 + \dots + a_{n1}X_1 + Y_n - M_n = X_n$$

○ 식 (3)의  $a_{ij}$ 는 금액기준으로 표기된 투입산출표의 내생부문을 각 상품별 산출액으로 나누어 도출한  $ij$ 상품의 투입계수를 의미함

이를 행렬 표현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4)와 같이 변형이 가능하다.

$$AX + Y - M = X \tag{4}$$

where,

$$X = \begin{pmatrix} X_1 \\ X_2 \\ X_3 \\ \dots \\ X_n \end{pmatrix},$$

$$A = \begin{pmatrix} a_{11} & a_{12} & \dots & a_{1n} \\ a_{21} & a_{22} & \dots & a_{2n}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a_{n-1n} \\ a_{n1} & a_{n2} & \dots & a_{nn} \end{pmatrix},$$

$$Y = \begin{pmatrix} Y_1 \\ Y_2 \\ Y_3 \\ \dots \\ Y_n \end{pmatrix},$$

$$M = \begin{pmatrix} M_1 \\ M_2 \\ M_3 \\ \dots \\ M_n \end{pmatrix}.$$

이제 식 (4)의 우변과 좌변을 정리하여 국내총산출 벡터인  $X$ 와 나머지 벡터들 사이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X = (I - A)^{-1}(Y - M) \tag{5}$$

식 (5) 우변의  $(I - A)^{-1}$ 는 단위행렬에서 투입계수행렬을 차감한 것의 역행렬 값을 의미한다. 무한등비급수를 행렬에 적용하게 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I - A)^{-1} = I + A + A^2 + A^3 + A^4 + \dots$$

$$= \sum_{l=0}^{\infty} A^l \quad \text{식 (6)}$$

식 (6)을 살펴보면 해당 역행렬이 최종수요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 는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직접 생산의 변화를 의미
- $A$ 는 투입계수 행렬이므로 이것과 최종수요의 변동이 곱해지게 되면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1차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됨
- $A^2$ 와 최종수요 변동의 곱셈 항목은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2차 파급효과를 의미
-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A^n$ 과 최종수요 변동의 곱셈 항목은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n$ 차 파급효과를 의미함

이와 같은 과정은 무한대까지 지속되게 되므로  $(I - A)^{-1}$ 항은 여기에 곱해지는 최종수요 변동 값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무한대 합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량의 변동은 다음의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Delta X = (I - A)^{-1} \Delta Y \quad \text{식 (7)}$$

식 (7)의  $(I - A)^{-1}$ 행렬은 생산유발계수표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종수요 변동( $\Delta Y$ )에 따라 경제의 생산이 어떻게 바뀔지는 생산유발계수표  $(I - A)^{-1}$ 에 의해 바로 결정된다. 이는 다시  $(I - A)^{-1}$ 행렬이 최종수요 변동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신규 재정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최종수요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식 (7)을 이용하여 국내 전 산업 분야의 생산 변동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생산유발효과 분석이라 명명한다.

권태현(2020)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호킨스-사이몬 조건(Hawkins-Simon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

- 호킨스-사이몬 조건은 식 (7)을 도출하기 위한 수학적 필요조건을 의미함
  - 행렬  $A$ 의 모든 원소들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행렬  $A$ 의 norm이 다음을 만족할 것:  $N(A) < 1$
- 한국은행에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은 충족되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들에서 호킨스-사이몬 조건은 충족됨

[그림 VI-3]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의 파급 및 유발효과의 개념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에 엔진, 타이어 등등 여러 가지 중간재가 투입된다.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여러 가지 중간재가 투입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무한대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표는  $A$ 에 해당하는 투입계수표를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수입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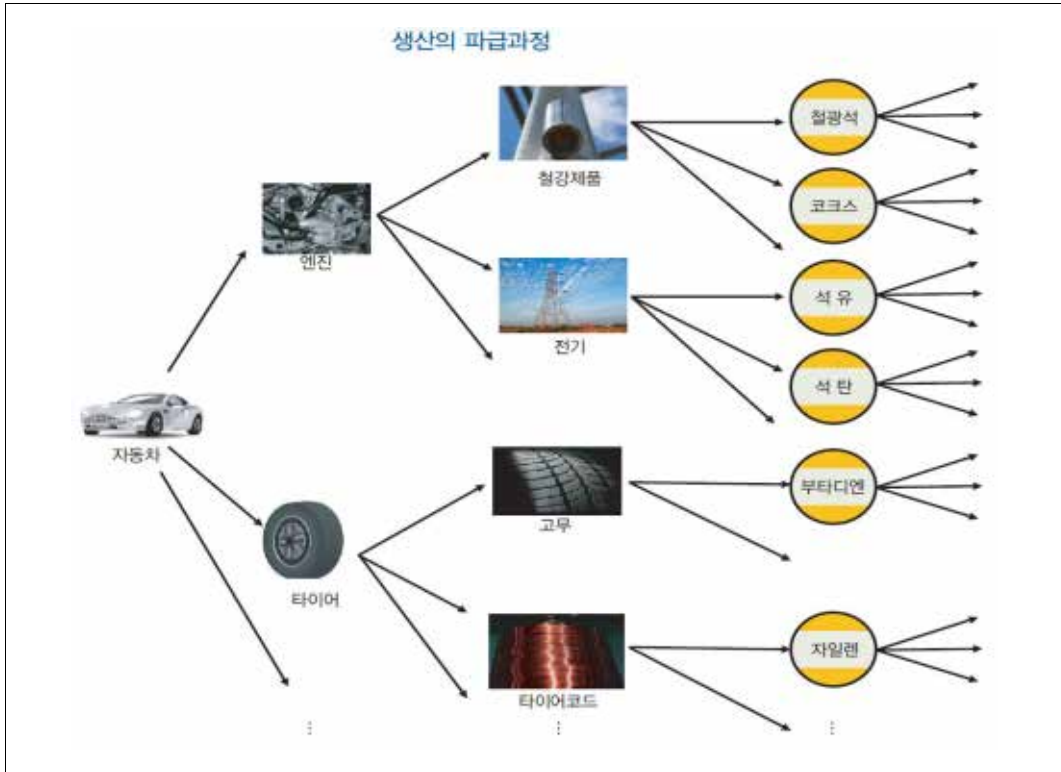
- $(I - A)^{-1}$ 는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중간수요가 모두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A$  행렬을 쓴 경우임
- $(I - A^d)^{-1}$ 는 국산품에 대한 내생부문만 추출된 국산투입계수 행렬인  $A^d$ 를 사용한 생산유발계수로 수입재에 의한 투입효과를 배제한 채 국산품의 생산구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국내 분석에서 주로 활용됨
- 이 밖에도 다양한 생산유발계수표가 존재하며 이는 수입을 외생변수로 취급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sup>62)</sup>

이하의 분석은  $(I - A^d)^{-1}$ 형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다.

- $(I - A^d)^{-1}$ 형 생산유발계수표는 국내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한다는 장점이 있음
- 나머지 여러 생산유발계수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된  $A$ 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효과가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Delta X = (I - A^d)^{-1} \Delta Y^d$ 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62) 다양한 형태의 생산유발계수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2014)의 『산업연관분석해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그림 VI-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의 개념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투입산출표에는 내생부문뿐만 아니라 상품별 부가가치액 또한 작성되고 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상품별 부가가치액을 벡터  $v$ 로 표기하고 상품별 총산출액 벡터  $X$ 를 사용하면 다음의 상품별 부가가치투입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A^v = v/X, \quad \text{식 (8)}$$

$$\text{where } v = \begin{pmatrix} v_1 \\ v_2 \\ \dots \\ v_{n-1} \\ v_n \end{pmatrix}$$

$A^v$ 를  $n \times n$  대각행렬로 작성하여  $\widehat{A}^v$ 를 생성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v = \widehat{A}^v X \quad \text{식 (9)}$$

식 (9)의 우변에 위치한  $X$ 를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의 곱을 치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v &= \widehat{A}^v X \\ &= \widehat{A}^v (I - A^d)^{-1} Y^d \end{aligned} \quad \text{식 (10)}$$

식 (10)의 우변의 식을 이용할 경우 국내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 변동분을 계산할 수 있다. 우변은 부가가치유발효과로 불리고, 우변의  $\widehat{A}^v (I - A^d)^{-1}$ 항은 부가가치유발계수라 명명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단순히 상품별 부가가치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는 최종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이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상품별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직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다) 고용(취업) 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와 상품별 부가가치투입계수 벡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것처럼 고용 및 취업자 수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산업연관표 부속표로 고용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매년 산업연관표 공표와 함께 발표되고 있다.

고용표는 상품별로 연간 투입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부속표이다. 상품 및 산업별 연간 취업자 수와 피용자 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최근 개편으로 각각의 평균 근로시간 정보 또한 작성되고 있다.

고용표는 고용자를 크게 취업자와 피용자로 구분하고 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피용자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 농림어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와 피용자 수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표를 투입산출표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증감의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상품별 고용량(취업자 수 혹은 피용자 수)을 벡터  $e$ 로 표기하고 상품별 총산출액 벡터  $X$ 를 사용하면 다음의 상품별 취업계수(취업자 수) 혹은 고용계수(피용자 수)를 도출할 수 있다.

$$A^e = e/X, \quad \text{식 (11)}$$

$$\text{where } e = \begin{pmatrix} e_1 \\ e_2 \\ \dots \\ e_{n-1} \\ e_n \end{pmatrix}.$$

$A^e$ 를  $n \times n$  대각행렬로 작성하여  $\widehat{A}^e$ 를 생성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e = \widehat{A}^e X \quad \text{식 (12)}$$

식 (12)의 우변에 위치한  $X$ 를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의 곱을 치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e &= \widehat{A}^e X \\ &= \widehat{A}^e (I - A^d)^{-1} Y^d \end{aligned} \quad \text{식 (13)}$$

식 (13)은 앞서 설명한 식 (9)와 모두 동일하나 생산유발계수에 곱해진 대각행렬이 취업계수 혹은 고용계수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식 (13)의 우변을 취업유발효과 혹은 고용유발효과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우변의  $\widehat{A}^e (I - A^d)^{-1}$ 항은 취업유발계수 혹은 고용유발계수라 명명된다. 이는 최종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이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상품별 고용이 변동될 것이기에 최종적인 취업자 수 및 피용자 수의 변동량은 취업계수(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본 사업의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입비는 순수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으로,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비주거용건물) 부문에 투입하여 집계하였다. 통상의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중 용지보상비 역시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였다.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투입비에 포함하지 않았고,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전제사항을 토대로 본 분석에 적용되는 투자비 내역은 <표 VI-7>과 같이 검토안 기준 552억원, 대안 기준 48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V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충청남도	
		검토안	대안
건설(비주거용건물)	공사비	502	437
	시설부대경비	50	45
합계		552	482

- 주: 1. 총투자비는 2022년 기준임  
 2.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지역귀속이 불분명한 시운전비 제외)를 합산한 것임  
 3.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비주거용건물) 부문에 투입됨  
 4.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하므로 완공 후 운영비는 제외함  
 5. 사업비 중 보상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함  
 6.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표 VI-8>에 따르면, 본 사업의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수도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75	6.8	39	8.5	65	10.1	47	10.0
인천	29	2.6	10	2.3	15	2.3	10	2.2
경기	106	9.6	39	8.6	58	9.0	41	8.8
대전	18	1.6	10	2.2	23	3.6	18	3.9
세종	4	0.4	2	0.4	4	0.5	3	0.6
충북	31	2.8	10	2.3	13	2.1	9	1.9
충남	681	61.7	291	64.1	402	62.4	293	63.1
광주	6	0.5	2	0.5	4	0.6	3	0.6
전북	13	1.2	4	1.0	6	1.0	4	0.9
전남	25	2.2	7	1.6	7	1.1	4	1.0
대구	7	0.7	3	0.7	5	0.8	4	0.8
경북	37	3.3	12	2.6	12	1.9	8	1.8
부산	12	1.1	5	1.1	8	1.3	6	1.2
울산	22	2.0	6	1.4	4	0.7	3	0.7
경남	25	2.2	8	1.8	11	1.7	7	1.6
강원	10	0.9	4	0.9	6	0.9	4	0.8
제주	1	0.1	1	0.1	1	0.2	1	0.2
계	1,103	100	454	100	644	100	463	100

자료: 연구진 작성

검토안 기준, 생산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1,103억원이며, 사업 대상지인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1.7%인 68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454억원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4.1%인 29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644명, 463명이

며, 충청남도의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2.4%인 402명, 고용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3.1%인 293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V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66	6.8	34	8.5	57	10.1	41	10.0
인천	25	2.6	9	2.3	13	2.3	9	2.2
경기	93	9.6	34	8.6	50	9.0	36	8.8
대전	16	1.6	9	2.2	20	3.6	16	3.9
세종	4	0.4	2	0.4	3	0.5	2	0.6
충북	27	2.8	9	2.3	12	2.1	8	1.9
충남	595	61.7	254	64.1	351	62.4	255	63.1
광주	5	0.5	2	0.5	3	0.6	2	0.6
전북	11	1.2	4	1.0	6	1.0	4	0.9
전남	22	2.2	7	1.6	6	1.1	4	1.0
대구	6	0.7	3	0.7	5	0.8	3	0.8
경북	32	3.3	10	2.6	11	1.9	7	1.8
부산	11	1.1	4	1.1	7	1.3	5	1.2
울산	19	2.0	6	1.4	4	0.7	3	0.7
경남	21	2.2	7	1.8	9	1.7	7	1.6
강원	8	0.9	3	0.9	5	0.9	3	0.8
제주	1	0.1	1	0.1	1	0.2	1	0.2
계	963	100	397	100	562	100	405	100

자료: 연구진 작성

대안 기준, 생산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963억원이며, 사업 대상지인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1.7%인 595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97억원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4.1%인 2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562명, 405명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2.4%인 351명, 고용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3.1%인 293명으로 추정되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 지역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사업 투입액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클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가 적을수록 높게 측정된다.

충청남도 내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검토안 기준 291억원이며, 대안 기준 254억원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액은 1,254,164억원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검토안 기준 0.0232%, 대안 기준 0.0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단위: 억원)

구분	검토안	대안
투입액 <sup>1)</sup>	552	482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291	254
지역내총생산(GRDP) <sup>1)</sup>	1,254,164	1,254,16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sup>2)</sup>	0.0232	0.0203

주: 1) 투입액은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가용한 최신연도인 2021년 기준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10. 19.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16~2021년 전체 비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4918%, 이 중 1천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평균은 0.0703%로, 이와 비교할 때 본 사업은 전체 사업의 평균이나 유사 규모 사업의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비수도권 건축 외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1573%, 이 중 1천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평균은 0.0691%로, 본 사업은 유사 부문 사업의 평균이나 유사 부문 및 유사 규모 사업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단위: 억원, %, 건)

구분	본 사업				비교치 (2016~2021년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검토안		대안		전체 사업 <sup>2)</sup>		유사 규모 <sup>3)</sup>		유사 부문 <sup>4)</sup>		유사규모·부문 <sup>5)</sup>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생산 유발효과	1,103	681	963	595	9,910	6,324	1,289	2,787	2,983	1,779	1,424	830
부가가치 유발효과	454	291	397	254	4,005	2,731	524	353	1,206	788	561	36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	0.0232 <sup>1)</sup>	-	0.0203 <sup>1)</sup>	-	0.4918	-	0.0703	-	0.1573	-	0.0691
사업 수	-				77		29		14		8	

주: 1) 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투입액(검토안 552억원, 대안 482억원)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인 충청남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1,254,164억원, 2021년 기준)으로 나눈 지수를 의미함

2) 제시된 기준치는 2016~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7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3) 유사 규모 비교치는 1천억원 미만의 사업의 평균값임

4) 유사 부문 비교치는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5) 유사 규모·부문 비교치는 1천억원 미만인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자료: 연구진 작성

---

##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 1. 종합결론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은 수사 경찰의 교육주기 단축을 위하여 수사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473억 1,200만원이 최초 편성되었으며, 이후 중간설계 및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022. 11.) 등을 거치면서 물가변동,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야생생물법」 적용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93억 6,900만원 증액된 566억 8,100만원으로 조정 요구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게 되었다.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상의 시설 규모는 당초안과 동일하게 18,266㎡(강의동 12,614㎡, 생활관동 5,652㎡)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연수원은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당초 면적을 수용하도록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본 재검토 과정 중 조정요구서의 연면적 18,266㎡를 유지하되 세부 공간의 구성은 중간설계안 및 조달청 검토안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여 기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설계지침, 「경찰관서 설계기준」, 중간설계 내역서, 조달청 검토서, 세부 공간 구성의 근거나 필요성 등을 제시한 연수원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비용 추정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사업부지는 현 경찰청 부지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교통영향평가, 경찰인재개발원과의 부지 활용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신설에 어려움이 없고 주차장 조성부지 면적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추가 증축을 고려한 장기적인 부지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장래 교육주기 단축을 목표로 하는 교육연구시설의 증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원뿐만 아니라 사용인원(교육인원)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재검토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연수원의 목표 교육계획을 준용하고 교육계획 변화(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정원과 시설 수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

검토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수원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교육시간 증가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정한 결과, 시설 증축 완료시점인 2027년 정원은 74명, 일반강의실은 8개실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교육 설계와 같은 이유로 본 재검토에서는 연수원의 실습실 구성 계획을 수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생활관동의 경우 연수원에서 제시한 예상 첨부 교육인원(2027년 510명)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의동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요구안 12,614.40㎡ 대비 2,457.46㎡ 감소한 10,156.93㎡, 생활관동은 요구안 5,651.70㎡ 대비 61.00㎡ 증가한 5,712.70㎡를 대안으로 도출하였다.

총사업비는 적정 공사비 단가를 반영한 기본공사비와 현장여건 및 법령개정에 따른 비용,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기본공사비는 별도 현장여건 항목으로 구성된 흙막이 공사비를 제외한 유사사례 공사비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제로에너지 공사비를 반영하였다. 현장여건 하위 항목 중 흙막이 공사, 주차장 신설,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모니터링은 내역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제로에너지 공사비 및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 법령개정 하위 항목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며, 「친화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최근 나라장터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다. 외벽 마감재 불연성능향상의 경우, 본 재검토에서 반영한 유사사례 공사비와 조감도 등을 고려할 때 증액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상비는 주차장 신설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시설부대경비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2)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본 사업이 중간설계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조사 및 측량비 산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규모 및 사업계획 조정 필요에 따라 설계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중간설계까지 진행되어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총사업비 추정 결과, 검토안의 총사업비는 609억 7,800만원으로 요구안의 총사업비 566억 8,100만원 대비 42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대안의 총사업비는 532억 2천만원으로 요구안 대비 34억 6,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재검토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비용 추정과 함께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계획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재검토 과정 중 연수원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사업계획을 조정 요청한 바 있으며 장래 목표 교육을 위한 증원 계획과 기존 시설 현황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사업의 준비 정도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더하여 환경영향평가 수행 중 발견된 범정보호종인 맹꽁이를 모두 대체서식지로 이전할 것으로 제시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여건의 경우,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사업 추진주체의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나 아산시, 지역 주민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현 사업 방향에 대한 수정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충청남도 아산시는 17개 광역시·도 기준 13위, 167개 시·군 기준 40위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검토안 기준 0.0232%, 대안 기준 0.0203%로 2016~2021년 전체 비수도권 사업(0.4918%) 및 유사 규모 사업(0.0703%)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유사 부문 사업(0.1573%)이나 유사 부문 및 유사 규모 사업(0.0691%)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I-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sup>1)</sup>		
			검토안	대안	
사업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2(경찰청 부지)				
사업 규모	부지	88,729㎡			
	연면적	18,266㎡		15,870㎡	
총사업비 <sup>2)</sup>	공사비	42,670	51,291	55,239	48,067
	보상비	-	218	217	217
	시설부대경비	4,642	5,172	5,522	4,936
	합계	47,312	56,681	60,978	53,220
사업 기간	2021~2026년(6년)				
사업주체/재원 조달	경찰수사연수원(경찰청)/국비 100%(국유재산관리기금)				

주: 1) 사업계획서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는 2022년 말 기준임

2)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자료: 연구진 작성

## 2. 정책제언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시행주체는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성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 시행주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기준인원 및 정원에 대한 빈번한 계획 변경은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본 재검토에서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수사연수원 측에서 목표하고 있는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목표 교육계획을 위한 증원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준인원이나 정원에 대한 수차례 반복이 있었으며, 향후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와의 증원 협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sup>63)</sup> 이러한 기준인원 및 정원에 대한 변화는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총사업비 조정 요구안의 구체성 미흡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철거·이전 및 맹꽂이 서식지 이주에 대한 계획 부재 등은 본 사업 진행에 잠재적 지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사업 시행주체 및 관련 부처는 시설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연수원의 경우 시설규모 산정에 기준이 되는 법적 기준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재검토에서는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이외에도 「아산시 청사 관리 운영 조례」 및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명시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 시설규모의 산정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는 다소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후 경찰청에서는 경찰에 대한 교육 및

63) 예를 들어 재검토 기간 동안 2027년 목표 교수 인원은 80명(연구교수 10명), 73명(연구교수 2명), 73명(연구교수 5명), 71명(연구교수 0명), 75명(연구교수 2명) 등으로 계속 바뀌었으며, 목표 행정 인원도 70명에서 44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70명으로 반복된 경우도 있음

훈련 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산정기준과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설계와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병행하여 범죄 수법과 형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수사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달성이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문헌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2015.
- 경찰인재개발원, 『2018 경찰인재개발원 연보』, 2019.
-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 \_\_\_\_\_, 「주요업무계획」, 2013~2023.
- \_\_\_\_\_, 『2021 경찰통계연보』, 2022a.
- \_\_\_\_\_, 『2022 경찰백서』, 2022b.
- 권태현, 『산업연관분석』, 2020.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0.
- \_\_\_\_\_,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 김대근·강동필·문성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 아산시, 『2025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2016.
- 아산시·충남연구원, 『아산시 비전설정과 실행전략 연구』, 2017.
- 아산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가이드라인」, 2012.
- \_\_\_\_\_,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 2020.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 2021.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 \_\_\_\_\_,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 설치비 추정방안」, 2021.
- \_\_\_\_\_,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 2021.
-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분석 참고서』, 2020.
- \_\_\_\_\_,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안내」, 2022.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회의 자료(수정)」, 2023.
- 김상운, 「수사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2014, pp. 247~254.

신우섭, 「수사경찰 교육훈련의 전이효과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2022.

심덕보·이환범, 「수사경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경찰서 조직재설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4호, 2010, pp. 195~222.

이성기,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2021, pp. 205~234.

최정윤·주성빈, 「IPA를 활용한 경찰교육훈련 개선방안 : 경찰수사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1호(통권 제49호), 2019, pp. 245~272.

관세인재개발원, <https://hrd.customs.go.kr>, 검색일자: 2023. 5. 17.

경찰수사연수원, <https://www.kpia.go.kr>, 검색일자: 2023. 4. 1.

경찰인재개발원, <https://www.phrdi.go.kr>, 검색일자: 2023. 5. 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5. 10.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4. 4.; 2023. 10. 19.

국토교통인재개발원, <https://tilit.molit.go.kr>, 검색일자: 2023. 5. 17.

법무연수원, <http://www.ioj.go.kr>, 검색일자: 2023. 4. 5.

아산시, <https://www.asan.go.kr>, 검색일자: 2023. 3. 27.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pcae.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3. 5. 10.; 2023. 10. 2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 검색일자: 2023. 7. 18.

경찰청,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보도자료, 2021. 1. 4.,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0104161250173](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0104161250173), 검색일자: 2023. 4. 5.

관계부처 합동,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보도자료, 2020. 12. 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954#non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954#none), 검색일자: 2023. 4. 5.

대통령비서실 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2018. 6. 21., [https://www.opm.go.kr/doc/\\_attach/file/pmo/2018/06//d8770a6ff7412934c54aa25611fc758b.hwp.files/Sections1.html](https://www.opm.go.kr/doc/_attach/file/pmo/2018/06//d8770a6ff7412934c54aa25611fc758b.hwp.files/Sections1.html), 검색일자: 2023. 4. 5.

국토교통부,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보도자료, 2015. 5. 27.,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5711](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5711), 검색일자: 2023. 4. 5.

『동양일보』, 「박경귀 아산시장의 강력한 리더십 국립경찰병원(분원) 유치 성공 원동력.. 박시장 1.2차 PT발표 직접하고, 37만 시민 뿔뿔뿔 쳐 총력 지원」, 2022. 12. 21.,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712>, 검색일자: 2023. 5. 22.

- 『세계일보』, 「충남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유치 확정」, 2022. 12. 1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4517107>, 검색일자: 2023. 5. 22.
- 『아시아투데이』,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지원에 시민역량 결집」, 2023. 4. 1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11010005540>, 검색일자: 2023. 5. 22.

##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요청(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구북부경찰서 신축)

1.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249(2023. 2. 9.)호 관련입니다.
  2. 경찰청 소관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구북부경찰서 신축'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오니, 수행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요청(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구북부경찰서 신축) 1부.  
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구북부경찰서 신축)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총사업비관리과장



사무관	장유석	타당성심사과	장	전영 2023. 2. 10.	유형선
협조자					
시행	타당성심사과-128	(2023. 2. 10.)		접수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기획재정부 (어진동)		/ http://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5416	팩스번호	044-215-8119	/ ist1st3@korea.kr	/ 비공개(5)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